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

2026. 1



목차 CONTENTS

Part

01

국민취업 지원제도 개괄

- 1. 개요 2
- 2. 운영체계 3
- 3. 업무 프로세스 7

Part

02

수급자격

- I. 수급자격 요건 10
 - 1. 공통 요건(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10
 - 2. I 유형 요건(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15
 - 3. II 유형 요건(특정계층 중심) 19
- II. 수급자격 조사 33
 - 1. 조사기준 33
 - 2. 조사사항 35
 - 가. 가구단위의 판단 36
 - 나. 소득조사 39
 - 다. 재산조사 49
 - 라. 취업경험 조사 56
 - 마. 근로능력 및 구직의사 조사 58
- III. 수급자격 신청 및 수급자격자 결정 60
 - 1. 수급자격 신청(취업지원 신청) 60
 - 2. 수급자격 결정 절차 63

Part

03

취업지원 서비스

I. 취업지원서비스 개요	66
1. 의미	66
2. 취업지원 기간	67
3. 전담 상담사 운영	69
II. 취업지원서비스 내용	71
1. 취업활동계획 수립	71
가. 개요	71
나. 수립기간 및 상담횟수	72
다. 수립절차	74
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의무 미이행자 수급자격 인정 철회	84
2.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86
3. 사후관리기간 운영	90
III. 취업지원 종료 등	92
1. 취업지원 이관	92
2. 취업지원 유예	95
3. 취업지원 종료	102
가. 의미	102
나. 사유 및 시점	104
다. 종료자의 전산처리	115
라. 절차	117
4. 재참여 제한	119

목차 CONTENTS

Part

03

취업지원
서비스

IV. 구체적인 취업지원서비스	122
1. 취업역량평가(초기상담 시)	122
2. 직업심리검사 및 잡케어(취업활동계획 수립 전) ...	139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예시	146
4. 취업지원 프로그램(맞춤형 취업지원 및 취업지원 상담 매뉴얼 참고)	149
가. 개요	149
나.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심리상담 및 취업진로상담	150
다.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156
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	166
마.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 및 금융지원과의 연계	170
바. 기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민간기관 고용프로그램 연계	176
사. 해외취업 및 창업지원 등	178
5.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80

Part

04

수당 지급

I. 소득지원 개요	192
II. 구직촉진수당	193
1. 지급대상	193
2. 지급액	193
3. 지급기간	195
4. 지급기준	196
가. 지급회차별 지급기준	196
나. 구직활동 이행에 따른 지급기준 (구직활동의무 이행 인정기준)	196
다. 종료자에 대한 지급기준	201
라. 유예자에 대한 지급기준	202
마. 부양가족 요건 변동 시 지급기준	202
바. 지급 중단 등 기준	203
5. 소득 발생 신고 및 감액·지급 정지 기준	206
가. 소득 발생 신고	206
나. 신고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감액·지급 정지 기준	209
6. 신청 및 지급	211
III. 취업활동비용	216
1.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216
2. 훈련참여지원수당(*26년 폐지)	218
3. 참여장려수당	219

목차 CONTENTS

Part

04

수당 지급

IV. 취업성공수당	220
1. 지급대상	220
2. 지급액 및 지급기간	220
3. 지급기준	221
가. 임금근로자로 취업	221
나. 창업	224
다. 노무제공자로 취업	227
라. 고용형태 변경 시	227
마. 기타 지원제도와와의 관계	228
바.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 등의 경우 지급 여부	229
4. 신청 및 지급	230
V.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등 지급) 방법	233
1. 계좌 입금	233
2. 취업지원 전산망 펌뱅킹 처리	234

Part

05

부정수급 업무처리

I. 부정행위 개요	238
II. 부정행위 예방 노력	243
III. 부정수급 조사 실무	244
IV. 행정사항 및 사후조치 등	263

Part

06

조건부 수급자 운영지침

I. 운영 개요	270
II.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운영	272

Part

07

'26년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시행 지침

I. 사업 개요	280
II. 세부 지원요건	283
1. 지원요건1(지원대상)	283
2. 지원요건2(직업훈련)	283
3. 지원요건3(빈일자리 업종 및 기업)	286
4. 지원요건4(취업 및 취업성공수당)	287
5. 지원요건5(지급 시기)	288

0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괄**

1 개요

- **(의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추진 경과)** ’18.8. / ’19.3. 경사노委 기본 합의, ’19.6. 일자리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발표
 → ’19.9.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 → ’20.5. 국회 통과, ’21.1.1. 시행
- **(근거 법령 등)**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등 지급사무규정(예규)
- **(지원 요건)**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II 유형으로 구분

참여유형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단위 재산	취업경험
I 유형	요건심사형 (요건 해당시 의무 지원)	15 ~ 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청년의 경우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예산상황에 따라 선발 지원)	비경험 15 ~ 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5 ~ 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최대 3년))	15 ~ 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최대 3년)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선발 시 고려
II 유형	특정계층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취약계층)	15 ~ 69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청년층	15 ~ 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최대 3년)	소득요건 없음		
	중장년층	35 ~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I 유형 선발형은 예산상황에 따라 선발 지원하기 위해 기준점수 운영(기준점수 이상자만 수급자격 인정)

● (지원 내용)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

구분	유형	세부 지원내용
취업 지원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활동계획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의지별 수립 💡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등 제공 💡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알선 등
	I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p>* 기본 60만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p>
소득 지원	II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활동비용 ①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15~25만원(1회) 지원 ②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취업상담·알선참여시 1회 2만원(5회) 지원 <p>* '25년 취업지원 신청자까지 취업활동비용 중 '훈련참여지원수당' 지원</p>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 <p>* I·II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및 특정계층 참여자</p>

2

운영체계

가

전달체계

- 고용노동부 본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에서 기획·총괄하고, 소속기관인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서 집행
- 집행업무 중 수급자격 인정 및 수당 지급, 부정수급·제재 업무 등은 고용센터에서 전담하되,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는 민간위탁 운영기관 및 유관 고용서비스기관(새일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에서 일부 수행 가능

▣ 본부 및 지방관서 업무 전달체계도 ▣



● 수행 주체별 역할

전달체계	역할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설계 총괄, 법령 제·개정, 업무매뉴얼 관리, 고용센터(국민취업지원과·팀) 관리,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수행
고용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 사후관리 등 민간위탁 운영기관 관리, 유관 고용서비스기관과의 연계·협업 업무 등 총괄 수행
민간위탁 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유형 선발형 청년 및 II 유형(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전체 수급(자격)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유관 고용서비스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일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으로 협업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대상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

● **(필요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재량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효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센터별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

-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소위원회(이하 운영 소위원회라 함)를 고용센터별로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및 운영 소위원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자 및 업무매뉴얼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음

-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고용센터 소장, 위원은 위원장 및 담당 과(팀)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고용·노동 관련 외부전문가가 3인 이상 포함 구성 필요)
 - 운영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고용센터 소장이 되며, 3인 이상 5인 이내로 운영할 수 있고 고용·노동 관련 외부전문가가 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운영시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월 1회 운영하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센터 상황에 따라 필요시 개최 가능
 - 운영위원회(운영 소위원회)는 5인(3인) 이상 출석의 대면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대체
- **(심의 내용)** 위원장은 다음 사유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소)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음

구분	내용
취업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이 취업의사가 없거나, 훈련참여 및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등 근로능력 또는 취업의사가 없어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사람인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특정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요건 판단과 관련해 문제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와 실질적으로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등 신청인이 여성가구주로서 취업지원이 필요한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자녀 수급자격 결정을 위해 신청인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위기청소년으로서 취업지원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신청인이 노무제공자로서 취업지원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미혼모(부)·한부모로서 취업지원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가구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단위 구성원의 확정을 위해 신청인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재산(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 가액 산정시, 승용자동차가 생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미이행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 중에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 판단 ● 그 밖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심의 절차)** 위원회는 심의 사안별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심의표'에 따라 평가하고 심의결과를 결정
 - 운영(소)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내용의 적절성을 조사 가능, 관련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별 심의결과를 합산한 결과표에 따라 심의결과를 최종 결정
 - 위원별 심의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수로 의결하고 기권 등으로 인하여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최종 결정
- **(결과 통지 및 재심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심의가 결정된 이후 3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지
 - 운영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당사자가 이의 또는 재심의를 요구할 시 운영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 위원장은 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의내용을 취소할 수 있음

3 업무 프로세스



참여자										
수급자 안내 동영상 시청, 신청 상담 참여	참여신청, 개인정보 제공 동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수급자격 인정 불인정시 이의제기 가능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취업활동 계획 수립	취업지원 및 복지 서비스 참여	구직활동 프로그램 참여	취업	취업 성공 수당 신청	
매 회기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								미취업		

고용센터

Front Office

신청 전 상담 제공, 참여유형 안내, 구비서류 안내 등	온오프라인 접수창구 운영	서류보완 및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청	수급자격 인정 통보, 후속절차 안내 수급자격 불인정 통보, 이의제기 절차 안내	직업·구직 선호도 검사,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 제공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지원 및 금융·복지 서비스 제공 및 연계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동행면접, 취업알선 등 제공	취업: 근속유지 상담 제공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 취업정보 제공 등 취업알선
매 회기별 구직촉진수당 지급								

Back Office

참여자 모집 및 발굴을 위한 홍보 등	신청자 현황 통계 관리 등	제출서류 확인, 소득재산 조사, 취업경험 등 요건 확인	불인정 이의제기 건 검토	매 회기별 구직활동의무 이행상황 확인, 구직촉진수당 지급 처리			이력 관리	취업성공 수당지급 요건 확인 지급 처리
서비스 연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사례관리협의체 운영								

참여자별 진행 상황 내부 업무시스템(전산) 입력 등을 통한 관리 업무

전산망

제도안내	온라인 신청(내) 및 접수(외) 기능 제공	소득재산조사 시스템 (사회보장 시스템 연계)	수급자격 인정 및 불인정 결과 온라인 통보	온라인 검사 기능 제공	온라인 수당 지급 신청 기능 제공
참여자별 진행상황 관리 기능 제공(담당자·참여자)					

02

수급자격

I

수급자격 요건

- 수급자격은 ①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법 제6조)과 ②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법 제7조)으로 구분
 -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만 갖춘 경우 II 유형으로 지원
 - I 유형은 요건 해당 시 의무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요건심사형과 취업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선발형으로 구분

1

공통 요건(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1. (취업하지 못한 상태) 별도의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미취업자

- 다만, 현재보다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직을 희망하는 불완전 취업자는 참여 가능

구분	참여 요건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로
노무제공자	월 250만원 미만 소득 발생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월 250만원 미만 소득 발생(II 유형 특정계층 영세자영업자 제외) - 소득이 확인되지 않을 시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소득으로 환산 II 유형 특정계층 영세자영업자는 3. II 유형 요건(특정계층 중심) 25p, 조정률은 II-2-나. 소득조사 44p 참고

- 채용약정형 훈련 참여자 등 이미 취업이 확정된 자는 참여 불가

2. **(근로능력이 있는 자)** 본인의 정신·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 환경적 요인에 의해 명백히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참여 불가

* 요양으로 인한 산재휴업급여 수급자, 자녀양육에 따른 육아휴직자,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은 참여 제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등은 II유형 요건(특정계층 중심) 20p 참고

3. **(구직의사가 있는 자)**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나 구직의사가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참여 불가

- ① 학업 또는 군복무 중인 자,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자, 심신장애 및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곤란한 자
- 다만, 졸업 또는 전역을 앞두고 있어 신속한 취업지원이 필요하거나 학업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직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

구분	참여 시기
졸업 예정자	<p>🔦 (고등학생) 2월 졸업예정자는 같은 해 1월 1일부터 참여 가능</p> <p>- 다만, 특성화고 및 마에스티고 3학년 재학중으로 상급학교 미진학 예정자, 취업을 목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또는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 중인 3학년 재학생은 7월 1일부터 참여 가능</p> <p>🔦 (대학(원)생)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참여 가능</p> <p>-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8월 졸업예정자는 같은 해 1월 1일부터 참여 가능</p> <p>- 다만, 졸업 시 전문자격을 취득하여 해당분야로 취업하는 의학계열 학과는 제외하여 2월(8월) 졸업예정자는 같은 해 1월 1일(7월 1일)부터 참여 가능</p> <p>* 의학계열 학과: 전공교육편제 단위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의학(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및 중분류 약학(약학, 한약학), 간호(간호학), 의료예과 분야</p>
전역 예정자	<p>🔦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방문상담 등에 참여가 가능한 전역 2개월 이내부터 참여 가능</p> <p>- 단, 취업활동계획 수립(일)은 반드시 전역일 이후가 되도록 지정</p>
학업과 취업이 병행 가능한 자	<p>🔦 학칙에 따른 교육체계 특성상 학업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재학(휴학)생은 참여 허용</p> <p>-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방송통신고 및 야간고교 등</p> <p>- 다만,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야간 또는 주말에만 수업을 하는 주간 대학(원)생은 참여가 불가</p>

- ② 본인의 교양·여가 등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수강하려고 하는 자

4. **(연령)** 취업지원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5세 이상 69세 이하인 자

*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15세이상 64세이하까지 지원되나, 65~69세도 고시를 통해 별도 참여자격이 인정됨

5. **(소득)**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 자. 다만, 청년 등 고시에 정한 취업취약계층은 소득 무관

*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년은 중위소득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 고시를 통해 소득과 무관하게 참여자격 인정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8월 고시(다음해 1월 1일 시행)

참고 2026년 기준 중위소득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

청년이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최대 3년)을 가산

* 병역의무 이행은 남자만 해당

참고 병역의무이행 역종별 복무기간

역종 및 복무 기간			
현역	육군(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21개월)	대체역	대체복무요원(36개월)
예비역	상근예비역(18개월)	장교	장기 사관학교 졸업(10년)

역종 및 복무 기간				
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36개월)	장교	단기	장기복무 외(3년)
	사회복무요원(21개월)		단기	3사관·간호사관학교(6년)
보충역	예술·체육요원(34개월)	부사관	단기	ROTC(2년 4개월)
	공중보건역사(36개월)		장기(7년)	* 군필수 기술분야(10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36개월)	단기(4년)		
	공익법무관(36개월)	준사관(5년)		
	공중방역수의사(36개월)	* 군필수 기술분야(10년)		
	전문연구요원(36개월)			
	산업기능요원(34개월 또는 23개월)			

6. **(취업지원 종료사유 미해당자)** 법*에서 정한 취업지원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경우 참여 불가능

* 법 제29조제1항제3호, 제9호 및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3호, 제7호

①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

* 중앙부처 직접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참고

② **(구직급여 수급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 발생하는 조기재취업수당 등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직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 받는 자)** ①국가·지자체가 ②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 수당을 지원 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③월평균 지원금액이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 금액이 300만원 이상의 수당 지원

* 구직활동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행 조건을 전제로 수당 지급 유무가 결정되는 사업으로 한정되며, 일경험 등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일반적인 직업훈련 등에 참여한 경우 및 신청인 본인이 기여금·보험금을 납부하여 수당 자원 마련에 기여한 경우는 제외

* ①+②+③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된 경우만 제한하고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제한하지 않음

7. **(재참여 제한기간 중이 아닌 자)** 취업지원 종료 이후 재참여 제한 기간이 경과한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재참여 가능

취·창업 및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로 종료한 경우 1~2년으로 단축, 자세한 내용은 3부
 III-4. 재참여 제한 119p 참고

8. **(기타 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중 성실하게 참여가 가능한 자. 다음과 같은 경우는 참여 제한 가능

- 반복적인 훈련만 참여 및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자, 특별민원 등을 상습·반복 발생시킨 자 등 고용센터장의 결정 또는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참여가 어렵다고 결정된 자

㉟ 상습·반복적인 특별민원 대응 방안

- **【관련】 국민취업지원제도 특별민원 대응 매뉴얼** 개정 시행
 (국민취업지원기획팀-3018, 2024.9.16.)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관리 강화 주요 내용**

- ① **구직의사가 없는 자의 수급자격 관리**

모든 업무 단계에서 구직의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구직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하면 수급자격 불인정, 철회 등 제재 조치, 다만 제재 없이 지속 참여하면서 특별민원을 일으키는 참여자는 특별민원 수급자격 관리에 따라 처리

- ② **특별민원 수급자격 관리**

가. (상습·반복 특별민원 종료 처분) 모든 업무 단계에서 특별민원을 3회 이상 발생시킨 경우 종료처분, 다만 성희롱, 모욕·협박에 해당하는 폭언, 업무방해, 폭행, 상해 유형은 1회 발생 즉시 종료처분 가능

나. (예방적 조치) 특별민원에 이르지 않는 않았더라도 대면 상담이나 이메일 또는 유선상으로 상담사에게 위협을 가하는 위험 민원은 해당 민원인과 상담사가 직접 또는 단독 대면하지 않도록 조치

2

I 유형 요건(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 공통(취업지원서비스)요건을 충족하고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I유형으로 지원

1. **(소득)**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다만 청년은 100분의 120 이하
 - *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초과 120% 이하인 경우 선발형으로 구분(다만, 요건심사형의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신청인 본인 소득) 신청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미만
2. **(재산)**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 다만 청년은 5억원 이하
3. **(취업 경험)**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통산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요건심사형, 선발형으로 구분

I I 유형 세부유형별 수급요건 I

I 유형 세부유형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단위 재산	취업경험
요건심사형		15 ~ 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청년의 경우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	15 ~ 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특례	15 ~ 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최대 3년)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선발 시 고려



1 유형을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하는 이유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요건심사형은 법 제7조제1항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충족 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예산 의무지출 대상인 반면, 선발형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 대상으로 운영

● **선발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기준(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6조(소득 및 재산의 금액, 취업의 곤란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① 영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점수 이상으로서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준 점수는 예산 지원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별표 3] 선발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기준(제6조 관련)

구분	내용	점수	
		비경합*	청년특례**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40	50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초과 50% 이하	30	45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60% 이하	20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초과 80% 이하	-	40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초과 100% 이하	-	35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120% 이하	-	30
재산의 합계액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	30	30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22	22
	재산의 합계액이 2.5억원 초과	14	14
미취업기간 또는 취업준비기간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취업한 기간이 총 60일(또는 480시간) 이상인 경우	30	20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취업한 기간이 총 30일(또는 240시간) 이상, 60일(또는 480시간) 미만인 경우	22	12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취업한 기간이 총 30일(또는 240시간) 미만인 경우	14	4
자녀	미취학연령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산점 5점 부여	가점 5점	가점 5점
유사 제도 및 사업 수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제8조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제9조의 지원을 받은 경우	감점 10점	감점 10점
	신청일 이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제8조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제9조의 지원을 받은 경우	감점 5점	감점 5점
구직의사 및 건강상태	구직의사가 없거나, 건강 상태로 인해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에서 제외		

*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점수

**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점수

※ 합산 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의 순서(① → ② → ③)에 따라 점수를 비교하여 우선순위 결정

①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 ②재산의 합계액, ③미취업기간 또는 취업준비기간

4. **(생계급여 미수급자)** 법령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제한
5.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 ①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6개월 경과 기산시점은 마지막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의 그 다음날부터로, 수급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다만, 취업 등으로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 실제 수급이 종료된 경우 실제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산정하되, 이 경우 취업지원 신청(처리)시점에서 구직급여 수급기간 만료일이 경과되는 등 실제 재실업신고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함
- ②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 직전년도 또는 해당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되는 **노동시장 이행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성실히 참여한 자**(중도탈락자 제외)는 사업 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으로 **즉시 참여 가능**
- * '26년 취업지원 신청자의 경우 '26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대상 사업에 '25년 또는 '26년 참여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I 유형으로 즉시 참여 가능



노동시장 이행형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강화

- **〈목적〉**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직접일자리 재참여를 희망할 경우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먼저 참여**토록 하여 민간일자리 취업을 집중 지원하고 취업이 안 될 경우 직접일자리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연계 대상〉**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즉시 참여가 가능한 직접일자리 참여자 중 **중도탈락하지 않고 성실히 참여한 자**
 - * 연계 대상 사업 매년 변경(지침 내 참여자격 확인-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를 통해 확인)
 - 3. II유형 요건(특정계층 중심) 27p 참조
- **〈참고〉** 연계 대상 직접일자리사업 **중도탈락시 I유형** 즉시 참여는 불가하나(일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동일하게 **6개월 경과 후 참여가능**), **1개월 이상 참여 후 중도탈락시 II유형 특정계층**으로는 참여 가능
 -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시) 제8조제2항제2호 및 별표1의 26

③ 국가·지자체가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 **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 300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사업 종료일(중단일)

3

II유형 요건(특정계층 중심)

- **공통(취업지원서비스) 요건을 충족하고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미충족하거나, 본인이 II유형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II유형으로 지원**
 - 취업취약계층 유형, 연령 등에 따라 **특정계층, 청년층(소득 무관), 중장년층(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으로 세부유형을 나누어 지원

I II유형 세부유형별 수급요건 I

II유형 세부유형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단위 재산	취업경험
특정계층	15 ~ 69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청년층	15 ~ 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최대 3년)			
중장년층	35 ~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임** 다만 청년, 취업맞춤특기병,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 저임금 근로자였던 실직자는 제외
 - *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 중 청년, 취업맞춤특기병은 II유형 청년층으로 지원
 - *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 저임금 근로자였던 실직자는 연령에 따라 II유형 청년층, 중장년층으로 구분하여 지원
- 청년 중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에 충족하지 못하고, 특정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II유형 청년층으로 지원
- 35~69세 신청자 중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에 충족하지 못하고, 특정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II유형 중장년층으로 지원
- **청년층 및 중장년층은 위와 같이 구분됨에 따라 본 장에서는 II유형 중 특정계층 요건을 설명**
 - * 특정계층 연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시) 별표1의 연번과 동일

1.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인 자)에 해당하여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 **(생계급여 수급자^{고용센터 전담 상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자치단체 또는 보장시설 등의 추천서를 받은 보장시설수급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다고 인정한 일반수급자
 - ① **(조건부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는 자치단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우선 참여대상으로 선정
 - * 당연대상자로 ‘6부 조건부수급자 운영지침’ 참고
 - ② **(보장시설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치단체, 보장시설 등의 추천을 받아 참여
 - ③ **(일반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하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희망하여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취업의지 등을 확인하고 자활·복지 담당 공무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참여 결정

일반수급자 중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자세한 내용은 3부 IV-4-다.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159p 참고

3.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숙인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주택 거주 사실에 대한 확인서 또는 추천서를 받은 자

4.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에 있는 자로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
 - * 거주지 보호기간은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에 기재된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간을 말함

5. **(여성가구주)**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 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55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인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하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이라도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해당

-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 ②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③ 혼인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동거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6.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자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7.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대한민국으로 중도에 입국한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인 중 부 또는 모가 결혼이민자이며 출입국관리법 상 거주·영주 체류자격(F-2, F-5)을 부여받은 자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자

8. **(신용회복지원자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의 조정을 통해 채무조정 합의를 체결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대상자 추천서' 또는 '신용회복지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법원으로부터 개인 회생절차 개시·파산 선고 등을 받고 면책(복권) 결정이 되지 아니한 자

9. **(위기청소년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학교 중도탈락, 가출 등으로 진로가 불안정한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 ② 검정고시 학력인정자로서 15세 이상 18세 이하의 비진학 청소년
- ③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조기 졸업자 가운데 15세 이상 18세 이하로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 ④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중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람 가운데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자립준비청년 등)
- 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6개월 이상 이용한 사람 가운데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10.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실직자)** 취업 지원 신청 이전 무역협정이 원인이 되어 생산량·매출액 등이 감소하여 실직한 자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을 운영하다 폐업한 사업주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 지원근로자로서 실직하였거나 주 30시간 미만 일하는 자
- 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폐업 지원을 받아 폐업한 농어업인으로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원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자

11. **(건설일용직 근로자)**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180일 동안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중 30일 이상을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자

12.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보훈(지)청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또는 추천서를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3. **(취업맞춤특기병^{특정계층 아님})** 가구단위 월평균 중위소득 60% 이하인 18~24세 육군·해군·공군 및 해병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취업취약계층이나 특정계층은 아님

* I 유형 또는 II 유형 청년층으로 지원

14. **(미혼모(부)·한부모·청소년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또는 제1호의2의 모 또는 부로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고용센터별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사실상 미혼모(부)·한부모로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의 청소년 부모에 해당하는 자

15. **(구직단념청년)** 청년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상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 교육·훈련·근로 이력*이 100일 미만인 사람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구직단념청년 집중취업지원 필요도 점수가 21점 이상인 경우

* ①교육은 대학 등 정규 교육과정도 포함, ②훈련은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등 수강 이력 포함, ③근로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이력이 모두 포함

16. **(청년^{특정계층 아님})**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초과자로 취업취약계층이나 특정계층은 아님

* II 유형 청년층으로 지원

17.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특정계층 아님})** 대학교 및 대학원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휴학)생으로 취업취약계층이나 특정계층은 아님

* I 유형 또는 II 유형 청년층으로 지원

18. **(산재로 장애를 입은 자)** 산재처리가 종료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애 등급이 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①「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이나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①, ② 해당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임

19. **(고용위기지역 등 지정에 따른 실직자)** 최종 이직 사업장이 아래 기준에 해당되고, 현재 실업 상태인 자

①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 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12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지역 소재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자

②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3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지역 소재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자

20. **(저임금 근로자였던 실직자^{특정계층 아님})** 최종 이직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액이 월 최저임금의 100분의 120 이하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하였으며, 가구 단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자

- 다만, 퇴사한 사업장의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닐 것

* I 유형 또는 II 유형 청년층/중장년층으로 지원

21.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이직자)** 최종 이직 사업장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으로 사업재편 계획 승인이 공표된 이후 퇴직한 자로,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자

22.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최종 이직 사업장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거나 지정업종이 속하는 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도급금액이 매출액의 1/2 이상인 기업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일의 12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퇴사한 실업자
23. **(영세자영업자)** 사업자등록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나, 신청일 이전 1년간 발생한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공적자료로 매출액 확인 불가 시 신청인으로부터 최근 1년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 다만, 아래의 경우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가구원의 소득·재산 및 취업경험요건 조사 등을 통해 참여 자격을 판단
 - ① 개업한 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
 - ② 신청일 이전 1년간 매출액이 0인 자영업자(휴업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참여여부 결정)
 - ③ 비영리법인의 대표
 - * 영리법인의 대표는 1년간 발생한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영세자영업자로 참여 가능
 - ④ 취업성공수당 지급 제외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 ⑤ 부동산 임대사업자
 - ⑥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친목단체설립 등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추구 및 사업소득 발생과 무관한 고유번호증 등 소지자나 프리랜서, 강사 등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자영업자로 참여 불가
 - ⑦ 다수의 사업자 등록 소지자는 1개 사업이라도 위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4. **(소상공인 및 성실경영실패자)** 이미 폐업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연 매출액 3억 이하의 영세자영업자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에서 ‘희망 리턴패키지 사업 참여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5. **(노무 제공자 등)**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아래 어느 하나로 취업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연 3,000만원) 미만인 자

* 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최근 3년 최저시급의 800시간분인 경우 인정(취업경험 조사방법과 동일, 11-2-라. 취업경험 조사 참고)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 ①보험설계사, ②건설기계운전원, ③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④골프장 캐디, ⑤택배기사, ⑥퀵서비스 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대리운전원, ⑩방문판매원, ⑪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⑫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⑬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자동차·곡물 운송,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⑭소프트웨어기술자, ⑮방과후교사, ⑯관광통역안내 종사원, 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원

② 그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 노무제공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센터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 저작권료, 계약유지 또는 영업실적에 따른 소득 발생, 프리랜서, 강사 등과 같이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증은 없지만 일정한 소득이 주기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자

26.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중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1개월 내 중도탈락한 자는 제외)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대상 사업에 한함

① '26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중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되는 직접일자리사업

'26년(7개 사업)	'25년(7개 사업)	'24년(9개 사업)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새일인턴운영)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새일인턴운영)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새일인턴운영)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 (부정경쟁행위단속지원- 모니터링단 운영)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 (부정경쟁행위단속지원- 모니터링단 운영)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 (부정경쟁행위단속지원- 모니터링단 운영)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민간연안안전지킴이)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민간연안안전지킴이)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민간연안안전지킴이)
국가유산 보존관리 정책강화 (국가유산산업인턴지원)	국가유산 보존관리 정책강화 (국가유산산업인턴지원)	국가유산 보존관리 정책강화 (국가유산산업인턴지원)
업종별재해예방(사고성재해 집중관리(안전한일터지킴이))	정원조성관리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정원조성관리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공공디자인및공예문화진흥 (청년디자이너인턴십)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 (체육분야인턴십)	도시재생사업 지원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지역포용형)
		신중년사회공헌활동(경력형)
		디지털격차해소기반조성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 '26년 연계대상 사업은 사업 신설 등으로 추가될 수 있음



취업취약계층(특정계층)별 수급자격 확인 방법

- 취업취약계층은 참여유형과 무관하게 취업지원 전산망에 취업취약계층 유형을 선택·입력하여 지원실적을 관리
 - 취업취약계층 중 II유형 특정계층으로 수급자격 인정시 참여유형 뿐 아니라 취업취약계층 유형도 선택·입력 필요

취업취약계층	수급자격 필요서류	확인방법 * 취업지원 전산망, 행정정보공공이용망 등을 통해 우선 확인
1. 기초연금 수급자 등	- 65~69세 이하 장년층 중 기초연금 수급자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인 자)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는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 입증서류 -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 바로원 시스템
2.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는 보건복지부 연계자료 활용 (국취 내 연계조회 화면)
	보장시설 수급자 (지자체·보장시설 등의 추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 입증서류 - 지자체·보장시설 등의 추천서
3.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행안부, 국토부) 비주택 거주 사실에 대한 확인서, 부랑인복지시설(입소자 확인서), 노숙인쉼터(입소자 확인서), 상담보호센터 (보호자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 입증서류 - 비주택 거주사실에 대한 확인서(지방자치 단체 확인), 부랑인복지시설(입소자 확인서), 노숙인쉼터(입소자 확인서), 상담보호센터(보호자 확인서)
4.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통일부 연계자료 활용(국취 내 연계조회 화면)
5. 여성가규주	(배우자가 무)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가족관계 실시간 조회 활용(국취 내) • 민원인 입증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배우자가 유) 가출·행방불명(실종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가족관계 실시간 조회 활용(국취 내) • 민원인 입증서류 - 실종신고서
	장애(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공공이용망 활용 - (보건복지부)장애인증명서 - (국가보훈부)국가유공자 확인서(유족) - (보건복지부)장애급여지급 통지서
	질병(의사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 입증서류 - 의사진단서
	군복무(복무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공공이용망 - (병무청)병적증명서
	학교 재학(재학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 입증서류 - 재학증명서

취업취약계층	수급자격 필요서류	확인방법 * 취업지원 전산망,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우선 확인
5. 여성가家主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 입증서류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가족관계 실시간 조회 활용(국취 내) - 배우자 확인 • 고용보험전산망에서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 확인
	이혼소송 제기 등(이혼소송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 입증서류 - 이혼소송 확인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이혼신청서
	기타 가족생계 부양(통·반장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 입증서류 - 통·반장확인서
6. 결혼이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국적 취득자) 혼인관계증명서(국적표기), 국적표시가 미표기시 국적표기된 기본증명서 - (한국국적 미취득자) 외국인등록증(체류자격확인 F-2, F-5, F-6), 혼인관계증명서(국적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가족관계 실시간 조회 활용(국취 내, 한국국적 취득자만)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 (법무부)외국인등록사실 증명(체류자격 명기됨, B형) • 민원인 입증서류 - (법무부)외국인등록사실 증명(체류자격 명기됨, B형) - (행안부)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불가 시)
7.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또는 모가 결혼이민자일 것 - 15세 ~ 24세 이하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가족관계 실시간 조회 활용(국취 내)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 (법무부)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법무부)출입국정보 • 민원인 입증서류 -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등 가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 (행안부)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불가시)
8. 신용회복지원자 등(정책서민 금융이용자 포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확인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대상자 추천서, 채무조정 및 조정확약서, 회생결정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 입증서류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확인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대상자 추천서, 채무조정 및 조정확약서, 회생결정문

취업취약계층	수급자격 필요서류	확인방법 * 취업지원 전산망, 행정정보공공이용망 등을 통해 우선 확인
9. 위기청소년 등 (자립준비청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상담 및 보호시설 확인서 또는 추천서, 제적증명서, 자퇴서, 초·중·고 졸업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보호종료 확인서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공공이용망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검정고시합격증명서 - (교육부)고등학교졸업증명서 • 바로원시스템 활용(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대상) • 민원인 입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상담 및 보호시설 확인서 또는 추천서, 제적증명서, 자퇴서, 지자체 보호종료 확인서,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10. 자유무역협정 피해실직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사업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FTA 체결에 따른 폐업지원 농어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공공이용망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폐업사실증명 • 고용24 취업지원 고용현황관리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목록,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목록 • 민원인 입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체결에 따른 폐업지원 농어업인
11. 건설일용직 근로자	신청일 이전 180일 중 30일 이상 건설일용직으로 근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전산망 확인 (일용근로내역, 피보험자이력조회)
12.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지)청에서 발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 입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훈부)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행정정보공공이용망을 활용하여 유공자 여부*는 확인할 수 있으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확인은 불가하여 민원인 제출 필요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
13. 취업맞춤 특기병 * 취업취약계층 이나 II유형 특정계층으로 자원불가	(병무청)취업맞춤특기병 지원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지 먼저 확인 • 민원인 입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무청)취업맞춤특기병 지원확인서
14. 미혼모(부)·한부모	(성평등가족부)한부모가족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공공이용망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가족부)한부모가족증명서 • 민원인 입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추천서
14의2. 청소년부모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공공이용망 또는 대법원 가족관계 실시간 조회 활용(국취 내)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15. 구직단념청년	신청일 기준 2년 동안 교육, 훈련, 근로이력이 없는 청년 중 대상자 문답표 21점 이상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훈련, 근로이력 확인 •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 활용

취업취약계층	수급자격 필요서류	확인방법 * 취업지원 전산망,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우선 확인
16. 청년 * 취업취약계층 이나 II유형 특정계층으로 지원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으로 확인하되, 소득정보 확인하여 참여유형 구분
17. 대학교 (대학원) 졸업예정자 * 취업취약계층 이나 II유형 특정계층으로 지원불가	대학교 및 대학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 및 휴학 중임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인 입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를 통해 마지막 학기 확인
18.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애등급이 있고, 장애인고용촉진(장애인 기준에 해당)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상이등급기준에 해당)에 각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근로복지공단 추천서 확인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인 입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복지공단 추천서
19. 고용위기지역 등 지정에 따른 실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지정된 날의 12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기간 중 해당지역 소재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한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 상태인 자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이직자: 지정된 날의 3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기간 중 해당지역 소재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한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 상태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전산망 자료 확인
20. 저임금 근로자였던 실직자 * 취업취약계층 이나 II유형 특정계층으로 지원불가	월평균보수액이 월 최저임금의 100분의 120 이하로서 1개월 이상 근무후 퇴사한 근로자로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 가구원(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닐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법원 가족관계(배우자, 사업주의 존비속) 실시간 조회 활용(국취 내) 고용보험전산망 확인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은 소득조사 자료 활용
2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자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서 근무, 승인이 공표된 이후 퇴사하고,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15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자원통상부에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여 승인(공표) 받은 사실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자부 홈페이지 활용 가능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은 소득조사 자료 활용

취업취약계층	수급자격 필요서류	확인방법 * 취업지원 전산망,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우선 확인
22.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실직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로 경영악화에 의한 고용조정실직자 - 지정한 날의 12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기간중 해당업종 기업에서 퇴사한 이력이 있고, 실업상태에 있는 자 ①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근로한 자 ② 해당 업종의 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도급금액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에서 근로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전산망 확인(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확인) 민원인 입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확인 도급금액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에서 근로한 자(도급계약서)
23. 영세 자영업자	신청일 이전 매출액이 3억원 이하 자영업자 (아래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 - 취업성공수당 지급 제외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 임대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민원인 입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1년간 매출액 자료(필요시)
24. 소상공인 및 성실경영 실패자	-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 성실경영실패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확인서를 받은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인 입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참여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확인증
25. 노무제공자 등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연속, 비연속 불문) 노무제공자형태근로에 종사 중인 자로서,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연 3,000만원) 미만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고용보험전산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무제공자인지 여부 고용보험 이력조회 민원인 입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 신고서류 등 관련 자료
26. 직접일자리 참여자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중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되는 노동시장이행형 사업에 참여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로원 시스템 확인(일모아수혜이력) 민원인 입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시 해당사업 참여 확인서

II

수급자격 조사

1

조사기준

1. 공통 기준

- **(공적자료 우선 적용)** 신청인 및 가구원에 대한 소득조사 및 재산조사는 원칙적으로 취업지원 전산망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
 -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불완전 취업 여부 확인을 위해 최근 사업소득을 조사·확인 후 반영
 - * II유형 특정계층 영세 자영업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등 최근 매출액 확인 필요
 - 공적자료에는 재산 보유여부 및 공시지가 등 재산 가액이 통보되나, 재산 가액이 없거나 추가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확인 후 반영
-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 반영)** 취업지원 전산망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 자료는 수급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확인된 자료 반영이 원칙
- **(자료제출 요구 등)** 취업지원 전산망으로 조회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는 신청인에게 직접 해당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반영하되, 기일을 정하여 요구 법 제9조제5항, 시행령 제6조제2항
 - 취업지원 전산망으로 조회된 소득·재산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원천 기관의 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 결과 적용
 - * 이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취업지원 전산망에 등록

- 다만,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즉시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해당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수정 여부를 판단하여 전산망에 반영
- 취업지원 전산망 또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자에게 제출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

2. II유형 심사절차 간소화 기준

- 신청자가 II유형 청년층으로만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별도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인의 확인 필요
- 또 II유형 특정계층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도 별도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으나, 소득기준이 있는 특정계층*은 반드시 소득 조사 필요

* 21.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이직자 등

① 소득 및 재산조사 미실시 동의자에 대한 전산처리

- 소득 및 재산조사 미실시자는 **사회보장시스템 연계없이 가구원 구성 확정 후 당일 연계완료 처리**. 이후 소득/재산조사 등 미실시 동의여부에 '동의함'으로 체크하고, 동의서를 첨부
 - 만일, 소득조사 미실시 동의자에 대해 사회보장시스템 연계되어 소득 및 재산 공적자료가 연계되었다면 반드시 이를 취소하고 가구원 구성 확정 후 바로 연계 완료처리 하여야 함 (취소하지 않을 경우 연계된 공적자료 소득으로 전산 반영)

3. 개인정보 보호

-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수급자격 결정 등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할 수 없음 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항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조사사항

| 수급자격 조사 개요 |

조사 사항	조사 내용	확인 방법
가구단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재산조사의 기본 단위가 되는 가구원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지원 전산망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배우자·1촌 이내 직계혈족 자동 확인 다만,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가구원 포함·제외 여부 확인
소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지원 전산망 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공적자료 확인 다만, 공적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적자료 수정·별도 자료 제출 등을 통해 확인
재산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재산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지원 전산망 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공적자료 확인 다만, 공적자료와 실제 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적자료 수정·별도 자료 제출 등을 통해 확인
취업경험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2년간 취업한 사실 유무 및 취업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지원 전산망을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및 사업자등록기간 확인 노무제공자, 근로장학생 등 전산망으로 공적 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사용자 등의 확인을 받아 신청인이 직접 자료 제출
구직의사 및 근로능력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직욕구, 건강상태, 학력, 미취업기간, 자격증 보유 등 전반적인 근로능력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지원 신청 단계 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단계에서 1대1 상담 및 취업역량평가 등을 통해 확인

가 가구단위의 판단

1. 가구단위(가구원)의 범위

- **(일반원칙)**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①신청인 본인, ②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③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 따라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의 배우자·1촌 이내 직계혈족 및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1촌 이내 직계혈족이 아닌 가구원*은 가구단위에서 제외함이 원칙이나,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음
 - *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민법상 가족에 한함



「민법」상 가족의 범위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구원 제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의 배우자·1촌 이내 직계혈족도 아래 사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①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② 외국에 최근 180일간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 * 다만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 (예, 배우자의 해외 근무 등)
- ③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치료감호시설이란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교정시설로 심신장애와 마약 등 중독자의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④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 수급자)
- ⑤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⑥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⑦ 그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2. 가구원 확인 방법

- 취업지원 전산망에 연계된 주민등록표를 통해 가구원 확인 원칙
- 다만, 세대가 분리된 가구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산망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필요시 신청인에게 직접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3. 가구단위 확정 절차 등

①-1 온라인 신청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상 배우자·직계혈족에 대한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를 기입하고,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자동으로 소득·재산 조사 요청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문자 발송 이후 가구원이 확인·동의하는 방식이며,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동의처리 가능

- 다만, 주민등록표와 기재한 가구원의 불일치,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신청인의 가구원 추가·제외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산망을 통해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계 서류 확인

①-2 오프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및 가구단위 구성 변경 의사 등을 확인하고, 가구단위 변경이 불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상 배우자·직계 혈족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소득·재산조사 요청
- 가구단위 구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혼소송확인서·실종신고서 등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안내



가구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는 오프라인 신청 시 가구원이 동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실시
- ② 가구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미소지, 해외 체류 등으로 문자·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이용 등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의서를 출력하여 서명한 이후, 스캔·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 활용

② 가구단위 확정

- 신청인 본인의 신청으로 가구원 포함·제외가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생계·거주 상황을 확인하고 담당자가 가구단위를 확정
- 다만, 담당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별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최종적으로 가구단위를 결정

③ 소득·재산 공적자료 재요청

- 가구단위 구성이 최종 결정되면 판단의 근거가 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빙자료 및 결정 사유 등을 전산망에 등록하고, 변경된 가구단위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재요청 필요

* 가구원 변경에 따라 소득·재산조사를 재의뢰하는 경우 수급자격 결정에 처리기한이 초과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 신청인에게 안내 및 처리지연 통보 등 절차 준수 필요

나 소득조사

- 확정 가구원의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1. 소득의 종류 및 조사방법

①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은 제외하되,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①생산직 근로자 등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소득과 ②국외·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 금액은 포함

┃ 근로소득 연계 정보 ┃

구분	순위	연계정보	수신자료 시점	원천기관 변경시기	특징
상시 근로소득	* 공적자료 우선순위에 따른 월급여액 정보 제공				
	1순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전월	4월	직장가입자 기준
	2순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②-1. 산재보험, ②-2. 고용보험	전월	4월	직장가입자 기준
	3순위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전월	7월	직장가입자 기준
4순위	국세청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	매년 10월경 전년도자료 갱신	10월	정확. 단, 시차 발생	

구분	순위	연계정보	수신자료 시점	원천기관 변경시기	특징
일용 근로소득	* 동일 사업주에게 3개월(건설공사·항만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할 때				
	1순위	국세청 일용근로소득내역 (3개월 평균)	전전분기 정보	매분기	사업장에서 신고한 정보
	2순위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3개월 평균)	전전분기 정보	매분기	사업장에서 신고한 정보
기타 근로소득	*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공공근로				
	단일 정보	행복e음(자활) 한국고용정보원(공공)	전월	매월(자활) 수시(공공)	공공일자리 소득 중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건강보험보수월액이 아닌 공공일자리 소득으로 산정

① **상시근로자 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조사방법) 여러 기관의 공적 자료가 확인될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① → ④)에 따라 반영됨



상시근로소득 반영 우선순위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 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 ②-1. 산재보험(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 ②-2. 고용보험(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 직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④ 국세청 자료: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② **일용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최근 3개월간 평균하여 반영

- * ①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②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③ 하역(항만)작업 종사자(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 (조사방법) 국세청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또는 고용노동부 일용근로 소득내역) 조회 결과 반영

- * EITC(근로장려금) 시행을 위해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지급한 임금을 국세청으로 신고한 자료

- 공적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
- 고용주 또는 공공기관의 입증자료 제출 시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상실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제한적으로 인정

③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조사방법)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시·군·구에서 매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임금지급 내역을 반영

④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참여 소득(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경우)*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로 상시 근로소득에 반영됨

» (조사방법)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소득을 반영*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연계되는 자료가 아니므로, 일모아 시스템에서 조회된 공공일자리소득과 시스템으로 연계된 상시근로소득을 확인·비교하여 중복 정보가 아닌 경우 공공일자리소득을 총소득에 합산·반영



동일사업장 소득자료 중복시 우선처리 기준

- 동일 사업장(소득 발생 사업장의 사업장등록번호 일치)에서 아래의 소득이 동시에 회신된 경우 처리기준
 - ① 상시-일용 근로소득 중복 → 상시근로소득만 반영
 - ② 상시근로소득-국세청 사업소득 중복 → 사업소득만 반영
 - ③ 국세청 근로소득-국세청 사업소득 중복 → 두 소득을 합산하여 사업소득으로 반영
 - ④ 자활근로소득-상시 및 일용근로소득 → 자활근로소득만 반영
 - ⑤ 공공일자리 소득-공공일자리 건강보험가입(월보수액) → 공공일자리 소득으로 산정

2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등
 - 임대소득의 경우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포함

사업소득 연계 정보

구분	순위	연계정보	수신자료 시점	원천기관 변경시기	특징
사업소득	단일정보	국세청 종합소득금액 (사업/임대)	매년 10월경 전년도 자료 갱신	10월	정확. 단, 시차 발생

» (조사방법)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 반영

- 임대소득의 경우, 취업지원 전산망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의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하고, 공적자료 조회 결과 건물·상가·본인 거주 외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

- 노무제공자의 소득은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등 공적 자료를 기초로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노무제공확인서, 수당 지급내역 등도 최소한의 객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인정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

- **【개요】** '21.7.1.부터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월 보수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
 - 이에, 수급자격·취업지원 종료 시 신고된 월보수액을 적용하여 업무처리

적용 시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직종
'21.7월 (12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기사)
'22.1월 (2개)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22.7월 (5개)	IT소프트웨어 기술자,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 **(월보수액)**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월보수액으로 신고됨**
- **【월보수액 적용 기준】** 신고된 월보수액은 경비를 제외하고 있어 신고된 월보수액을 매출(수입)이 아닌 **소득으로 적용하여 업무처리(별도 증빙자료 제출없이 고용보험에 신고된 월보수액*으로 처리)**
 - * 고용보험시스템상 월보수액은 최초 신고 당시의 월보수액(월보수액이 계속 8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취득상태 유지)으로 나타나므로, 취업·종료 등 사유 발생시 월보수액 확인은 수급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월보수 신고내역을 제출받아 판단
- **(수급자격 인정)** 수급자격 신청 시 월보수액이 250만원 이상이면 완전한 취업상태로 수급자격을 불인정하고 수급자격 인정 이후 소급 신고로 250만원 이상 월보수액이 확인되면 수급자격 인정 취소 또는 불인정으로 처분 변경

» (추가 조사방법) 사업소득을 공적자료 등으로 즉시 확인이 어려우면 다음과 같이 매출액 가운데 일정 부분을 경비로 간주하여 산정(취업지원서비스기간 중 사업소득 확인 시에도 동일 적용)

- 업종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 조정률을 세분화^{고시 제3조제3항}
(사업소득 = 매출액 × 업종별 조정률)
 - * 근로장려금 제도의 업종별 조정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4호) 준용
 - * 업종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 및 종목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적용하여 확인

Ⅰ 업종별 소득 조정률 Ⅰ

	업종	조정률
1	도매업	20%
2	농업, 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3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밖에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30%
4	제조업, 음식점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40%
5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45%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7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8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인적(人的)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70%
9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10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90%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노무제공자 프리랜서인 경우: 고시 제3조제3항10호의 “인적용역”으로 간주하여 업종별 조정률 90% 일괄 적용

※ 2 이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의 매출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고, 업종별 각각의 사업매출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1개 업종을 선택하여 조정률 적용 가능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업무처리 기준

1 가구원이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 업무매뉴얼 조사 기준 원칙에 따라 **공적자료 우선 적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사업소득은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국세청 종합소득금액이 확인되나, 수급자격 조사 원칙에 따라 취업지원 전산망에 **수신된 사업소득 금액대로 인정**
 - 다만, 가구원의 사업소득이 감소하였다고 **신청인이 소득 수정을 요청한 경우** 국세청 신고자료 등으로 한정하여 소득 변동 사실 인정 가능

2 신청인 본인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II유형 특정계층 영세자영업자 제외)

- **불완전 취업 상태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최근 사업소득 확인 필요** → 아래 순서에 따라 사업소득 확인
 - ① **(1순위, 전년도 사업소득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연계된 사업소득(공적자료) 또는 소득금액증명 상 사업소득액 적용
 - * 공적자료로 전전년도 사업소득이 연계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확인 필요
 - ② **(2순위, 전년도 또는 이전 반기 매출액 확인)** 전년도 사업소득이 확인되지 않거나 전년도 사업소득보다 감소하였다고 신청인이 소득 수정을 요청한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제표 등을 통해 전년도 또는 이전 반기 등 최근 매출액을 확인하여 소득으로 환산* 적용
 - *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3조제3항) 적용
 - ③ **(3순위, 신청인 증빙)** 사업 개시 후 일정시간이 지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한 매출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매출 증빙자료를 신청인에게 제출받아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
 - * 수급 중 월 소득 25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수급자격이 종료됨을 사전 고지

3 재산소득

- 「소득세법」 제16조·제17조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재산소득 연계 정보 ■

구분	순위	연계정보	수신자료 시점	원천기관 변경시기	특징
재산소득	단일정보	국세청 종합소득금액(이자)	매년 10월경 전년도자료 갱신	10월	정확. 단, 시차 발생

» (조사방법) 취업지원 전산망을 통해 조회되는 재산소득 반영

4 이전소득

- 5개 연금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연금·급여 등 공적 이전소득으로 한정

■ 이전소득 연계 정보 ■

구분	순위	연계정보	수신자료 시점	원천기관 변경시기	특징
공적 이전소득	단일정보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연금, 사학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전월	1월	전월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전소득 및 재산으로 미반영

» (조사방법) 취업지원 전산망 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5개 연금소득에 한정하여 반영

2. 소득 산정 관련 업무처리 보완 기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된 가장 최근의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소득 산정함이 원칙**이나 신청인에게 소명을 안내하여 **현재의 소득 변동상황을 반영***

* 취업지원 신청 시의 소득 상태를 최대 반영

-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전에 현재 취업상태(고용보험 상실, 휴·폐업 신고 등)를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신청인의 퇴사·폐업 사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 또한, 신청인이 공적 자료가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 직접 소명하도록 안내하고, 소득 변경 상태가 확인되면 취업지원 전산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자료에도 불구하고 소득정보 정정 반영
- 특히, 수급자격 불인정 최종 통지 전 신청인에게 불인정 사실 및 공적자료 확인 내용 등 불인정 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안내*

* 불인정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신청인이 심사·재심사 및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제기 가능

㉟ 소득 변경 사실인정 기준

● 신청인이 퇴사·폐업한 경우(전산망으로 확인)

- (직장가입자) 신청인이 이미 퇴사한 경우 4대 보험 상실 처리가 되어 있으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순위*에 따라 당해년도 국세청 종합소득이 확인됨
 - * (예: '23년 근무, '24년 퇴직한 사람의 상시근로소득) ①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0원), ②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0원), ③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0원), ④국세청 종합소득(100만원) ⇨ 100만원으로 표시

≫ 연계된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이 확인(고용보험 DB)될 경우 현재 해당 소득은 발생하지 않는 것(0원)으로 처리

* 취업지원 신청일 전일까지 퇴사하여, 해당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

- (사업자) 취업지원 신청 시 전산망 연계 사업소득은 기 신고된 국세청 종합소득이 반영됨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일 현재 사업 상태를 반영하지 못함

≫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휴·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현재 해당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없는 것(0원)으로 처리

* 4대보험통합시스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 **소득이 감소한 경우(신청인의 수정 요청·소명이 있는 경우)**

- (사업자) 국세청 신고자료 등으로 한정하여 소득 변동 사실인정

| 소득 변동 증빙 인정자료 |

인정 자료	비고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	국세청 홈택스 > My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서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매출)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③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매출)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④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제표	

※ 매출액은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고, 기준기간(월)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

- (노무제공자) ①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증빙 또는 ②계약서(또는 사업주의 급여지급내역, 급여지급 확인서)와 통장 거래 내역을 비교하여 수입을 확인한 후 조정률을 적용하여 소득 변동 사실인정 가능

*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수입을 확인하여 조정률 적용 후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반영

- (일반근로자) 노무제공자에 준하여 사용자가 발급한 급여지급명세서와 통장 거래내역을 비교하여 소득 변동사실 인정 가능

* 다만 신청일 기준 임금체불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자의 우연적 상황을 정기적 소득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임금체불 사실로 소득 감소를 인정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 공적자료로 일용근로내역이 반영되었고, 취업지원 신청인(또는 가구원)이 취업지원 신청일 전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용근로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공적자료 (또는, 신청일이 속한 월 이전 월력상 3개월 일용 근로소득)를 반영하여 심사하고,

- 취업지원 신청일 전에 해당 일용근로를 종료하고 신청일 이후에도 일용근로를 제공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공적자료로 반영된 일용근로소득이 없는 것(0원)으로 반영하여 심사 가능*

* 단, 취업지원 신청일 전후에 일용근로 제공이 없다는 사실, 추후 일용근로제공이 확인되어 수급자격 불인정 요건에 해당되면 부정수급 처분 등 행정처분 등이 있게 됨을 안내

3.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 및 제22조 **퇴직소득**
 - (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의 금품
- 보육·교육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에게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 재난지원금, 아동수당** 등 각종 금품
- 5대 공적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도 정기적인 것이 아닌 **1회성으로 지급되는 금품**

다 재산조사

- **확정 가구원의 일반재산,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의 가액을 합산하여 반영**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금융재산은 포함하지 않음

1. 재산의 종류 및 조사 방법

1 일반재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토지(논, 밭, 임야 등),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으로, 취업지원 전산망을 통해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 표준액을 활용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일반재산은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를 기준으로 적용됨
 -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부 의무자는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실질적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임에 따라, 등기부등본 상 타인(예, 사망한 아버지) 소유로 조회되더라도 신청인이 동 재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신청인의 재산으로 적용하여 취업지원 수급자격 심사를 하여야 함

- 일반재산이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재산 산정
 - * 지분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지분 비율만큼 자동 산정되어 전산으로 반영되며, 그 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지분 비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해당 사항이 입증되는 공적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
-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



일반재산의 정의

- ①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② (건축물) ①건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연장·점포·창고·창고 등 ②시설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
- ③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

2 임차보증금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월세 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적용(필요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
 - 임차보증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일반재산과 별도로 분리되어 신고한 내용이 제공되는 것으로 회신된 내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임차보증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수급자격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실제 거주가 전세 또는 월세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전·월세 계약서 등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및 반영할 수 있음

- 또 과소 추계되는 주택 가격과 전세금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택에 대한 전세금은 95%만 재산가액에 반영

3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공적자료 조회 결과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처분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 조합원 입주권 보유 여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되나, 청산금 납부액과 지급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등으로 확인 및 산정

** 관리처분계획은 시·군·구에서 인가(승인)하므로,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관리처분 계획을 조회(스캔 등)하여 입증자료로 갈음 가능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기존 건물평가액)에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수령받은 경우: 기존 건물평가액에 수령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청산금의 개념 및 업무처리 요령

- ① (청산금) 청산금은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라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과 조합원 분양가액이 다를 경우에 발생
- ② (청산금 납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조합원 분양가액에 미달할 경우 조합 등에 청산금을 납부
- ③ (청산금 수령)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조합원 분양가액에 초과할 경우 조합 등으로부터 청산금 수령
- ④ (계산방법) 조합원입주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①건물의 평가액, ②청산금 납부액, ③청산금 수령액을 각 확인하여, ① + ② - ③로 산정

4 분양권

- 공적자료 조회 결과에 따라 분양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을 조사한 후 파악된 금액(취업지원 신청일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등 납입한 금액)을 반영

* 분양권 보유 여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되나,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등으로 확인 및 산정

5 자동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소유 정보 등을 활용하여 취업지원 전산망으로 제공되는 자동차가액 정보 반영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의 승용자동차만 재산에 포함하고, 이를 제외한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3륜 이하 소형자동차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

- 전기자동차인 경우 조회된 자동차 가액에서 보조금(환경부·지방자치단체)을 차감하지 않음

- 자동차 분실·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재산 산정에서 제외

*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 산정 제외 불가

- 명의도용·명의대여 자동차, 대표자동차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 종결·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 소유 재산에서 제외 인정

- 관공서 및 법인(단체)의 미등기 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에 대표자(신청인이 대표자인 경우) 성명 외 상호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이나 신청인이 실제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음

- 신청인(또는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가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인 경우는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신청인(또는 가구원)의 재산으로 전액 산정
 - * 다만, 1대의 자동차가 신청인 및 가구원 가운데 둘 이상의 공동명의인 경우 한 명의 재산으로만 반영(중복반영 제외)
- 고시 규정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
 - * 승용자동차 보유 여부 및 재산에 포함되는 재산 가액은 공적정보로 확인이 되어 재산에 산정·포함되나, 재산 산정에 제외시키는 자동차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 및 재산 산정에 제외

● **고시 제5조(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영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2.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2. 재산 산정 관련 업무처리 보완 기준

- 신청인 및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1촌 이내 직계혈족이나 가구원에서 제외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Ⅱ-2-가-1. 가구단위의 범위 중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참고)의 재산을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면 포함

● 재산가액은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의 경우, 청산금 정산·중도금 납입 현황 및 장애인 자동차 비표 등 관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3. 재산의 공제

● (일반재산 기본공제)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가구 규모와 무관하게 신청인 본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아래의 금액을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공제

지역 구분	서울시	경기도	광역시·세종·창원	그 외 지역
공제액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 일반재산 기본공제 금액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시) 제4조(일반재산의 가액 산정)에 따름

- 일반재산 기본공제는 일반재산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고 일반재산을 초과하는 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예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신청인의 일반재산(5천만원)과 분양권 및 자동차 재산(4억원)이 확인되는 경우

↳ 일반재산 5천만원과 그 외 재산 4억원을 합한 4억5천만원에서 9,900만원을 기본공제하는 것이 아닌 일반재산 5천만원에 대해 9,900만원 공제(=0원)를 적용하여 신청인의 재산은 4억원(일반재산 0원 + 그 외 재산 4억원)임

● (임차보증금 기본공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보증금(전세금, 월세보증금)에서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액 등을 고려하여 일반재산의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지역별 공제 기준을 적용하여 공제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 임차보증금에 대한 기본공제는 임차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임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않음(일반재산 기본공제와 같은 기준 적용)

- **(임대보증금)**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본인의 일반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전세금 등)은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
 - 임대보증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유내역 및 금액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반영
 - * **예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신청인이 시가표준액 8억원 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3억5천만원에 임대(임차인으로부터 3억5천만원의 전세금을 받은 경우)
 - ↳ 일반재산 기본공제를 적용(8억원 - 9,900만원 = 7억100만원)하고 임대보증금을 공제(7억100만원 - 3억5천만원 = 3억5,100만원)하여 신청인의 재산은 3억5,100만원임
- **(재산취득·보유를 위한 대출금)**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재산의 조사 범위에 포함되는 재산을 취득·보유할 용도로 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
 - * 재산 취득과 연계된 금융권 대출(금융회사 및 금융회사 외 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만 인정하고, 생활비 및 주식 등 각종 수익 투자 목적 등을 위한 개인 신용 대출, 학자금 대출, 사적 채무 등은 인정 안 됨
 - 최초 총 대출금에서 상환금액을 제외하고 현재 남은 대출잔액만 해당하며, 재산 취득뿐만 아니라 보유를 위한 대출도 인정(예,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대출 등)
 - 신청인이 직접 등기부등본 및 대출잔액증명서, 자동차 구매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대출금 증빙서류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 대출의 용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반영

- **【전산 수기 입력 계산】** 재산의 공제(기본공제 제외)는 공적자료 조회로 확인된 재산에서 담당자가 수기로 공제액을 계산하고 전산에 입력, 최종값을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함

* 기본공제는 전산 자동 반영

라 취업경험 조사

1. 취업한 기간의 확인

- 취업지원 전산망을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및 사업자 등록기간** 확인 후, 취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 매출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 등록기간은 취업한 기간으로 인정하되, 휴업기간은 취업한 기간에서 제외
 -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임대사무실을 두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 운영기간은 취업한 기간에서 제외
 - * 상시 근로자 고용과 임대사무실 보유 둘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충족되면 취업한 기간으로 인정 가능. 다만 임대사무실은 주거지가 아닌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업 전용 공간이어야 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인정(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 생략 가능)
 - 산재보험,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에 한함), 건강보험(직장 가입자에 한함) 중 1개라도 가입된 경우, 해당 가입기간은 사용자(사업주)가 근로 또는 노무 제공을 확인한 기간으로 인정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업 참여기간을 확인하여 취업한 기간으로 인정
 - 일경험 프로그램 중 실제 사업장 현장에서 취업경험을 쌓는 프로그램일 경우 일경험 참여기업(또는 운영기관) 확인서 등을 통해 취업한 기간으로 인정
 - * 청년 미래내일 일경험(기업탐방 제외) 등

- 노무제공자 등은 사업주 확인서(서식 25, 취업기간 등 인정확인서 참조)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또는 급여 이체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 취업현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인정
- 사업주단체, 비영리법인·단체로부터 취업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해당 기간을 취업한 기간으로 인정
 - * 예 ①대학 등 근로장학생이 장학금을 목적으로 학교 내·외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대학원생의 연구 업무가 학점 취득을 위한 학교 수업이 아니고, 연구 업무를 수행하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기타소득(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학교의 정해진 서식 등을 제출할 시 취업한 기간으로 인정

2. 취업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근로·사업소득 또는 매출로 취업한 기간 환산

-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신청인 본인의 소득 또는 매출 가운데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발생한 근로·사업소득* (이전·재산소득 제외) 또는 매출 합산

* 공적 자료의 시차로 인해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득세 신고서류,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한적으로 인정

- 소득이 최근 3년 최저시급 평균액의 800시간분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이 최근 3년 최저시급 평균액 5배의 800시간분 이상인 경우 요건심사형 취업경험 충족으로 인정

* 취업경험 기간 산정 예시

- ① '26년 취업지원 신청자로 취업한 기간이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소득증빙을 제출한 경우, '24~'26년 최저시급 평균액인 10,070원(일의 자리 반올림)을 기준으로 800시간분인 805.6만원 이상의 소득인 경우 취업경험 충족으로 인정
- ② '26년 취업지원 신청자로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50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외 발생소득 증빙을 제출한 경우, '24~'26년 최저시급 평균액인 10,070원을 기준으로 400시간분(50일분)인 402.8만원 이상의 소득인 경우 취업경험 충족으로 인정

- ③ '26년 취업지원 신청자로 취업한 기간이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매출증빙을 제출한 경우, '24~'26년 최저시급 평균액 5배인 50,350원을 기준으로 800시간분인 4,028만원 이상의 매출액이면 취업경험 충족으로 인정

마 근로능력 및 구직의사 조사

1. 취업지원서비스 전 단계별 근로능력 및 구직의사 지속 확인

- ①교육 동영상 의무 수강, ②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작성을 통한 기초 확인, ③초기 상담시 절차 등 주의사항 재안내,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수립 후 3~5개월차 대면상담 등을 통해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를 지속 재확인·안내하여 수급자의 자기 책임성 강화

- ① **(교육 동영상 사전 이수제 운영)** 온라인 취업지원 신청 시 제도 취지 등 전반에 걸친 교육 동영상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만 취업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근로능력 및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제한됨을 주지

* 오프라인 취업지원 신청 시에도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 신고의무 준수 및 부정수급 제재 등을 반드시 안내 필요

- ② **(확인서)** 취업지원 신청 단계에서 작성·제출하는 '확인서'에 '근로능력 보유, 취업 및 구직의사 여부' 등을 신청인이 작성하도록 하여 수급자격 심사 시 기초자료로 활용
- ③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확인)**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수립 후 3~5개월차 대면상담 등을 통해, 수급자의 근로능력 유지와 취업 및 구직의사를 지속 확인하여 즉시 취업이 어려운 질병·부상 또는 그에 준하는 요인이 발생하면 유예제도를 활용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자에 대한 구직의사 확인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근거 법령 및 지침 등을 적용
 - 해고에 대한 다툼으로 원직복귀가 될 가능성 등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구직의사가 없거나 허위·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등에는 수급자격이나 수급권 등을 제한함
 - 노동위원회 등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원직 복귀가 이루어지더라도 **지급받은 각종 수당(비용)은 반환하지 않고** 원직복귀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종료 처리

3. 특별민원인에 대한 제재

- 특별민원의 내용이 상담자의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즉시 취업이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는 등 근로능력 및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내부복명(결재) 등을 통해 수급자격 불인정, 수당 부지급, 취업지원 종료 처리 등 적극적으로 대응 및 제재

자세한 내용은 1-1. 공통 요건 중 기타 참여 제한 사유 14p 참고

Ⅲ

수급자격 신청 및 수급자격자 결정

1

수급자격 신청(취업지원 신청)

1. 신청 주체 등

- (신청 주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
- (신청 장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지원 신청하는 것이 원칙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다만, 예외적으로 거주지 관할이 아닌 고용센터일지라도 취업 희망지역의 고용센터 또는 교통이 편리한 인근 지역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 * I 유형 선발형의 경우 예산 현황에 따라 선발하므로, 신청일 기준 기준점수를 적용하여 선발

2.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취업지원 신청서

- 취업지원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포함된 '신청인·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 및 부동의 시에는 취업지원 신청이 불가하나, 신청 이후 가구원 변동 및 전자적 방식으로 동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서식으로 확인받아 전산 등록 및 동의서 업로드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은 제출 요청하지 않도록 유의

② 가구단위 증빙서류(필요 시)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의 가출, 행방불명, 별거 등으로 인해 가구단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종신고서, 이혼소송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③ 특정계층 증빙서류(필요 시)

- 공적자료로 특정계층 여부의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대상자 추천서,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해당 특정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별도의 서식이 없는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임의서식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관계 기관에서 발급·확인받은 일체의 자료로 확인

④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증빙자료(필요 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공적자료와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요청

3. 신청 절차

① 신청 안내

- 상담을 통해 신청인이 원하는 지원내용을 파악한 후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 특히,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해서는 취업지원서비스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만 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안내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만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이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만을 지원받을 것인지 확인하고 수급자격 결정(I유형 신청 → II유형 참여)

② 구직등록

- 취업지원 신청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 시스템을 통해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을 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③ 취업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포함) 작성 및 접수



취업지원 신청 취하 관련 처리 기준

- **〈개요〉** 신청인이 취업지원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추후 재참여 제한을 받지 않으나, 법 제29조에 따라 수급자의 취업지원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재참여 제한 기간(3년 원칙)이 적용

- 따라서, 취업지원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인의 참여 의사를 재확인하여 처리할 필요

① 초기상담 시까지

- 초기상담 시까지 취업지원 신청 취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취업지원 신청은 신청인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고, 수급자격 결정은 신청을 결여한 행위로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서식 21)
- 초기상담일에 제도 내용 및 향후 진행절차를 충분히 안내*하여 참여의사를 재확인 하고, 초기상담 이후(전산등록 이후)에는 신청 취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달한 이후 상담 진행

* I·II유형의 차이(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 구직활동의무 부과 등 오해가 없도록 안내

② 초기상담 실시 이후

- 초기상담 이후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불참여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유예'를 활용하도록 안내
- 다만, 단순 변심 등 취업지원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 처리(재참여 제한기간 적용)

* 법 제29조에 따라서 종료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는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지원 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어, 초기상담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종료처리 대상에 해당함

2 수급자격 결정 절차

- ① **(확인·조사)** 수급자격 확인·조사 방법은 I. 수급자격 요건, II. 수급자격 조사 참고
- ② **(미충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수급자격이 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불인정 통지 전에 신청인에게 요건 미충족 이유 및 근거를 안내
 - * 기본적으로 전화 및 문자로 관련 내용을 안내·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건 미충족 이유 등 안내 및 보완 요청하여 불인정시 민원 및 심사·재심사 등에 대응
 - 이에 대해 소명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
- ③ **(결과 통지)**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급자격 결정 결과 서면 통지
 -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실업부조 제도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빠른 수급자격 결정 필요
 - 다만, 수급자격 확인·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신청(I 유형)하였으나 취업지원 서비스만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취업지원서비스 제공(II 유형)
- ④-1 **(향후 절차 안내)** 수급자격자에게는 향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일정 및 지원내용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 제공
- ④-2 **(심사·재심사 등 안내)**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수급자격 결정 결과 서면통지 방법

- 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전자문서(전산망)로 신청 및 통지 가능
 - 고용행정통합포털 시스템을 통해 국민비서를 통한 전자적 통지 추진중('26. 하반기)
- 오프라인 신청자도 신청인의 동의를 있는 경우 신청인이 희망하는 방식의 전자문서 통지 가능(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자통지 관련 업무지침 안내(국민취업지원기획팀-2808, '25.9.9.) 참고

03

취업지원서비스

I

취업지원서비스 개요

1

의미

-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서비스로, 취업활동계획 수립법^{제12조}, 취업지원 프로그램^{제13조},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제14조}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사후관리제15조까지 포함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란?

수급자의 취업의욕과 직업적응 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직업훈련, 일경험,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심리상담 및 취업진로상담, 창업지원 및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각종 복지·금융 지원과의 연계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란?

수급자에게 직·간접적인 일자리 소개, 이력서 작성·면접 기법 컨설팅 등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취업알선 및 구인정보제공, 동행면접,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등 구직능력 향상에 대한 지원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중 반드시 제공 필요하며,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종료 전 3개월간 집중 취업알선기간(취업노력기간) 운영

- (취업지원 종료일) 사후관리 등 모든 취업지원서비스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을 의미

* 취업지원 종료일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첫 번째 날(취업지원서비스기간 종료일과 구분)

【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진행 요약 】



2

취업지원 기간

1.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원칙: 1년)

- 수급자격 인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임 법 제15조제1항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기간, 집중 취업알선기간을 포함하며 수급자와 협의하여 12개월 범위 내로 설정
 - 집중 취업알선기간(취업노력기간)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최종 3개월로 원칙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및 직업훈련·일경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간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2.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연장(예외: 최대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12개월이 만료되었음에도 수급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 법 제15조제2항
- **(연장 사유)**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중 종료되지 않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로 집중 취업알선기간(취업노력기간) 3개월 확보가 어려운 경우
 - * 수급자가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기간 연장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연장 절차)** 수급자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명시적인 의사 표시**(구두, 전화 또는 서면 등)를 통해 **연장 요청**해야 하며, 상담사는 수급자와 협의하여 기존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종료 7일 전까지 연장을 결정**하고 취업지원 전산망에 상담내역과 함께 연장 기간·연장 사유·결정 일자 등을 입력하고 취업활동계획서를 변경

3. 사후관리 기간(원칙: 3개월, 필요시 1개월 연장하여 4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수급자에게 취업능력, 취업장애요인 등을 고려하여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월 1회 이상** 유선 등의 방법으로 구직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상담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는 법률에 의해 제공되어야 할 취업지원서비스이나 수급자가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취업지원 종료 처리
- 사후관리를 제공하지 않은 수급자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개월 내 취업하였더라도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재참여 제한기간 단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 취·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수급자에 한하여 취업성공수당 지급 및 재참여 제한기간 단축 가능

3

전담 상담사 운영

- **(전담 상담사 지정)** 수급자에게 전담 상담사를 지정하고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상담 예약제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는 인사이드(업무분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전담 상담사 변경은 지양하고, 전담 상담사 지정 또는 변경 시 수급자에게 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
- **(상담 기록·관리)** 전담 상담사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현황을 취업지원 전산망을 통해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 취업지원 전 단계에 걸쳐 수급자와의 상담내용 및 제공된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해 취업지원 전산망 **상담일지 및 IAP 이행관리에 상세히 기록**
 - * 「IAP등록/관리」 → 「취업지원/구직활동」에 제공된 취업지원서비스 및 본인 구직활동 내역을 반드시 입력하여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현황을 관리
 - 상담 시작·종료 시간은 상담 즉시 입력하고 구체적인 상담 내용은 상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기록·관리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입력일로부터 3일 이내 가능
 - 모든 상담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문장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상담의 목적(동기), 실시 및 확인 내용, 결과 및 결정 사항, 향후 조치 사항, 기타 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록 관리
 - * 전담 상담사가 변경되더라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수당 지급 및 행정처분 등)은 반드시 상담일지에 기록
- **(개인정보 보호)**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특히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민감정보는 주의를 기울여서 기록·관리
 - 상담사례 발표 등을 위해 수급자의 상담 내용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

*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제6호에 따른 복지지원 연계 등과 같이 법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절차 없이 소관 업무 담당자와의 정보 공유 및 연계 가능

● **(비밀 유지)** 상담사는 상담 또는 취업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수급자의 개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해서는 안됨

- 다만, 수급자의 생명이나 타인 및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가족, 경찰 등에게 관련 정보 제공

* **예시** 수급자가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경우 등

● **(전담 상담사의 역할)** 수급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①구직의욕을 높이거나, ②희망직업, 지역 일자리 동향, 산업계 변화 등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개인별 과제를 부과하는 등 상담하고, ③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진행 및 단계별 수당 신청 등 취업지원 전 과정 진행

* 「맞춤형 취업지원 및 취업상담 매뉴얼」, 「중장년·청년특정계층 상담 매뉴얼」 참고

- 특히 취업알선 또는 고용정보 수집·제공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은 반드시 지원해야 함 합법 제14조

- 과제 부과 후에는 이행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수급자 스스로 변화를 인식하도록 하고, 부족한 직업·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더욱 체계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

- 입사지원 및 면접 이후에 반드시 구직활동 결과를 상담하여 구직활동이 수급자 개인별 특성에 맞게 진행되도록 관리할 필요

* (방법) 반드시 방문상담을 할 필요는 없으나 유선상담 결과 입사지원 및 면접 준비에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면, 방문을 요청하여 구직기술 향상 컨설팅 등을 제공

II

취업지원서비스 내용

1

취업활동계획 수립

가 개요

- **(개념)** 수급자의 직업적 문제를 이해하고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여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취업에 필요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내용과 참여시기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의 수립을 의미

IV. 구체적인 취업지원서비스 122p 참조

-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수급자의 특성과 이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수립

4부 II-4.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196p 참조

- 취업활동계획 수립 과정은 앞으로의 취업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사와 수급자 간의 신뢰 및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으로 매우 중요

- **(수급자의 의무)** 수급자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를 가지고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음 법 제4조, 제12조

- 전담 상담사는 수급자에게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직업안정기관 방문,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참여, 상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급 자격의 인정을 철회할 수 있음

나 수립기간 및 상담횟수

- **(수립기간)** 수급자격의 인정결정 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수립하되, 수급자격자의 취업역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예시 수급자격 인정통지일이 11.1.인 경우 12.1.까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연장할 경우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12.10.까지 수립하여야 함

- **(상담 횟수: 대면상담 최소 3회 이상)** 수급자격자와 협의를 통해 일정 간격*을 두어 3회 이상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취업활동계획수립 기간(1개월)과 수급자에 대한 신속한 생계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신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관리

* 수급자격자에게 부여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상담 간격 설정 필요

- 상담 횟수는 수급자격자의 취업역량 및 의지를 고려하여 수급자격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초기상담일과 취업활동계획 수립일 상담을 포함하여 대면상담 최소 3회 이상 실시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횟수 예외 적용

-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대면상담 2회로 단축 운영 가능

*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세부 운영사항 안내 참고('21.6.30.)

- **(특별재난지역 수급자격자)** 유선상담 2회로 단축 운영 가능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처리 기준 변경 안내 참고('25.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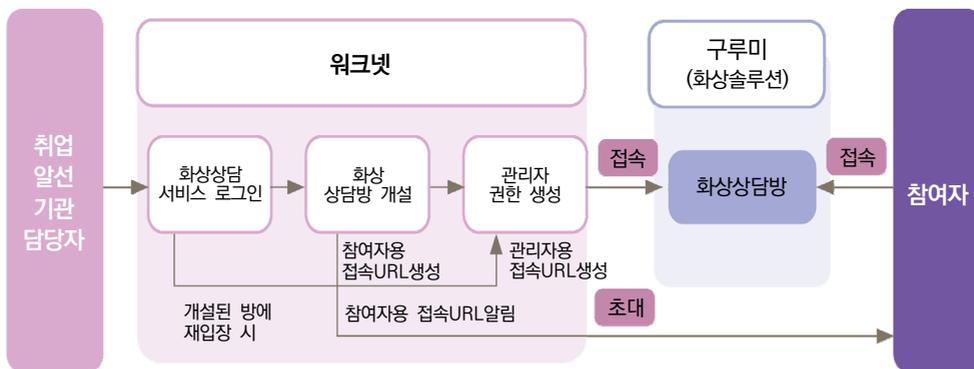
- 3회 대면상담 외 추가 상담은 유선 및 실시간 온라인 화상상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을 이용한 상담 등 가능

① 고용24 화상상담서비스 프로세스 및 활용 방법

1 「고용24 화상상담」 기본 개요 및 프로세스

- (개요) 고용24(www.work24.go.kr) 외부망에서 민원인 스마트폰 등과 연동하여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 화상상담 등이 가능한 서비스
- (프로세스) 화상상담관리자(상담사)가 화상상담 방을 개설하고 참여자(수급자)에게 화상상담 접속 URL 통보(SMS)·접속하여 화상상담 등 진행

Ⅰ 화상상담 진행 절차도 Ⅰ



2 활용 방법

- (상담사 로그인) 고용24(외부망) 하단의 [화상상담 관리자]에 접속하여, 고용행정 통합포털의 일반계정(이름, 비밀번호)으로 로그인 → 모바일 OTP 정보 입력 후 로그인 완료

* 화상상담방은 웹캠이 준비되어야 하며, 반드시 '크롬브라우저'에서 접속

- (화상상담방 운영) 기 개설한 화상상담방 목록 확인 가능, 개설한 방에 재입장 시에는 '관리자 권한 생성' 후 입장 가능, 방은 최대 5개까지 개설이 가능하며, 최대 7일간 유효(재입장 가능)
 - (화상상담방 개설) 화상상담방 이름, 기간을 설정한 후 '화상상담방 개설' 버튼 클릭,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방 입장 시 비밀번호 입력 필요(선택사항)
 - (참여자용 URL 통보) 해당 URL을 화상상담에 참여할 참여자에게 통보, 화상솔루션 내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초대 및 URL복사 기능 사용 가능(SMS 발송 비용은 각 기관 부담)

- (화상상담방 관리자 권한 생성)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자 이름을 입력 후, '화상상담방 관리자 권한 생성' 버튼 클릭, 생성된 URL로 2분 이내에 접속하여야 관리자 권한으로 입장 가능(관리자 권한: 모든 참여자의 권한(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등) 제어 가능)
- (화상상담 진행 - 관리자용) 화상상담일에 접속 URL로 입장하여 화상상담 진행
 - 상담방 입장 후 참여자 초대 전 기본 권한을 '진행자' → '참여자'로 변경 후 초대하여야 함(참여자는 접속 후 방에 대한 설정권한이 없음)
 - 소그룹(토론) 기능을 포함한 화상교육 모드도 추가되어 활용 가능하나, 취업상담은 참여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상담사와 참여자 간의 1:1 화상상담으로 진행하여야 함
- ≫ 자세한 내용은 고용행정통합포털(고용24 내부망) 공지사항에 게시된 '화상서비스 활용 방법' 참조

다 수립절차

1. 상담 준비

구분	내용
상담일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격인정 결정 통지일부터 3일 이내 수급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초기상담 일자 협의·지정 - 상담일시, 장소, 상담사 성명 및 연락처 등을 자세히 안내(문자 통지)하여 민원 발생 방지 <hr style="border-top: 1px dotted #cc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가 상담일시 변경을 원하는 경우 당초 지정일 기준으로 10일 이내 재지정 - 변경 사유의 타당성, 수급자의 의지 등을 감안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타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의무 재지정통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
상담사 사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격자 정보 확인 ① 취업지원전산망, 바로원, 구직등록 등을 통해 결격사유 및 수급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확인할 내용을 미리 계획 ② (구직상황 확인) 가구 구성 및 소득 수준, 복지 수혜 이력 등을 통해 취업장애 요인(돌봄, 부정적 구직정서 등)의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여 상담 시 활용

구분	내용
상담사 사전 준비	<p>③ (상담유형 확인) 경력, 자격증, 직업훈련 이력 등을 통해 수급자격자의 능력과 의지를 파악하여 상담의 범위와 방향 설정</p> <p>» 조회화면: 바로원 > 개인 > 통합조회 > 기본정보 또는 구직지원</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margin: 10px 0;"> <p>기본정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정보: 사업유형/연도, 참여유형, 진행상태, 위탁·관할기관 ② 수혜 중 서비스: 고용서비스, 복지서비스 ③ 고용보험 관련 정보: 취득·상실 관련정보,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Y/N) ④ 취업희망플 대상자 여부(Y/N) ⑤ 개인 취득 자격증: 발행처, 자격증명, 취득일자 ⑥ 훈련이력정보: 훈련종류,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훈련직종, 훈련상태(수료여부), 훈련기간, KECO코드, 분류명, 훈련방법 등 <p>구직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구직신청이력(최근 3년): 희망직종, 희망임금, 인증경로, 마감사유, 마감일자 ⑧ 고용보험 이력: 근무지(사업장 관리번호), 취득일/상실일, 업종, 피보험자수, 직종, 퇴직사유, 상세사유, 근무년월수, 소정근로시간, 임금(원), 근무지역 ⑨ 심리상담(검사) 이력: 검사일자, 검사종류, 검사매체, 상담기관, 검사 결과 ⑩ 정부지원 훈련수강 등 일모아 수혜 이력(최근 3년): 분류, 사업명, 참여기간, 진행상태, 참여기관 </div>
	<p>📌 수급자격자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 주제, 확인 내용, 진단도구 등 준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담주제) 직업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과 근로 능력과 구직의사에 대한 수급자격자의 인식 정도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주제 ② (확인내용) 취업장애요인 및 구직의욕 저하 요인의 존재 여부와 역량 강화 방향성 탐색 및 확인 ③ (진단도구 등 준비) 초기상담 질문지, 취업장애요인 진단지, 내일을 위한 약속, 구직역량 진단지와 참여자 상황에 맞는 과제 부과 내용

2. 초기상담

- **(운영방법)** 1:1 대면상담으로 **최소 30분 이상**(심층상담은 60분 이상) 실시하되, 초기상담 1회에 한하여 사전설명회(집체) 운영 가능



사전설명회(집체) 운영 형태

- (A형) 고용센터 주관 집체 설명회를 진행한 후 반드시 전담 상담사와 개별상담
- (B형) 상담사가 본인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설명회 개최

구분	A형(대규모)	B형(소규모)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에 운영 - 각 전담 상담사 별로 참석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사가 본인의 참여자를 5명 이내로 모아서 담당자별 설명회 운영
설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 또는 순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상담사
추가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체 설명회를 마친 참여자는 반드시 전담 상담사와 상담 후 귀가 * (예) 집체 설명회 40분+개별상담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회시 기본적 질의응답 실시 ■ 필요시 참여자별 추가 상담

- **(취업지원 참여 의사 확인)** 초기상담일까지 취업지원 신청 취하가 가능하므로, 참여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상담 진행

* 취업지원 신청 취하 시 수급자격 인정이 취소되므로, 다시 취업지원 희망 시 재참여 제한기간 없음

- **(라포 형성 기반 마련)** 수급자격자의 첫 방문을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상담사가 자기소개 후 상담 시 사용할 서로 간의 호칭을 정함

- 수급자용 안내 책자 등을 활용하여 유형별 지원 내용과 전체적인 진행 절차, 상담 일정·내용 등 세부적인 진행을 안내

* 수급자에게 수급자격 인정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하여 취업지원서비스 시작일 확인

- **(수급자격자 진단: 취업역량평가 실시 등)** 사전에 확인한 수급자격자의 정보와 초기상담 질문지 등을 활용하여 심층 상담 후 취업장애요인 및 구직역량 등을 파악하여 초기 진단 실시
 - **(구직상황 확인)** 취약한 구직 상황(가구 특성, 경제적 어려움, 가족 내 돌봄, 건강문제 등) 및 부정적 구직정서(심리적 취약성 및 알콜중독 등 임상적 증상)가 존재하는지 확인
 - **(상담유형 확인)** 취업역량평가(M-1. 취업역량평가 122p) 실시 후 진단 결과를 수급자격자에게 제공하고, 상담을 통해 취업역량과 취업의욕을 파악하여 상담 유형을 확인
 - * 취업역량평가는 되도록 초기상담 시 실시하되 2회차 상담에서도 실시 가능

Ⅰ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진단 예시 Ⅰ

구분	진단 항목	처치 예시
생계·주거	생존에 관한 원초적 장애	고용-복지 연계
희망직종·목표	목표 및 계획 수립	집단상담 등 의욕 향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자격증·경력	취업역량	직업훈련·일경험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환경	가족문제, 자녀 양육 등	돌봄서비스 등
신용 등 요인	신용불량, 채무관계	고용-금융 연계(서민금융진흥원 등)
심리적 요인	불안, 스트레스, 대인관계	심리안정프로그램
질병·질환	알콜중독·정신질환·기저질환	중독치료센터 등 연계

Ⅰ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진단 예시 Ⅰ

구분		처치 예시
기본 입사지원서	미보유자	① 특강 및 집단상담, 사이버진로 교육센터 강의 등 연계 → ② 고용24 등을 활용하여 작성 방법 안내 → ③ 작성 후 담당자 컨설팅 제공 → ④ 면접지원 단계로 이동
	보유자	① 담당자 컨설팅 제공 → ② 면접지원 단계로 이동
면접	미경험자	① 특강 및 집단상담, 사이버진로 교육센터 강의 등 연계 → ② 담당자 클리닉 제공 및 시면접 준비 → ③ 시면접 응시 → ④ 시면접 결과 피드백 제공 → ⑤ 필요시 동행면접
	경험자	① 담당자 클리닉 제공 및 시면접 준비 → ② 시면접 응시 → ③ 시면접 결과 피드백 제공

- **(초기상담 마무리)** 상담사의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수급자의 성실한 참여를 위한 ‘내일을 위한 약속(서식 27)’ 작성 및 배부·보관

- 다음 상담일을 협의하고 긴급 연락을 위한 전화번호 공유
- 구직등록 확인을 통한 보완 요청 및 심리검사 실시* 등 참여자 특성에 맞는 과제 부여(필요시 집단상담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 초기상담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면 기존 검사 결과 활용 가능

** II유형 수급자의 경우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집단상담, 대면 단기집단, 대면 취업특강 등)을 수료한 경우 참여수당이 추가 지급되므로 필요 시 취업활동계획 수립 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4부 III-1.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217p 참고

3. 초기상담 이후 상담(취업활동계획 수립일 전까지의 상담)

- **(심리검사 해석 및 과제 확인)** 수급자격자와 라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심리검사 및 과제 수행에 대한 칭찬과 반드시 피드백 제공

- 심리검사 해석은 수급자 방문 전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상담 유도

IV-2. 직업심리검사 139p 참고

- **(취업 희망직종 상담)** 수급자격자의 취업 희망직종과 심리검사 및 상담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적인 희망 직종 선정을 위한 상담 실시

- 잡케어를 활용한 경력개발 경로(자격, 훈련 등), 취업시장 정보(지역별 일자리, 직종별 자격증 수요 등), 추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상담)** 초기상담 시 진단 및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격자에게 필요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미리 준비하고, 상담 시 수급자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참여 희망 여부를 상담

- **(직업훈련 희망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카드발급 준비, 희망하는 훈련에 대해 탐색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 탐색표 부여 등 사전 준비

- (일경험 희망자) 미래내일 일경험, 중장년 경력지원제 등 관련 정보 및 참여 기업 탐색 방법, 입사지원서 등 필요 서류 안내
 - (고용-복지-금융 연계 희망자) 연계 기관 정보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가능한 경우 고용복지+전산망에 연계 조치하고 취업활동계획에 반영 준비
 - (취업활동계획 수립 가안 준비 등 과제 부여) 취업활동계획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과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참여 희망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기를 결정하여 가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 안내
 - 수급자격자의 희망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시기 및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반영 준비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제공시기 등을 계획
 - (취업역량평가 결과를 통한 취업유형 분류) 수급자격자의 취업유형을 확인하여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방향 설정
- * 취업지원 전산망 필수입력: 「IAP등록/관리」 → 「취업역량평가」 화면에 취업역량평가 점수 및 등급, 취업애로요인,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전략

4. 취업활동계획 수립<취업활동계획 변경에도 동일 기준 적용>

① 취업활동계획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기간) 구직역량 및 의욕,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간을 감안하여 수급자와 협의한 후 12개월 범위 내에서 설정
-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은 12개월이나 종료 전 3개월은 집중 취업알선기간(취업 노력기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후 사후관리기간이 운영됨을 안내
- (취업 희망조건) 수급자와 협의하여 희망 근무지, 취업 희망 직종 등을 설정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계획) 취업장애요인 해소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참여할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기를 설정

- (종류) ①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집단상담, 취업·진로 상담, ②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③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심리안정, 각종 복지·금융지원 연계프로그램 등
- (연계 원칙) 국민취업지원제도 목적에 부합하면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 * 다만, 연계하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중복 참여를 제한하는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
- (연계 제한) 취업지원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구직활동을 의무로 월 평균 50만원 또는 총 3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은 연계 불가(취업지원 종료 사유에 해당)
 - * 직무역량 향상 및 직무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인턴형 등의 사업은 취업활동계획에 포함할 경우 연계 가능
- (상담사와 협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는 반드시 전담 상담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반영한 후 참여해야 함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활동 계획) 수급자의 입사지원, 면접 등 본인 구직활동과 입사지원에 필요한 컨설팅 제공(취업활동계획 재진단 포함) 등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제공,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 수집·제공의 내용과 시기를 설정
- (구직촉진수당 지급 계획)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일까지 1회차, 이후 1개월 단위로 2~6회차를 설정하며 수급자 희망 시 최대 12회차까지 추가하여 설정 가능
- 가족수당은 제외한 기본수당 360만원 한도 내에서 설정하며, 회차별 지원 한도는 30만원 또는 60만원임

4부 II-3.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195p 참고
- 지정일은 지급주기의 마지막 날로 자동 설정되고, 지정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 주기 종료일 전 3일 이내로 지정 가능

4부 II-6. 구직촉진수당 신청 및 지급 212p 참고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취·창업이 확정된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의 목적이 없으므로 **수립 전 취·창업 확정 여부 확인 필요**
 - 취업이 확정되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나 취업 확정이 취소된 경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계속 취업지원
- 취업활동계획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수급자가 취업을 위해 이행해야 할 의무 사항으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고 불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수급자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수립**
 - 수급자의 욕구와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하되 불합리한 주장이나 요구를 단순 수용하는 것은 지양
 - 수급자가 참여할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종류 및 시기를 중심으로 지급주기(취업활동계획 수립일 다음 날부터 1개월 단위)별로 **2개 이상** (취업활동계획 재진단을 위한 필수 **대면상담 포함 시 3개 이상**)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을 포함
 - * I 유형 수급자의 경우 지급주기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므로,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 이행에 따른 지급 기준(4부 Ⅱ-4.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196p 참고)에 맞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필요
 - **필수 대면상담을 통한 취업활동계획 재진단**은 취업활동계획 상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컨설팅 참여(컨설팅서비스)**로 반영하여, 수급자가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에 포함**
 - ↳ I 유형 참여자는 대면상담을 통한 취업활동계획 재진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직활동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대면 상담일이 포함된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중단 또는 감액지급 처리

4부 Ⅱ-4.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중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198p 참고

- **I 유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 자비 부담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지므로 지속적인 직업훈련 참여를 방지하고자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직업훈련은 최대 4회(단, 집체훈련만은 3회)로 제한함**
 - 단, K-디지털 크레딧 훈련은 1회에 한하여 직업훈련 참여횟수에 포함하지 않고, 모듈식 훈련과정*의 경우 단계별로 훈련과정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1개 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음
 - ↳ 훈련참여 횟수를 초과한 훈련 연계 인정은 불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참여하겠다고 할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종료하고 일반내일배움카드로 참여하도록 안내
 - * 예시 전기기능사취득과정A, 전기기능사취득과정B와 같이 훈련기관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과목별로 훈련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A+B과정 참여시 1개 과정으로 인정 가능
- 다만 자비 부담 경감 등 혜택이 적은 **II유형** 참여자는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직업훈련은 최대 6회(단, 집체훈련만은 5회)로 제한함**

Q&A

- Q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전 시작한 훈련과정도 참여횟수에 포함되나요?
- A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되는 취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종류의 직업훈련은 시작시점과 무관하게 훈련참여 횟수에 포함. 다만 취업활동계획 수립 전 종료되었다면 포함하지 않음

③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 마무리 및 진행 안내 사항

- **(취업활동계획 배부)**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을 출력하여 상호 서명 후 수급자에게 배부 및 보관
 - 취업활동계획 상 지급주기, 지정일,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기준 안내 및 이행보고 시 제출이 필요한 증빙서류 안내
- **(대면 상담일 안내)**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5개월 내 1회 방문상담을 진행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재진단함을 안내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작성 및 이후 신청 안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1회차)를 작성하고, 지급주기 중 소득 발생 여부 확인
 - 수당 지급 기간을 설명하여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이후 지정일(구직촉진수당 신청일)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소득의 종류와 신고 의무(증빙서류 제출 포함) 등을 자세히 안내
- **(만족도 조사 설문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대상 참여 단계에 따라 3회 만족도 조사를 고용24를 통해 실시함을 안내
 - 수급자격 인정 후 '신청 과정에 대한 만족', IAP 수립 후 '상담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만족', 취업지원 종료 후 '프로그램별 만족'에 대해 조사 진행

* 만족도 조사는 필수사항은 아니며, 자세한 내용은 만족도 조사매뉴얼 참고

참고 전역 예정 장병 상담(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지원 신청시점>** 2개월 이내에 전역예정인 장병 가운데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위한 방문상담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신속한 취업지원을 제공하여 전역과 동시에 노동시장에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취업지원 신청시점은 반드시 전역 2개월 이내여야 함
- **<취업활동계획 수립일>** 상담일자 간격 조정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일은 반드시 '전역일 이후'가 되도록 하여야 함
 - **(상담방법)** 군 복무 중 상담은 휴가 등 외출 시 방문하여 상담을 받도록 하고, 군 복무 중임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화상상담도 대면상담으로 인정(초기상담도 화상상담으로 가능)
 -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 비경제 활동상태인 군 복무 중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지원은 전역 이후 지급
- **<이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이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관' 처리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 지속 제공

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의무 미이행자 수급자격 인정 철회

- 수급자격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직업안정기관의 방문, 진로상담·직업심리검사 참여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급 자격의 인정을 철회하고^{법 제12조제4항}, 취업지원 종료^{법 제29조제1항제6호}
 -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일자에 방문하지 않았거나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일 이내로 상담일자를 재지정하고 이행기간을 정하여 2차 의무 부과
 - * 서식 31. 방문상담일자·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활용
 - 2차 통지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 종료
 - * 수급자격 인정 철회는 심사 및 재심사 등 행정쟁송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수급자격자의 불이행 내용, 불이행 내용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내용, 의무 부과 및 확인 등 절차 진행 내용 및 행정절차 등을 준수하여 처리
-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 통지서’를 우편 송달*하고,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철회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
 - * 초기상담 시 전자우편을 통한 ‘전자문서 송달 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격자는 전자우편으로 송달 가능



의무 재부과 및 수급자격 인정 철회 절차

[의무 부과 및 처분사전 통지 등 등기우편이 정상적으로 송달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송달되는 경우]

- ①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상담일자에 방문하지 않거나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를 송달
- ② 재지정 안내서에는 1차에 이행하지 않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2차에도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됨을 안내
- ③ 2차 의무 부과에도 불이행할 경우에는 1차 불이행 상담내역 기록·관리, 2차 의무 재부과 재지정 안내서 및 2차 의무 불이행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 내부복명(결재)으로 수급자격 인정 철회가 필요한 내용을 기록·정리
- ④ 수급자격 인정 철회에 대한 내용으로 의견제출요구(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문서를 송달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 철회절차를 중단하고 의무 재부과 조치 통보
 - ↳ 재부과 조치 통보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진행한 철회절차 이행에 따라 즉시 수급자격 인정 철회
- ⑤ 민원인이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이 수급자격 인정 철회를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 등이 없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철회

[의무 부과 및 처분사전 통지 등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경우]

- ①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른 송달의 효력은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 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통해서 송달을 완료할 수 있음
- ② 수급자격자의 의무 불이행 등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철회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측면이 있으나,
 - ↳ 행정청이 민원인의 권익을 제한하고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 준수는 처분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절차를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함

2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 방법 및 내용은 IV-4. 취업지원 프로그램 149p, IV-5.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80p 참고

- **(취업상담: 매월 1회)**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방법은 가급적 대면 및 유선으로 진행
 - 필수 대면상담을 제외한 상담의 경우 유선 외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 등을 활용한 상담도 가능하며, 이 경우 상담일자 및 시간, 상담내용(소통 내역 포함)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취업활동계획 재진단: IAP 수립 후 3~5개월 시점)** 취업활동계획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수급자의 구직준비도를 중간 점검함으로써 수급자 스스로 본인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취업활동계획 변경·보완
 - 반드시 대면상담을 통해 점검하고 대면상담일은 IAP 수립 후 3~5개월 시점(4~6회차 지정일)으로 수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지정일(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일)과 대면상담일이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음
 - * 지정일 외 대면상담을 진행한 경우, 지정일에는 인터넷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 가능
 - 대면상담 시점에서 직업훈련, 일경험에 참여 중인 경우 수급자와 협의하여 대면상담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취업활동계획 재진단 실시방법

- ① 구직활동 결과를 토대로 구직역량을 판단하여 필요시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입사지원서·면접클리닉 등)을 취업활동계획으로 수립
 - 상담사의 과제 제시 건은 취업활동계획에 추가하여 관리(합리적·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한 경우 법 제26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② 재진단을 통해 직무역량 강화 및 자격증 취득이 필요한 경우 일경험 및 직업훈련 등 필요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 ③ 필요한 경우 취업의욕 고취 등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단기 참여 과제 제시
- ④ 구직준비도 점검 설문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 적정성 확인
 - 구직준비도 점검 설문지(서식 29)는 수급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여 상담사의 개입을 최소화
 - * 구직준비도 점검 실시 후 취업지원 전산망 「상담 정보」 화면의 「상담 목록」 옆 「구직준비도 등록」에 입력

- **(취업활동계획 변경: 필요한 경우)** 취업활동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상호 협의하여 **해당 지급주기 시작 전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사유 및 변경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상담사는 수급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수급자에게 더 나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취업활동계획 변경

- **변경 사유**
 - 1) 수급자의 취업역량 등을 고려하여 수립했던 취업활동계획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상담사가 판단한 경우
 - 2)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의 변경을 요청하고 상담사가 합리적인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

예시 일반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을 희망하다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나, 단순 희망 직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취업활동계획의 변경이 아닌 상담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기록·관리 필요

주의 개인적인 사유로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소급하여 프로그램 변경 (예: 집단상담프로그램 → 취업특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변경 시기

1) <원칙> 해당 지급주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협의하여 변경

- 수당 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활동계획 변경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활동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2) <예외>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입원 등)이나 외부 요인(훈련 중단, 참여 예정 프로그램 취소, 수급자의 과실없는 일경험 중단 등)에 의하여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이라도 취업활동계획 변경으로 다른 구직활동을 지정하고 그 이행 여부에 따라서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검토

① (추가) 지급주기 중 희망하는 직업훈련 개강이나 일경험 참여 등으로 구직활동 추가가 필요한 경우(지급주기 중이라도 필요시 반영)

② (대체)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폐강, 일정 변경 등으로 동일한 종류의 구직활동으로 대체하는 경우(적정성을 확인하여 지급주기 중이라도 반영 검토)

예시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직업훈련을 수강하다 상담사와 협의 없이 훈련을 중도포기 한 경우

- 상담사가 수급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중도포기 사유(적성에 맞지 않음, 훈련 내용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움, 훈련참여가 아닌 취업알선에 참여 희망 등)가 더 나은 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이라도 취업활동계획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된 구직활동 이행 여부에 따라서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위 예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담사는 위 예시의 취지를 고려하여 수급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불가피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파악·결정하여야 함

● 변경 방법

1) <원칙> 취업활동계획 변경은 대면 상담을 통해서 변경이 필요한 사유 및 타당성을 판단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

- 2) <예외> 취업활동계획의 방향성 변동이 없는 구직활동 내용 및 방법, 지정일 변경 등은 유선으로도 가능
- 3) <변경 후 조치> 변경 상담 내용을 상담 일지에 기록하고, 취업지원 전산망 취업활동 계획을 변경·출력하여 참여자 서명 후 배부 및 보관
 - ↳ 이 때 전산상 변경일자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출력한 취업활동계획서 상 일자를 변경하여 참여자 서명

참고 수급자 안내 철저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 및 외부 요인 등에 의해서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 활동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전담 상담사에게 연락하여 취업활동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정해진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에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집중 취업알선기간(취업노력기간) 운영: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만료 전 3개월간)**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중 마지막 3개월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취업을 위한 노력기간 운영
 - * 집중 취업알선기간(취업노력기간)은 상담사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제공 뿐 아니라 수급자의 적극적인 입사지원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은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및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간과 중복될 수 없음

3

사후관리기간 운영

- **(취업상담: 매월 1회)**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능력, 취업장애요인 등을 고려하여 종료일로부터 매월 1회 이상 유선 등 방법으로 구직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상담 서비스 제공
 - 미취업자에게 일자리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안내하는 등 고용센터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통해 수급자 스스로 취업의지를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
- * **(전산관리)**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만료 등록 후 「수급자 기본정보」의 「주요진행일」에 「사후관리 만료일자」 입력
 - ↳ 사후관리기간 만료 시 사후관리기간 만료일 다음날이 취업지원 종료일이 됨 (다만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지원 종료사유 발생 시 해당사유로 종료)

Q&A

Q 사후관리기간은 필수로 진행하나요?

A 사후관리는 법률에 의해 제공되어야 할 취업지원서비스이나 수급자가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취업지원 종료 처리 가능함. 다만 사후관리 미진행 종료 후 취업자는 취업성공 수당과 재참여 제한 단축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수급자에게 정확하게 안내할 필요

-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취직에 성공한 경우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되므로 사후관리가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은 아니나, 1개월 미만 근속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속 참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근속 유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 취·창업일을 기준으로 처음 1개월 내 유선연락 등을 통해 직장생활 적응 상황을 확인하고,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법에 대해 상담이 가능한 ‘AI 노동법 상담(<https://ai.moel.go.kr>)’을 안내

-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기준을 안내하여 근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

참고 AI 노동법 상담

임금·근로시간 등 어렵고 복잡한 노동법 질문에 대해 최신 노동법·판례·행정해석을 근거로 24시간 언제든지 맞춤형 답변을 제공



Ⅲ

취업지원 종료 등

1

취업지원 이관

1. 의미

- 수급자의 거주지 이전 등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 기관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을 통해 취업 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희망 시 기존 고용서비스기관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등 계속 제공 가능

2. 절차

- ① **(이관신청)** 거주지 이전 등으로 고용서비스기관의 변경을 원하는 수급자는 「취업지원 이관 신청서」(서식 48)를 작성하여 기존 고용서비스기관(위탁기관 포함)에 제출



취업지원 이관 절차 및 요령

- ① 위탁기관 수급자는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지원 이관 신청서」 제출
 - * 위탁기관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서로 통지
- ② 수급자의 단순한 요구에 의한 위탁기관 변경은 불가능하며, 위탁기관 관리 수급자는 위탁기관으로 이관, 고용센터 관리 수급자는 고용센터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
 - 위탁을 한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부실하여 불만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등 위탁기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이관 가능
 - 수급자의 희망사항 및 접근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직접 취업지원을 하거나 관내 새로운 위탁기관으로 이관 가능

② **(이관처리)** 고용센터는 「취업지원 이관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 이관 여부를 결정·통지(서식 49, 취업지원 이관 통보서 참조)

- 「취업지원 이관 신청서」를 제출받은 고용서비스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이관의 의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후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내

- 고용센터는 이관을 결정하기 전 수급자에게 지급 또는 반환명령 하여야 할 각종 수당이나 비용 등이 있어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지급 또는 반환명령 처리나 이행해야 할 행정처분을 완료하고 이관을 실시하여 기관 간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만약, 이관 전까지 지급 또는 반환명령 등 일정한 행정처분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이관하는 기관과 이관받는 기관이 서로 협의하고 공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송부하여 업무 신속처리 및 민원 발생 방지

③ **(이관받은 후 처리)** 이관 통지*를 받은 고용센터는 3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이관 사실을 안내하고, 필요시 상담일정 등을 협의·결정하여 해당 날짜에 상담 실시

* 이관받은 고용센터에 통지는 전산상 처리하므로, 센터별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이관자 유무를 매일 주기적으로 전산 확인할 필요



취업지원 이관 통지 및 상담실시 요령

① 위탁기관에 의뢰하였던 수급자가 이관되는 경우에는 이관받은 고용센터 관내 위탁 기관에 재의뢰 가능

- 고용센터에서는 전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이관할 위탁기관을 결정하여 해당 수급자를 의뢰하고, 의뢰받은 위탁기관에서는 의뢰받은 당일 수급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이관 사실 안내 등 실시

② 원활한 취업지원을 위해 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하기에 앞서 이전 담당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수급자의 특성 및 상담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파악

- (IAP미수립자) 이관 전 고용서비스기관에서 진행된 제반사항 및 관련 정보를 감안하여 후속절차 신속 진행
 - * 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 계산 시 취업지원 이관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수급자에게 이관 사실을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
- (IAP수립자) 취업지원 경로는 가급적 유지하되,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 변경

3. 자료 및 문서관리

- 그동안 상담을 통해 수집된 수급자에 대한 각종 자료는 가능한 취업지원 전산망에 스캔·업로드하여 별도 문서(오프라인)로 주고받을 필요 없이 전산으로 이관 조치 완료(공문 통지 생략)
 - 다만, 이관받는 기관에서 수급자에 대한 특별한 정보(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관하는 기관과 이관받는 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공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음
 - 이관이 되더라도 취업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심사·결정에 관한 자료,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조기취업성공수당·취업성공수당 지급 여부 등에 관한 자료는 문서 이관을 하지 않고 원래 처리 기관에서 문서 보존 기한까지 보존
 - * 이관받은 기관에서 위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원본을 송부하는 것이 아닌 사본을 송부하여 원래 문서 생성 기관에서 원본 자료는 보관

2

취업지원 유예

1. 의미

- 수급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만큼 취업지원을** 정지하는 등 수급자격을 일정기간 유지하는 것
 -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에는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및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중지되고, **유예되는 기간만큼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자동 연장**
 - 유예 기간 중이더라도 **취업지원 종료사유 발생 시 취업지원이 종료되며**, 유예 기간에 취업하더라도 **취업성공수당 대상은 되지 않음**

2. 기간

- **(유예기간)**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만큼 유예를 허용
- **(유예횟수)**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유예종료)** 결정된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이 유예기간 종료일이 됨

3. 사유

① **본인이 임신하거나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수급자가 임신으로 인해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없는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시기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취업지원 유예 처리하되, 출산 후 90일 경과 이후에도 추가적인 안정가료 등이 필요하여 수급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유예 가능

- 또 형식적 구직활동 방지를 위해 **출산 후 최소 45일간은 반드시 유예 처리** 하여야 함을 수급자에게 안내하고, 유예하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 가능
 -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후 45일은 휴가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출산 후 45일까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를 준용하여 유산·사산한 날부터 10 ~ 90일까지 유예 처리
 - * 유산 또는 사산은 아래 각 유예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대상자의 몸 상태를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충분한 안정기간이 필요한 만큼 유예 신청이 가능
 - ↳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로 유예 사유 종료 30일 이내에 유예 신청과 함께 재참여 신청이 가능



유산 또는 사산한 수급자의 임신기간에 따른 취업지원 유예기간

- ①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②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③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④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확인 방법)** 임신·유산 등 사실확인서(진단서, 소견서, 산모수첩 등), 출생 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유예 여부 결정

②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확인 방법)** 진료기록부, 입원확인서, 주치의 소견서 등을 제출받아 실제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유예 여부 결정



질병·부상 등에 따른 유예업무 처리 요령

- ① 질병·부상 기간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없는 기간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치의 소견(필요시 전화 확인)을 토대로 판단하되, 통상적인 수준의 활동능력과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 ② 취업지원 유예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 시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확인 방법) 입원확인서, 주치의 소견서 등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급자 외에 간병을 할 수 있는 다른 가족의 유무를 함께 확인하여 유예 여부 결정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에 따른 유예업무 처리 요령

- ①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와 같이 위·아래 수직으로 연결되는 본인을 출산토록 한 친족
 - 형제·자매는 수평관계로 직계존속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방계 가족에 포함됨
- ② 직계비속: 자녀, 손자와 같이 본인으로부터 나온 친족(직계존속에 대응하는 개념)

④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

- (확인 방법) 입영통지서, 소집통지서 등을 제출받아 통지서 상의 입영·소집일부터 의무복무 종류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전역일·소집해제일)까지 유예 처리 가능
- (유의사항) 유예는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므로 복무기간 종료일이 해당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유예 불가(취업지원 종료)

⑤ 6개월 미만 동안 국외에 머무는 경우

- 6개월 이상 국외에 머무는 경우에는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종료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 초기상담 시에 충분히 설명하여 국내에 복귀하여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참여하도록 안내 필요

⑥ 천재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⑦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

⑧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3호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
 - * 출소증빙서류 또는 경찰서·교도소 등의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유예 여부 결정
-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고용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일정기간 동안 수급자격 유지 및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절차

① (유예신청) 수급(자격)자는 취업지원 유예 사유 발생 즉시,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를 고용서비스기관에 온라인 또는 우편, 직접 방문 등으로 제출

*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에 한하여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첨부 시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 위탁기관에 배정된 수급(자격)자는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유예 신청서 등을 제출

- (소급인정) 본인의 질병·부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예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와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 가능

② (서면 통지) 고용센터는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유예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



유예업무 처리에 따른 처리기간 산정방법 및 안내 사항

- ①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여 계산
 - ② 취업지원 유예 결정 통지 시 수급자에게 ① 결정된 유예 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에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②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30일 이내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함을 별도 안내(법률 제11조제3항)
- ③ **(재참여 신청)**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 수급(자격)자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또는 그 유예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고용서비스기관에 제출 법 제11조제4항, 시행규칙 제6조제4항
- **(취업지원 재개)** 고용서비스기관은 신청서 접수 즉시 수급(자격)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신속하게 재개* 하고 ①1회 상담을 통하여 취업활동계획 재수립 및 ②재개일부터 월력상 1개월 단위로 지급주기 설정
- * 재개는 취·창업 종료 이후 1개월 미만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지속참여 신청을 한 지속참여와는 다름에 유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여부에 따른 취업지원 재참여 요령

- ①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 산정 시 취업 유예 이전 참여기간과 합산
 -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의 인정결정 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②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이미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여 신속하게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제공
 - 취업지원 유예 기간 동안 수급자의 근로능력이 급격하게 저하 또는 향상되었거나 급격한 산업계의 변화로 취업하고자 하는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활동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④ **(재참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 취업지원 유예기간 만료 또는 유예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 법 제29조제1항제5호

5.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 유예자에 대한 사항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유예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일까지 취업활동 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 여부에 따라 유예 시작일을 결정(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지급 결정 등 포함)하여 유예 처리하여야 함
 - **(유예 전 구직활동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 해당 지급주기는 유지*하되 지정일을 변경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유예 사유 발생일을 유예 시작일로 결정하여 유예 처리
 - * 다만, 지급주기 중 발생소득에 대한 확인 후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유예 기간이더라도 지급주기 종료일까지 발생소득을 확인한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지급주기 종료일 전 지급 불가)
 - **(유예 전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급주기 시작일로 유예 시작일을 결정하여 유예처리.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되 재참여 후 소멸된 지급주기 없이 다시 지급주기 생성
 - **(유예 전 구직활동 의무를 일부 이행한 경우)**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①유예 사유 발생일로 유예 시작일을 결정(이 경우 구직촉진수당 감액(50%) 지급)하거나, ②해당 지급주기 시작일로 유예 시작일을 결정(이 경우 유예 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 없음, 재참여 후 소멸된 지급주기 없이 다시 지급주기 생성)하여 유예 처리할 수 있음

4부 II-4-라. 유예자에 대한 지급기준 202p 참고



유예업무 처리에 구직촉진수당 지급 업무 처리 요령

- ① (기준) 유예 사유 발생 전까지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여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재개 이후 해당 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소멸되므로 유예처리 이전에 해당 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을 명확히 확인하여 처리 후 유예
- ② (사례) ①2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8.1~8.31.) 중에 8.19. 유예사유 발생 → ②8.1~8.19. 기간중에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하면 8.1~8.31. 기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 미이행이면 8.1.로 유예처리 → ③재개 시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가 2회차부터 다시 시작

6. 기타 조치사항

● 구직신청 건에 대한 조치사항

- 취업지원 유예 기간의 종료일이 구직인증일부터 1년 이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고용24 상용 구직신청 화면의 구직신청(필수입력) 탭에서 '알선 유예 기간' 등록
 - * 알선 유예기간에 취업지원 유예 기간의 종료일을 입력하면, 해당 일까지 고용24 구직신청정보는 비공개 처리되며, 그다음 날부터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가능
- 취업지원 유예 기간의 종료일이 구직인증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에는 고용24 상용 구직 채용/마감 화면의 마감처리 탭에서 '지원종료' 처리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에 대한 조치사항

- 취업지원 유예가 결정된 수급자 중에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된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계좌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조치

↳ 그 계좌 사용이 정지된 기간만큼 계좌의 유효기간은 연장됨

3

취업지원 종료

가 의미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만료, 취·창업, 취업활동계획 불이행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종료하는 것
 - * 초기상담을 진행한 수급자격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않았더라도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었으므로 취업지원 종료 대상에 해당됨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와 구직촉진수당 종료를 각각의 요건으로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종료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체가 종료되는 것이나,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종료되어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은 가능한 사유도 있음
 - (구직촉진수당 수급권만 종료되는 사유) 법 제29조제1항제7호(구직촉진수당 수급 종료) 및 제8호(지급중단 횟수 3회)에 해당하는 사유는 구직촉진수당 수급만 종료되고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체 종료 사유) 취업지원서비스 기간만료,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유예 이후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의무 불이행으로 철회된 경우 등 법 제29조제1항
 - ↳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도 조건부수급자로 자치단체로부터 취업 지원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I 유형(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종료하고 II 유형(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으로 참여 가능

- **(취업지원 종료일)** 취업지원서비스(사후관리 포함)를 제공하지 않은 첫 번째 날이 종료일이 됨
 - 취업한 수급자의 경우 취업일부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취업일이 종료일이 되고, 취업지원서비스(사후관리 포함) 기간이 만료된 수급자의 경우 만료일까지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만료일 다음 날이 종료일이 됨
- **(종료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관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자격이 종료된 자 중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기간만료) 및 제2호(취업, 창업)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만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에 해당되며, 다른 사유로 종료(중단)된 자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고시: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1의 2

㉠ 법령에서 명시한 '종료'와 '중단' 등 구분

- **(개요)** '취·창업, 기간만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자치단체 이관'을 제외하고 다른 종료 사유에 따른 종료는 실제 종료가 중단을 의미하나,
 - 취업지원 종료를 규정한 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는 '종료' 이외에 '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실무적으로 종료 원인이 되는 사유별로 종료처리 용어에 대한 구분 필요
- **(적용)** 종료 원인이 되는 사유별로 종료처리 기준을 구분하여 실무적으로는 '①기간만료에 따른 종료, ②취·창업에 따른 종료, ③중단(각 세부 사유별)에 따른 종료 등'과 같이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 전산도 업무처리 이해도를 높이고 통계관리 목적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이 '종료 사유별로 구분하여 종료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종료자의 전산처리 115p 참고)

나 사유 및 시점

1. 취업지원이 만료된 경우

- **(종료일)**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사후관리기간 포함)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 **(사후관리기간 운영 수급자)**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취업하지 못하여 사후관리기간을 운영(3개월 또는 4개월)한 수급자는 **사후관리기간 만료일 다음 날이 종료일**임
 - *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26.3.15.~'27.3.14.이고, 사후관리기간을 '27.3.15.~'27.6.14.까지 운영하였으나 취업 등 취업지원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후관리 만료 종료자로 종료일은 '27.6.15.임
 - ↳ IAP 수립일부터 '27.6.14.까지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및 재참여 제한기간 단축 대상이 됨
 - **(사후관리기간 미운영 수급자)**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취업하지 못하였으나 수급자의 요청으로 사후관리기간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이 종료일임
 -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26.3.15.~'27.3.14.이고, 사후관리기간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기간만료 종료자로 종료일은 '27.3.15.임
 - ↳ '26.3.15.부터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재참여 제한기간은 '26.3.15.부터 3년임(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재참여 제한 119p 참고)

2.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사후관리기간 포함)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 **(종료일)**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사후관리기간 포함) 중 취업 또는 창업한 날
 -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로 취업(「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 자활근로 및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제외)
 - ↳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취득일자, 주 소정근로시간 등이 확인되면 별도 증빙자료 없이 취업으로 인정하고,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및 적용 제외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
 -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

- **사업자 등록으로 개업하여 실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 기준)
 - * 사업자 등록 후 개업일로 바로 휴업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창업으로 불인정(계속 취업지원 가능)
- **월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노무제공자로의 취업**(월 250만원 소득이 발생한 월의 근로 제공 기산일 또는 소득이 발생한 날)
 - *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노무 제공 입증 증명자료 등을 제출받아 확인(매출액이나 수입금액은 조정을 적용하여 소득 환산)



노무제공자 취업(종료)일 판단 기준

- **(개요)** 노무제공자는 소득 발생에 일정한 주기가 없거나 다수에 고용되어 소득이 발생하는 등 소득 발생에 따른 취업일을 확일적으로 정할 수 없음
- **(적용기준)** 아래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급자와 협의하여 취업일을 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취업(종료)일은 추후 취업성공수당 및 재참여 제한기간 기산일 등 다른 업무처리 기준에 동일하게 적용됨

유형	종료일	예시
<유형1> 월단위로 수입(매출)이나 소득이 발생 (수령일 또는 통장 입금일)하는 경우	① 해당 소득(매출) 발생일 ② 해당 소득(매출) 발생일이 포함된 월단위(또는 소득·매출 발생주기)의 시작일 → ①과 ②중 수급자와 협의하여 정한 날	특정 사업장에 고용되는 보험설계사 등
<유형2> 고정적 고용이 아닌 일시적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소득이 발생한 날	프리랜서, 일시적 계약 등
<유형3> 다수 사업장 고용되거나, 고정성 없이 불특정하게 발생한 소득의 합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일 다음 날부터 1개월 단위로 주기를 설정하여, 특정주기에 합산한 소득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① 그 주기에 최초 발생한 소득 발생일 ② 그 주기에 마지막 발생한 소득 발생일 → ①과 ②중 수급자와 협의하여 정한 날	배달기사, 대리운전 등 다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다수의 프리랜서 계약 소득 등

*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 공적자료로 소득이 확인되면 조정을 적용없이 확인된 소득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소득이 아닌 수입(매출)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시) 제3조제3항(소득의 산정 방법)에 따른 조정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기준) '21.7.1.부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에 따라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에 따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되나, 신고된 보수월액이 아닌 실제 발생한 소득(수입이나 매출은 세전 금액에서 조정을 적용)을 확인하여 적용

*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신고된 월보수액으로 판단

Q&A

Q 노무제공자의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공적자료인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 가능하나, 시점의 차이로 현재의 **소득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입금액에 조정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입은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세전 금액**을 말하며, **원천징수영수증 상 소득으로 표기돼 있더라도** 이는 경비 등을 적용하기 전 금액으로 **수입으로 보아야 함**

- (본인 요청에 의한 취업종료 시 종료일) 주 15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및 월 7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노무제공자로 취업한 날 또는 취업일 이후 본인이 취업 종료를 희망하는 날

* 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면 주 15시간 미만 임금근로자도 본인 희망으로 종료 가능

- 주 30시간 미만 또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 불완전 취업자는 취업지원 종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계속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하나, 주 15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및 월 7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노무제공자로 취업한 경우 본인 요청에 따라 취업 종료 가능

① 본인 요청에 의한 취업 종료 시 유의사항

- ① 본인 요청에 의한 취업 종료 시에는 취업일이 포함된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에 별도의 구직활동이 없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4부 II-4. 종료자에 대한 지급기준 201p 참고

- ② 원칙적으로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조건 변경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로 인정 가능할 수 있음

4부 IV-3. 취업성공수당 임금근로자 지급기준 221p 참고

- ③ 불완전취업자로 계속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해당 취업으로 발생소득은 신고소득이 되므로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3회 이상 지급 정지되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되고 취업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

- (수급자격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보유자의 창업 종료 예외) 새로운 사업자 등록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이상 업종을 추가·전환한 경우가 아닌 기존 사업자에서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II유형 특정계층 영세자영업자 참여자는 월 2,500만원 초과)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중단(종료) 처리

* 새로운 사업자등록은 창업으로 종료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소분류 이상이 다른 업종의 사업자 등록이 아닌 경우 취업성공수당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4부 IV-3. 취업성공수당 창업 지급기준 225p 참고

- (첫 번째 취·창업 후 1개월 미만 퇴사자에 대한 예외: 지속참여) 첫 번째 취·창업 종료 후 1개월 미만으로 근무(사업)하다 퇴직(폐업)하고, 퇴사 후 1개월 이내 '취업지원서비스 지속참여 신청서(서식 23)'를 제출한 경우 취·창업 종료를 취소하여 지속 참여할 수 있음

- 취업성공수당 수급 목적의 입·퇴사 방지 등을 위해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으로 한정(1회)

- 구직활동 미충족 시 수당이 미지급 됨을 감안하여 지속참여 신청서 제출과 취업활동계획 변경을 위한 대면상담을 신속하게 추진(민원인에게 사전 안내)

* 취업지원 유예에 따른 재개(재참여)와는 다른 개념임을 유의

참고 취·창업 종료자 및 취·창업 후 지속참여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업무처리

1. <취·창업 종료자> 취·창업 종료일부터 해당 지급주기 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취업 지원서비스 기간이 아니므로 신고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2. <취·창업 종료 후 지속참여자> 취업종료가 취소되므로 미취업 수급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취업기간에 따른 구직활동 인정 가능
 - (구직활동) 지급주기 중 취·창업 자체를 구직활동(2회) 요건으로 인정하여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취·창업 후 1개월 미만 기간 중에 퇴직(폐업)하여 지속 참여 신청한 경우 원래 계획에 따라 이행한 구직활동 2회가 없는 경우에 수당 반환 대상이 되나, 반환 최소화를 위해 취업기간을 구직활동으로 인정

| 취업기간에 따른 구직활동 인정 기준 |

● 해당 지급주기 중 취업기간(휴일 포함)이 10일 이상(미만)일 경우에는 구직활동 2회(1회) 인정 가능

* 직업훈련 및 일·경험 구직활동 인정기준 준용

● 해당 지급주기 내 취업 전, 면접이 선행된 경우이면 별도 구직활동 1회 인정 가능

※ 구직활동 및 취업기간 요건을 혼합하여 구직활동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취업기간이 10일 미만이고 별도의 구직활동 없이 해당 지급주기가 지난 경우라면 구직촉진수당 감액 지급(50% 지급) 대상으로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의 50%는 반환 대상

- (지급주기) 취·창업 종료를 취소하고 지속 참여토록 하였으므로, 당초 정해진 지급주기는 그대로 적용

* 법 제11조에 의한 유예처리와는 달리 적용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 시 종료처리 기준

- **(개요)**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 따른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사유에 해당되나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하여도 실제 취업(임용) 일자가 달라 별도로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일자를 정할 필요
- **(적용)** 국가·지방직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한 자에 대해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최소한의 수급권 인정을 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 종료사유를 취업으로 하여 종료 처리
 - ① 취업자로 합격 자체를 구직활동 2회 요건으로 인정하여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 여부와 별개로 합격 발표일이 포함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전액 지급 가능
 - * 주 30시간 이상 전일제 공무원에 한함
 - ② 단, 한시계약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등과 같이 시험 최종 합격일자와 동시에 임용일자(출근일)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임용일자(출근일)를 기준으로 취업 종료 처리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면 임용일자(출근일) 기준으로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3.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

- **(종료일)** 해당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날(사업 참여기간 시작일)
 - * 중앙부처 직접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참고
 - 근로시간 및 소득과 관계없이 종료 처리(취업 종료처리 대상 아님)
- **(예외)** 고시 제8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계속 지원 가능
 - 단, 노인일자리 등 일경험 취지와 맞지 않게 참여하거나 수급자가 상담사와 협의 없이 임의 참여시에는 종료 처리

참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업무처리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는 취업 종료가 아니므로 종료일 전일까지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로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 판단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종료일)**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날

*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날”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계급여 결정일(자치단체에서 생계급여 책정을 결정한 날)”을 의미

● **(예외)**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만을 종료시킨 뒤에 자치단체에서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하여 행복e음을 통해 의뢰된 경우*에는 II유형 대상으로 당초 결정된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의 범위에서 취업지원 서비스 계속 제공

*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자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되어, 자치단체에서 자활이행 경로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로 지정한 경우임

참고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업무처리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날(생계급여 결정일) 전일까지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로 구직촉진수당 지급여부 판단

* '25.7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자부터 해당 기준 적용

취업지원 참여 중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 시 업무처리 요령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된 경우만 적용되며,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및 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대상자는 해당하지 않음
 ※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날부터 구직촉진수당 중복수급 제한은 생계급여 일반수급자도 동일
- ② **(전산처리 요령)** I유형 수급자가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자치단체 의뢰 받은 후, “나의 할 일 → 자활의뢰자 관리 → 등록 진행 시 II유형 특정계층 당연대상자로 갱신”되며 I유형 상담내역이 그대로 확인됨
 - II유형 수급자가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자치단체 의뢰 받은 후, “나의 할 일 → 자활의뢰자 관리 → 등록 진행 시 II유형 특정계층 당연대상자로 갱신”됨
- ③ **(구직 마감처리)** 종료 시 종료자의 취업의지, 희망사항 등을 고려하여 고용24 구직 인증번호에 대한 “지원종료” 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서비스 “계속지원” 시에는 고용24 구직인증번호가 마감되어 있는 경우 구직신청 처리

5.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종료일)**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6.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 수립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한 경우

- **(종료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한 날



정당한 사유의 예시

수급자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 제출 생략 가능

- ① 병역판정검사 또는 예비군, 민방위훈련 등과 같은 공적인 의무이행을 하게 되어 직업안정기관 방문 또는 진로상담·직업심리검사 등의 참여일을 변경하지 못한 경우
- ② 갑작스럽게 기업의 채용일정에 따른 필기전형 또는 면접전형에 응시하게 되어 직업안정기관 방문 또는 진로상담·직업심리검사 등의 참여일을 변경하지 못한 경우
- ③ 본인의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 방문 또는 진로상담·직업심리검사 참여 등을 하지 못하였거나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7.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이 최종 회차인 경우(구직촉진수당 수급만 종료)

- **(종료일)** 최종 지급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
 -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종료(최종 회차 지급)되었으나, 종료일 이후에도 당초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만 종료 처리하고,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지원 서비스는 지속 제공

8. 구직활동의무 미이행으로 지급 중단 횟수가 3회인 경우(구직촉진수당 수급만 종료)

- **(종료일)**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3회차 지급중단 결정이 있는 날
 -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른 구직활동 미이행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이 발생한 횟수가 3회가 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은 소멸하나, 참여유형 변경 없이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은 유지되어 남은 기간 취업지원서비스는 지속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중단 기간 설정 및 횟수 판단 업무처리 요령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소된 날까지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
- ② 지급중단 횟수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중단된 지급주기(1개월)를 1회로 산정
- ③ (유의) 지급 정지(법 제21조, 소득 초과)와 지급 중단(법 제26조, 구직활동 미이행) 사유 발생 시에 3회 적용은 각각의 사유별로 적용하는 것이며 두 사유의 정지와 중단 횟수를 합쳐서 3회로 적용하지 않음

* 지급정지 3회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체를 종료, 지급중단 3회시 구직촉진수당 수급만 종료

9.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도중 법 제6조에 따른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중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종료일)**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날
 -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급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만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법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 가능
 - * (유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I 유형으로 취업지원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II 유형 취업활동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상급학교(대학교 등) 진학 시 종료처리 기준

고등학생 참여자가 취업지원기간 중 대학에 진학할 경우 대학 등록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더 이상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취업지원 종료(중단)

- 대학(원) 진학의 경우 합격 통지 후 등록금 납부일까지는 진로 선택의 고민이 있을 수 있으나, 등록금을 납부한 사실은 최종적으로 진학을 결정한 것이므로 구직의사가 소멸되었다고 간주

10.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 수급자로 선정되어 수당을 받게 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이거나 총지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종료일) 수당을 처음 받는 날(지급기간이 있는 경우 지급기간 시작일)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선정되면, 정해진 구직활동을 종료일 전까지 이행했는지에 따라서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 결정

11.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소득발생으로 지급 정지 횟수가 3회인 경우

- (종료일)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한 날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근로·사업·이자·배당금 소득 및 이전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정지를 받은 횟수가 3회 누적된 경우 수급자격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4부 II-5.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기준 209p 참고

12.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 (종료일) 지급결정이 취소된 날(부정수급 처분일)
 - 법 제6조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법 제27조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것이면 취업지원서비스 자체를 종료

13.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게 된 경우

● (종료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날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로 소급하여 종료처리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참고 구직급여 수급 종료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업무처리

- 지급주기 중에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게 되면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부지급
-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으로 구직촉진수당과 구직급여가 중복지급되면 중복된 기간의 구직촉진수당은 반환명령 대상

14. 수급자 본인이 취업지원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 (종료일) 종료를 원하는 날

- 수급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확인되어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어 반드시 취업지원서비스 등 지원 종료 요청서(서식 46) 및 그에 준하는 내용의 서면 요청서를 징구하고 그에 따라 종료 처리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미제출 시 종료 처리 기준**

- (개요) 소득 초과나 구직활동 미이행, 기타 사유 등으로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령 검토) 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취업지원프로그램 의무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 또한, 지정일에 제출하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는 수당 수급 목적만이 아닌, 수급자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를 가지고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하는지 여부, 취업 및 소득 발생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수급자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수급자격 인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음
- (적용 기준) 수급자가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연속하여 2회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므로,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 제29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서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결정하여 확인된 날에 종료처리 가능

- 취업지원서비스를 종료 처리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한 후 행정처분 하여야 함
- 다만 2회 연속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미제출한 경우라도, 행정처분 전 다시 성실히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 포함)한 경우 종료 처분하지 않음
 - * 연속 2회 이상의 기준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처분 예정 내용을 고지하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최소 요건으로 법률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님

다 종료자의 전산처리

- **(취업지원 전산망)** 종료사유에 따라 취업지원 전산망 상 취업지원 종료 처리

전산망 종료 구분	종료 사유(세부 구분)
기간만료, 사후관리 만료	취업지원서비스(사후관리기간 포함) 기간만료
취업, 사후관리 취업	①취업(임금근로자), ②취업(노무제공자), ③창업
중단	①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참여자로 선정, ②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③유예기간 만료 혹은 사유 해소 후 미참여, ④수급자격인정철회(취업활동계획 미수립), ⑤구직촉진수당 중단, ⑥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미달, ⑦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미달, ⑧법 제7조제3항제5호 수급자로 선정, ⑨구직급여 수급자로 선정, ⑩수급자격 인정철회(소득초과 지급정지 3회), ⑪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⑫수급자 본인 희망, ⑬기타
사후관리 중단	①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참여자로 선정, ②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③법 제7조제3항제5호 수급자로 선정, ④구직급여 수급자로 선정, ⑤수급자 본인 희망, ⑥기타
자치단체 이관	자치단체 이관

* 중단에 해당되는 사유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종료 등록 후 결재 필요

- **(고용24)** 고용24에 등록되어 있는 유효한 구직신청은 취업 내용에 적합한 유형으로 반드시 수급자의 전담상담사가 처리

* 취업알선 업무지침(2025.4.) 참고

취업유형		분 류 기 준
알선 취업	① 상담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자에게 상담을 통해 고용24의 유효한 구인정보를 소개하였거나 고용24에 구인신청을 한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입사지원 의사를 확인한 구직자 명단을 제공(알선)하여 채용이 되는 경우 ■ 구직자와의 대면·유선 상담을 통해 일자리 세부정보와 채용행사 일정을 미리 안내하여 알선처리한 후 실제 행사에서 면접을 본 결과 채용이 되는 경우 ■ 구인기업이 고용24를 통해 지정알선을 신청하여 구직자의 입사지원 의사를 확인한 후 알선이 이루어진 결과 채용되는 경우 ■ 고용24 자동마감 처리 시에는 ‘알선총족(system)’으로 구분
	② 행사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서비스기관의 사전 알선 없이 고용서비스기관에서 직접 주관(개최)하는 채용행사에 구직자가 스스로 참여하여 채용되는 경우
	③ 직접일자리 (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서비스기관의 알선을 통해 직접일자리 사업(노동시장 이행형)에 참여자로 선발(채용)된 경우
구직 마감	① 고용24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인자나 구직자가 고용서비스기관의 알선 없이 고용24를 통해 입사제안(지원)를 통해 채용(취업)한 경우
	② 외부구인 정보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자에게 고용24에 구인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일자리를 소개하여 채용이 이루어지고, 알선에 준하는 소개 과정이 확인된 경우
	③ 컨설팅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서비스 기관의 담당자가 직접 구직자가 목표로 하는 기업의 입사 지원서나 면접 클리닉을 개별적으로 제공한 후 해당 기업에 취업한 경우
	④ 본인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자가 일자리를 스스로 찾아 취업하는 경우 ■ 고용24 자동마감 처리 시에는 ‘본인취업(system)’으로 구분
	⑤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 등 특수고용직으로 취업한 경우
	⑥ 직접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자가 직접일자리사업(노동시장 이행형) 참여자로 선발(채용)된 경우
	⑦ 공공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자가 직접일자리사업(사회·복지형) 참여자로 선발(채용)되는 경우 <p>* “사회·복지형” 중 노인 등 특정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제공하는 “복지형” 사업 참여자는 “공공근로”로 구분·처리하지만,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실비만 지원하는 “사회봉사형” 일자리는 취업(근로자 채용X)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공근로”로도 처리하지 않음</p>

라 절차

- **(서면 통지)** 취업지원 종료 사유가 확인되어 종료 시점이 결정된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취업지원 종료 결정 통지서를 즉시 배부
- **(처분사전통지 등 준수)**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종료처분은 수급자에게 불이익 또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반드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처분하여야 함
 - 다만, 권익을 제한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거나, 기간만료, 취·창업, 본인 종료 희망,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등과 같이 법령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처분에 대한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 (민원인과 분쟁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생략 가능
 - * 이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적 정당성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에 유의
- **(고지 의무)** 종료 결정 통지 시에는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심사·재심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관련 사항과 청구절차, 청구기간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
- **(심사·재심사 등)** 취업지원 종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 이 법에 따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 및 재심사 청구 가능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업지원 종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 1년 이내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심사 및 재심사 관련 업무는 현행 고용행정 통합포털 전산망의 행정지원-심사청구를 활용하여 심사·재심사 청구서 접수 및 전송 등 업무를 수행



심사청구 절차 등 안내

- **(심사청구서 방법 및 접수)** 심사청구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심사청구서가 제출되어야 함
 - 피청구인 적격이 없거나 심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접수하여야 함
- **(심사청구 당사자)**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직접 침해당한 자로서 취업지원 신청인, 수급자·수급자격자(각 엇년자 포함),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서 연대책임을 지는 자 등이 있음
 - 피청구인은 처분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됨
- **(심사청구 대상)** 법 제10조제1항(수급자격자의 결정 통지), 제11조(취업지원의 유예), 제21조(소득발생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제2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제29조(취업지원 종료일 및 재참여 허용기준) 등
 - 위에서 열거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심사 및 재심사 가능
- **(심사청구에 따른 이행 절차)**
 - **(심사청구기간 확인)** 청구인이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함(90일 도과 시에는 각하 주문 요구)
 - **(심사청구서 및 의견서 등 송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보내야 함(서식 70~71)
- **(주의 및 안내사항)**
 - 원처분청은 반드시 심사청구서 부분 1부를 보관하여야 함
 - 심사관에게는 원본(심사관용) 1부, 부분(복사본, 청구인용) 1부를 각 송달
 - 심사 관련 자료 전달 시에는 원본을 있는 그대로 제출(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직책, 주요내용 등을 지우지 않음)
 - 청구인에게 송달되는 부분에는 청구인용 부분(복사본)임을 별도 표시하나, 부정수급 제보에 관한 내용, 제3자의 개인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정보는 반드시 삭제 등 조치하여 송부
 - 심사청구서와 의견서 등은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서 제출 가능
 - 우편 및 전자문서로 송부시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전산망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여 전송 등 조치 필요

4

재참여 제한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및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반복 참여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중에는 성실한 참여를 유인할 목적 등으로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재참여 제한기간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법 제29조제3항 및 시행령 제13조, 고시 제12조

I 종료사유 및 취업기간별 재신청 가능일 I

구 분		재신청 가능일
① 취·창업,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부정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따른 종료자		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예 종료일이 '26.12.3.인 경우 ↳ '29.12.3.부터 재신청 가능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24.2.9.부터 사후관리기간 중 취·창업자 포함)	② 취·창업 종료자 중 취·창업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취·창업에 따른 종료일로부터 2년 경과 후
	③ 취·창업 종료자 중 취·창업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취·창업에 따른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④ 취·창업 종료자 중 취·창업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취·창업에 따른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즉시)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24.2.9.부터 사후관리기간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자 포함)	⑤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어 종료된 경우	위 ②~④의 일반적인 취창업 기간별 기준 적용 (취업지원 종료 이후 재참여하는 경우)
⑥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제한 을 받은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결정 취소 결정일 (부정수급 처분일)부터 5년 경과 후
⑦ 고용센터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 제한기간을 설정

※ '24.2.9. 이전 기간만료 종료자는 사후관리기간 내 취·창업하였더라도 재참여 제한기간 단축 적용이 되지 않음에 유의. 참고로 '24.2.9. 기준 사후관리기간 중이었던 수급자가 이후 사후관리 종료 전 취업한 경우, 기간만료 종료자가 아닌 취업 종료자임

- 취업지원 종료사유가 취업 또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근무(사업운영)기간에 따라 재참여 제한기간 단축 가능
 - 취업 종료자는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및 월 소득 250만원 이상 발생 하는 노무제공자^{법 제29조제1항제1호, 시행규칙 제20조}에 한하며, 불완전 취업상태로 수급자 요청으로 취업 종료한 경우는 제외
 - 사업자등록으로 창업 종료한 자는 휴·폐업기간을 제외한 실제 사업 운영 기간으로 산정
-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종료사유는 기간만료, 취·창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

㉟ 재참여 제한기간이 단축 적용되는 취·창업기간 계산 방법

①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일자리 취업

- 고용보험 취득·상실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취득기간(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으로 파악하며,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은 각각의 취업기간을 합하여 산정*(단,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 근무기간 제외)

* 취업지원 종료된 취업일 기준으로 월력상 6개월 또는 12개월 근무기간의 일수를 계산하여, 총 합산된 근무기간이 해당일수 충족 시 해당기간만큼 취업이력으로 인정

예시 3.1. 취업 시 6개월 근무기간인 3.1~8.31.의 월력상 6개월 근무일수인 184일 이상이면 인정

- A사업장 3.1~6.1, B사업장 8.1~10.30. 합산 시 총 근무일수 184일이므로 6개월 근무기간 인정
- A사업장 3.1~6.1, B사업장 8.1~10.29. 합산 시 총 근무일수 183일이므로 184일 충족하지 못함(미인정)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신고되지 않은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기간에 합산 (필요시 서식 25 '취업기간 등 인정 확인서' 사용 가능)

* 주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등 소득이 발생한 기간만 경력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안내

② 월 소득 250만원 이상 노무제공자로 취업

- 월소득 250만원 이상 발생한 기간만 월 단위로 인정 가능하고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거주자 월별 원천징수영수증, 고용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월별 수수료 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등을 교차 확인 등, 매출이나 수입은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

③ 사업자등록으로 창업

-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휴·폐업 기간을 제외하고 창업기간으로 인정

④ 취업기간에 취업·창업·노무제공자 취업 이력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①·②·③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모두 합하여 취·창업 기간으로 합산

⑤ 그밖에 취·창업 기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불인정

⑥ (운영위원회 심의) 위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직전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사유가 '기간만료, 취·창업,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인 경우,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취업지원 신청 제한기간을 1년~3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

IV

구체적인 취업지원서비스

1

취업역량평가(초기상담 시)

- **(실시 목적)** 수급자격자가 보유하고 있는 취업역량을 판별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노동시장으로 조기 진입을 지원
* 설문내용: ▲구직의지, ▲구직장애요인, ▲건강상태, ▲구직역량
- **(실시 원칙)** 취업역량평가는 초기상담 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2회차 상담에서도 실시 가능
 - 수급자격자의 정확한 취업역량평가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상담사가 직접 실시하여 활용
- **(실시 방법)** 취업역량평가 설문지는 수급자격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여 상담사의 개입을 최소화
* 다만, ▲구직의지, ▲건강상태 관련 문항은 상담사가 직접 질문하여 기입 가능
- **(결과 제공)** 취업역량평가 진단 결과를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결과 해석을 통해 수급자격자가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함
- **(활용 방법)** 취업역량 판정 점수에 따라 구분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시 참고

점수 구간	취업역량 평가 결과	수급자 유형
63.5점 미만	낮음	종합지원형<능력 低, 의지 低>
63.5~77점 미만	보통	의욕향상지원형<능력 高, 의지 低> 능력향상지원형<능력 低, 의지 高>
77점 이상	높음	빠른 취업지원형<능력 高, 의지 高>

① 취업역량평가 설문지

- 본 설문지의 결과는 참여자의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결정 여부와는 관련 없습니다.
- 선택 지표는 가장 적합한 문항 하나만 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1) (I . 구직의지, II . 구직장애요인, III . 건강상태)							
영역	평가 지표	문항	응답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I . 구직 의지	① 구직목표 수립	1. 취·창업하고 싶은 직업이나 기업을 정했다.	<input type="checkbox"/>				
		2. 취·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3. 기회(일자리 등)가 생기면 바로 취·창업할 생각이다.	<input type="checkbox"/>				
	② 일자리 수용태도	1. 실제 임금이나 소득이 생각보다 적더라도 나의 상황에 맞다면 (혹은 내가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지원할 생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2. 내 예상보다 기업의 규모가 작거나 안정성이 낮더라도 나의 상황에 맞다면(혹은 내가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지원할 생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3. 상담사가 추천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의사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4. 업무상 필요하다면 시간 외 근무 등도 고려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 . 구직 의지	평가지표	문항	평가기준				
			아니오	예			
	③ 구직행동	1. 최근 6개월 내, 취업정보(취업공고)를 찾아본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최근 6개월 내, 입사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를 작성해 제출해본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최근 6개월 내, 주변에 취업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알아본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최근 6개월 내, 취업지원기관(고용센터, 일자리센터, 직업소개소 등)을 방문해 본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최근 6개월 내 기업 만남의 날, 취업박람회 등 채용 행사에 참석해 본 적이 있다(온라인 채용행사 포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최근 6개월 내, 면접을 받아본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설문지(2) (Ⅰ. 구직의지, Ⅱ. 구직장애요인, Ⅲ. 건강상태)								
영역	평가지표	문항	응답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Ⅱ. 구직 장애 요인	① 가족부양	1. 일상생활을 위해 나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 (미취학 자녀, 고령의 부모님, 병간호 필요 가족 등)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2. 1과 관련,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 내가 직장생활을 하려면 도움이 필요하다.(부모님, 정부 혹은 지자체)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② 경제적 취약성	1. 내가 일하지 않아도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2. 지금 당장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3. 현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③ 근로 가능시간	1. 개인 사정상, 8시간 전일제가 아닌 특정 시간에만 일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2. 개인 사정상, 주 5일 근무가 어렵다.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④ 지리적 위치	1. 개인 사정상, 출퇴근 왕복 2시간 이내의 직장으로만 취업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2.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출퇴근에 필요한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다.(자가용, 대중교통 등)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Ⅲ. 건강 상태	① 종합적 건강상태	1. 현재 나는 정신적 혹은 신체적 건강문제가 있어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② 정신적 건강상태	1. 여러 사람과 어울려 일하는 것이 어렵다.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2. 직장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이 있다.					
③ 신체적 건강상태	1. 오랜시간 자리에 앉아 있거나, 신체적으로 무리가 있는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IV. 구직역량 평가 배점표(1)								
평가지표	문항	평가기준	배점	가중치	진단 점수	비고		
1. 배경 요인	필수 지표	① 연령	·20~34세	5점	3/5	■ 점	·참여자 연령	
			·35~49세	4점				
			·50~64세	3점				
			·65~69세	2점				
			·15~19세	2점				
		② 학력수준	·4년제 대졸 이상	5점	2/5	■ 점	·참여자 최종학력	
			·전문대졸	4점				
			·고졸	3점				
		·중졸 이하	2점					
	선택 지표	·아래 5개 지표 중 참여자에 적합한 1개 지표 선택						
	선택한 지표 체크 후 해당 지표만 배점	<input type="checkbox"/> ③ 대학전공과 희망 취업 분야의 연관성	·연관성 높음	5점	1	■ 점	·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선택 가능	
			·어느 정도 관계 있음	4점				
			·연관성이 낮거나 희망 취업 분야 미정	3점				
		<input type="checkbox"/> ④ 고교유형	·마이스터고 졸업	5점			3점	·대학(원) 재학생, 졸업생 선택 가능
			·특성화고 졸업	4점				
<input type="checkbox"/> ⑤ 대한민국 거주 기간		·일반고 졸업	3점	5점			·이민자 및 북한이탈 주민 선택 가능	
		·7년 이상	5점					
	·4~6년	4점						
<input type="checkbox"/> ⑥ 한국어능력 수준	·3년 미만	3점	5점	·이민자 선택 가능				
	·직장생활 관련 전문용어 이해	5점						
	·일상적인 대화가 원활	4점	4점	·다른 선택지표 중 나에게 적합한 지표가 없을 경우 선택 가능				
	·서툴지만 일상 대화 가능	3점						
	·기본적인 일상 대화가 어려움	2점						
<input type="checkbox"/> ⑦ 해당없음			3점					
2. 직업 능력	필수 지표	① 자격증 보유 개수	·3개 이상	5점	1/5	■ 점	·최근 2년 동안 획득한 개수	
			·1~2개	4점				
			·없음(0개)	3점				
		② 국가기술 자격 보유 개수	·3개 이상	5점	2/5	■ 점	·최근 2년 동안 획득한 개수	
			·1~2개	4점				
			·없음(0개)	3점				
③ IT 활용 능력	·오피스 프로그램 등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다.	5점	2/5	■ 점				
	·주로 인터넷 활용, 동영상(유튜브 등) 시청 목적으로 사용한다.	4점						
	·PC를 포함한 스마트 기기의 사용 방법을 잘 모른다.	3점						

IV. 구직역량 평가 배점표(2)									
평가지표	문항	평가기준	배점	가중치	진단 점수	비고			
	선택 지표	• 아래 3개 지표 중 참여자에 적합한 1개 지표 선택							
2. 직업 능력	선택한 지표 체크 후 해당 지표만 배점	④ 직업훈련 참여 횟수	·3개 이상	5점	1	점	• 최근 2년 동안 수료한 과정 수		
			·1~2개	4점					
			·없음(0개)	3점					
		⑤ 인턴 및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횟수	·3회 이상	5점			1	점	• 최근 2년 동안 참여 횟수 - 인턴: 기업에 출근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일경험: 기업에 출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인턴은 한 번 참여한 것을 1회로 일경험은 0.5회로 간주하여 계산
			·0.5회 이상 3회 미만	4점					
			·없음(0회)	3점					
⑥ 어학 점수 또는 어학 연수 경험 유무	·있음	5점	1	점	① 어학연수 경험 여부 ②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공인 외국어 능력 시험점수(등급) 유무 ⇒ 둘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둘 모두 해당하면 '있음' 선택				
	·없음	3점							
3. 취업 이력	필수 지표	① 미취업(창업) 기간	·3개월 미만	5점	1	점	• '참가 신청일 기준 최초 2년' - 취업 또는 창업기간* * 근로시간·형태·종류 등은 불문하고 취·창업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 <예외사항> 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나,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참여한 경우에는 '3개월 미만' 선택 ② 대학(원) 재학생은 실제 취업이 가능한 시점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5.1./8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11.1.)부터 산정 예) '24.2월 졸업예정자가 '23.8월에 참가 신청한 경우: ('23.5.1부터 '23.8월까지 기간) - ('23.5월부터 '23.8월 간 취업 또는 창업기간) ③ 참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 개인사정으로 6개월 범위 내에서 휴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2년에서 차감 예) 출산으로 인해 4개월 휴직한 경우 : (2년 - 4개월) - 취업기간		
			·3~6개월 미만	4점					
			·6~12개월	3점					
			·12개월 이상	2점					
		②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5점	1	점	• 참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 고용 보험 가입기간		
			·6개월~1년 미만	4점					
·없음	3점								

맞춤형 취업역량 평가 최종 배점표							
(I. 구직의지, II. 구직장애요인, III. 건강상태는 설문지 점수, IV. 구직역량은 배점표 점수 기입)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영역별 진단점수	가중치	최종 점수		
I. 구직의지	① 구직목표수립	25점	설문지	■ 점	25/75	■ 점	
	② 일자리 수용태도	20점					
	③ 구직행동	30점					
II. 구직장애요인	① 가족부양	10점		■ 점	15/45	■ 점	
	② 경제적 취약성	15점					
	③ 근로가능시간	10점					
	④ 지리적 위치	10점					
III. 건강상태	① 종합적 건강상태	5점		■ 점	15/20	■ 점	
	② 정신적 건강상태	10점					
	③ 신체적 건강상태	5점					
IV. 구직역량	1. 배경요인	① 연령		10점	■ 점	15/10	■ 점
		② 학력수준					
		선택	③ 대학전공과 희망 취업 분야의 연관성				
			④ 고교유형				
			⑤ 대한민국 거주기간				
			⑥ 한국어능력 수준				
			⑦ 해당없음				
	2. 직업능력	① 자격증 보유 개수	10점	■ 점	20/10	■ 점	
		② 국가기술자격 보유 개수					
		③ IT활용 능력					
		선택					④ 직업훈련 참여 횟수
							⑤ 인턴 및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횟수
							⑥ 여학점수 및 연수 경험 유무
3. 취업이력	① 미취업기간	10점	■ 점	10/10	■ 점		
	② 고용보험 가입기간						
			IV. 구직역량 평가 배점표				

自 취업역량평가 도구 개편 사항('25.5.23.)

- ◆ **(결과 제공·상담방식 개선)** 취업역량평가 도구 진단결과표 개발, 진단 결과를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상담자-참여자 간 협의 과정 추가
 - 참여자 제공에 적합한 등급 구간 등을 변경하고, 종합 결과 및 추천 서비스 제시
- ◆ **(상담활용성 강화)** 평가 결과 해석 절차를 통해 상담자-참여자 협의 기능 강화 (구직준비도 점검 체크리스트 추가)로 IAP 수립 시 결과 활용도 제고

1 평가 결과표 개발·제공

- **(기본방향)** 참여자 제시 및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취업역량평가 결과표 개발 및 활용 절차 마련
 - * 평가결과는 종합 결과, 세부영역별 결과 크게 2개로 구분하여 제공
 - **(1단계)** 참여자의 전반적인 구직준비도 수준을 **3개**(A 낮음·B 보통·C 높음) 등급으로 제시하여 구직 취약성 정도 확인
 - **(2단계)** 구직역량, 구직의지에 따른 수급자 유형 1차 분류, 4개 영역별 점수 수준 및 추천 서비스 확인
 - 상담사-참여자 간 추가 상담(구직준비도 점검 체크리스트(참고) 활용 등) 과정을 통해 참여자 특성에 맞는 최종 수급자 유형 도출
 - ↳ 상담사의 재량권 확보 및 수급자 유형 구분 미스매칭 완화

1단계

- **(종합결과)** 설문지의 일부 문항 조정* 및 참여자 제공에 적합한 등급 구간·용어를 변경하고, 각 구간별 점수해석 제공
 - * 구직의지(영역)-구직목표 수립(평가지표)의 4번, 5번 문항 삭제
 - **(산출방식)** 종합점수는 4개* 평가 영역의 최종 점수 합산 <기존 동일>
 - * 구직의지, 구직장애요인, 건강상태, 구직역량 척도의 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
 - **(재량구간)** 유형구분 기준(63.5점, 77점)에 인접할 경우, 최종 판단을 상담사에게 허용하는 구간 설정 → 유형구분 기준점 ±5점(58.5~68.5 / 72~82) 적용

다음 그림은 귀하의 전반적인 취업역량평가 결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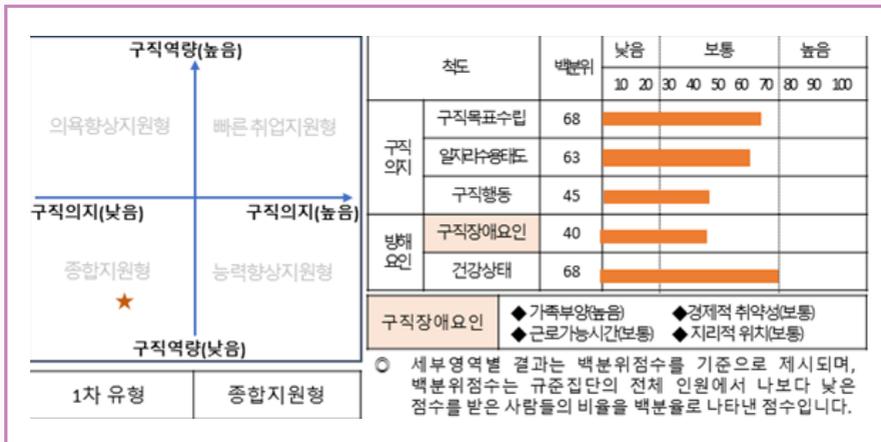


귀하의 취업역량평가점수는 _____ 점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취업(준비)를 하는데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 행		개 선	
점수구간	취업역량평가 결과	점수구간	취업역량평가 결과
50점 미만	A유형	63.5점 미만	낮음(A유형)
50~77점 미만	B유형 혹은 C유형	63.5~77점 미만	보통(B유형)
77점 이상	D유형	77점 이상	높음(C유형)

2단계

- (세부 영역별 결과) 취업역량평가 구성요인 및 하위요인에 대한 표준집단별 백분위 점수를 산출하여 적용



- (추천서비스) 1차 수급자 유형에 맞는 적합서비스 제시

- 구직역량향상지원 ○ 구직의욕향상지원 ○ 복지지원 ○ 심리정서지원

참고 구직준비도 점검 체크리스트

1. 취업목표

1.1 취업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추가질문

질문1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이 000이라고 하셨습니다. 참여초기와 같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질문2	000으로 취업하려는 의지가 확고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질문3	희망하는 직종으로 취업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2 취업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질문

질문1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을 아직 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망 분야를 결정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	---------------------------------------------------------------	--

2. 구직역량

직무 능력	학력	1.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학력수준을 갖추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과 관련이 높은 학과를 전공하거나 관련 과목을 이수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훈련 및 자격	3.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습득을 위한 직업훈련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갖추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외국어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일경험	6.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과 관련한 경력 및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직업 기초 능력	의사소통	7.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사람이 뜻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이 뜻하는 바를 말(혹은 글)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대인관계	8.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과 원만히 지낼 수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자기관리	9.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행동과 업무수행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컴퓨터활용	10. 업무수행에서 요구되는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구직 기술	구직정보	11. 취업하고자 하는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입사요건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2.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위한 취업정보 탐색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입사서류	13. 필요한 이력서 작성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4. 장점이거나 경력이 잘 드러나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5.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면접	16. 면접 시 나의 능력이나 장점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7. 면접시 당황스러운 질문에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취업방해요인

3.1 취업역량평가 결과 취업방해요인 점수가 보통 이하인 경우

질문1	지난 시간에 실시한 취업역량평가 결과상으로 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방해요인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취업역량평가 이후 취업을 어렵게 하는 상황으로 바뀌거나 한 점이 있을까요?	① 예 ② 아니오
-----	------------------------------------------------------------------------------------------------------------------	-----------

3.2 취업역량평가 결과 취업방해요인 점수가 높음 이상인 경우

질문1	현재 가족돌봄 (간병, 양육 등)으로 인해 구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려움 정도나 상황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질문2	직장을 구할 때까지 재정상 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려움 정도나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질문3	근무지나 근무시간에 대한 제약 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약을 받으시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4	일상생활 또는 직무수행에 방해가 될 만큼 건강상 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려움 정도나 상황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질문5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만큼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를 받거나 하는 등의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려움 정도나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 수급자 필요서비스 및 유형	
필요 서비스	○
	○
	○
	○
	○
2차 유형	

2 상담 방식 등 도구 활용 절차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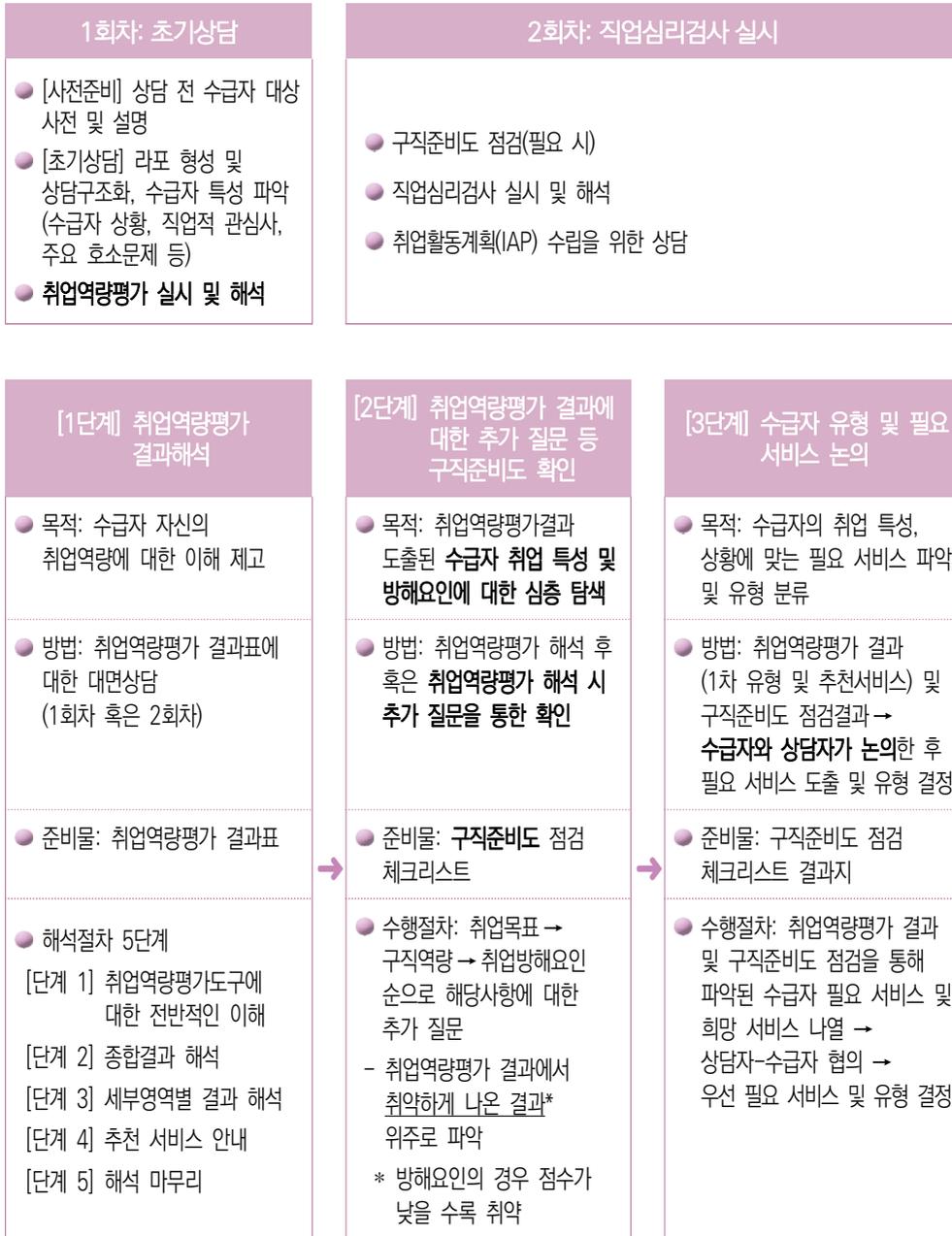
- (평가결과 해석절차 제공) 결과 해석을 통해 참여자가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함으로써 IAP 수립 시 상담사-참여자 간 협의할 기초자료 마련

Ⅰ 취업역량평가 결과해석 모형 Ⅰ

단계 1	취업역량평가도구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역량평가도구에 대한 상기 및 관심유도 · 취업역량평가도구에 대한 개요 설명 · 결과표 전체 구성에 대한 안내
단계 2	종합결과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역량평가 종합점수에 대한 설명 · 점수 수준에 대한 설명
단계 3	세부영역 결과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의욕, 구직역량에 대한 설명 및 사사분면 그래프 설명 ⇒ 서비스 유형 안내 · 구직의욕 및 방해요인 하위요인별 설명 및 점수 수준에 대한 설명
단계 4	추진 서비스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에 따른 추천 서비스 안내
단계 5	해석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에 대한 질문 받기 · 추후 진행 사항 안내

- **(협기능능 강화 및 결과활용도 제고)** 취업역량평가 결과와 함께 구직준비도 점검(체크리스트 활용) 등을 확인, **상담사-참여자 간 협의·조정**을 통해 IAP 수립 및 이행에 대한 필요성 상호 확인

Ⅰ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및 지원 과정(모델)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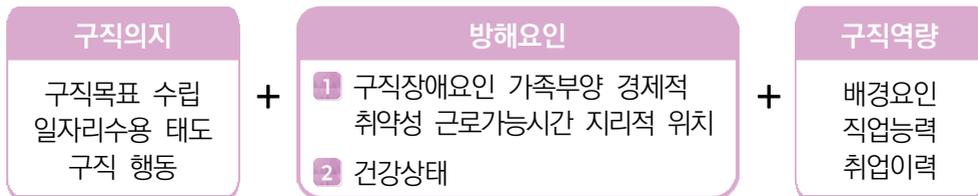


㉠ 취업역량평가 결과 해석 절차 및 내용

단계 1 취업역량평가도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취업역량평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이 성공적인 취업에 필요한 Ⅰ. 구직의지, Ⅱ. 구직장애요인, Ⅲ. 건강상태, Ⅳ. 구직역량의 측정을 통해 자신이 취업에 있어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기 위한 것임

Ⅰ 취업역량평가 구성 Ⅰ



- 참여자가 응답한 결과는 결과표에서와 같이 크게 ① 종합결과, ② 세부영역별 결과 그리고 ③ 추천 서비스로 구분하여 제시됨

단계 2 종합결과 해석

- 취업역량평가 종합결과 점수는 측정된 4개 영역의 점수를 가중치를 적용하고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며,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자원 그리고 약점이나 방해요인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정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에 점수에 따라 그 정도를 낮음(63.5점 미만), 보통(63.5~77점 미만), 높음(77점 이상)의 3가지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낮음으로 갈수록 취업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수급자의 점수는 결과표에 제시된 그림에서 화살표로 제시되며, 수준에 따른 상태에 대한 해석이 아래와 같이 제시됨

구분	수준	특성
취업 역량	높음	취업(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는 편입니다. 취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희망 직업분야를 위한 구체적인 역량 향상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취업(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역량 수준이 보통 정도입니다. 취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취업역량을 좀 더 향상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낮음	취업(준비)를 하는데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계 3 세부영역별 결과해석

- 세부영역별 결과는 취업역량평가결과를 하위요인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수급자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어떤 서비스가 더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크게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는 4분면 그림과 구직의지와 방해요인에 대한 요인별 점수를 제시하고 있는 프로파일로 구성됨
- **서비스 유형**은 4분면 그림에서와 같이 구직의욕과 구직역량의 백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제시되며, 각 요인별 높고 낮음을 구분하는 분할 점수(Cutting point)를 백분위 점수* 50점으로 정하여 유형을 분류하였음
 - * 백분위 점수: 표준집단의 전체 인원에서 **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점수**
- 서비스 유형은 4개로 구분되며, 유형별 다음과 같은 특성과 추가 확인이 필요함

유형	특성
빠른 취업 지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의지도 높고 구직역량도 높은 참여자 ■ 보통 취업목표가 명확히 수립되어 있고, 취업에 대한 의지와 필요 역량을 고루 갖추고 있어, 빠른 취업을 위한 구직기술 준비, 채용정보탐색, 적극 취업알선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한 유형 ■ 다만, 방해요인과 더불어 취업목표가 명확히 수립되어 있는지?, 희망하는 분야로의 취업을 위해 직무능력, 이력 등의 준비가 잘 되어있는지? 구직기술이 잘 습득되어 있는지? 등의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우선적 혹은 병행하여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의욕향상 지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역량은 높으나 구직의지는 낮은 참여자 ■ 보통 취업목표가 불분명하거나, 취업동기가 저하된 유형으로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이 우선되어 취업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일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도록 지원이 필요한 유형 ■ 다만, 방해요인에서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취업목표 수립에서 어려운 점(자기이해 부족, 직업정보 부족, 의사결정 기술 부족 등)이 무엇인지 등의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우선적 혹은 병행하여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능력향상 지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의지는 높으나 구직역량은 낮은 참여자 ■ 보통 노동시장 첫 진입 혹은 퇴직, 이전직 등 경력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희망하는 직업분야로의 취업을 위해 학력, 자격, 훈련, 일경험 등의 직무역량을 강화가 필요한 유형 ■ 다만, 방해요인과 더불어 희망하는 분야로의 취업을 위해 현재까지 준비한 혹은 갖춰진 직무역량을 점검하여 추가적으로 혹은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유형	특성
<p>종합 지원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의지와 구직역량이 모두 낮은 참여자 ■ 보통 취업목표가 불분명하거나 취업동기가 저하되어 있으며, 취업에 필요한 역량 또한 낮은 경우로, 특히 취업을 저해하는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생계, 건강, 가족간병, 양육 등)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복지 자원 연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유형 ■ 방해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연계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며, 취업목표설정, 취업의욕고취, 직무역량강화, 구직기술강화 등의 서비스가 병행하여 제공될 필요가 있음

- **구직의지와 방해요인에 대한 프로파일**은 취업역량평가를 위해 측정된 4개 영역 중 구직의지와 구직장애요인, 건강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백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제시됨
- 하위요인별 점수를 백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낮음(25점 이하), 보통(26-75점 이하), 높음(76점 이상)으로 구분하여 수준별 그래프를 제시해 줌으로써, 수급자가 취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취약한 점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도와 줌
- 특히, 구직장애요인은 프로파일 밑에 별도 표로 요약제시 해 줌으로써 수급자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제시하고 있음
- 각 하위요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아래와 같음

유형	조작적 정의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구 직 의 지</p>	<p>구직목표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원하는 취·창업 분야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원하는 분야에서의 취·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정도 ■ 점수가 높을수록 목표가 구체적으로 명확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p>일자리 수용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을 위해 임금, 규모 등 근무조건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맞출 수 있는가의 정도 ■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을 위해 자신의 눈높이를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p>구직행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6개월 내, 구직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한 정도 ■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을 위해 구직행동을 적극적으로 잘 수행해 왔다는 것을 의미

유형		조작적 정의
구 직 장 애 요 인	가족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자신이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는지와 필요한 도움에 적응하는 정도 ■ 점수가 낮을수록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취업(준비)을 위해 가족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안내 및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경제적 취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경제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에 적응하고 있는 정도 ■ 점수가 낮을수록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효과적인 취업준비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안내 및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근로가능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개인사정으로 인한 근로가능시간 제약에 적응하고 있는 정도 ■ 점수가 낮을수록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가능시간이 유연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으며, 효과적인 취업을 위해 어떠한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유연하지 않은 상태인지 확인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안내 및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지리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개인사정으로 인한 직장의 지리적 위치 제약에 적응하고 있는 정도 ■ 점수가 낮을수록 개인사정으로 인해 직장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 유연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으며, 효과적인 취업을 위해 어떠한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유연하지 않은 상태인지 확인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안내 및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건강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적응하고 있는 정도 ■ 점수가 낮을수록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현재 낮은 편임을 의미하며, 이를 높이기 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 건강은 신체적인 부분과 심리정서적인 부분으로 구분되어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과정 필요

단계 4 추천 서비스 안내

- 추천 서비스는 내담자의 취업역량평가결과 제시된 서비스 유형과 방해요인 중 점수가 높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아래와 같은 범주로 제시함

예시 종합지원형이면서 방해요인 중 구직장애요인(가족부양)과 건강상태가 낮은 상태인 경우
 추천서비스: 구직역량향상지원, 구직의욕향상지원, 복지지원, 심리정서지원 제시

추천서비스	세부 서비스	세부 활동	구분	
구직목표수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이해 지원 • 정보탐색 지원 • 의사결정스킬 향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심리검사 • 잡케어 탐색 • 집단상담(장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진로상담 - 집단상담(장단기) 	
구직의욕향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자신감 향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상담(장단기) 	
구직역량향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능력 향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학 • 직업훈련 • 자격증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 -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직업능력 향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기술 향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클리닉 • 집단상담(장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사지원서 및 면접 클리닉 • 취업지원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상담(장단기) 	
취업알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알선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자맞춤형 취업알선 • 채용지원서비스 • 채용정보 제공 • 동행면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 	
방해요인	심리정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적 정서변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안정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안정
	복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어려움, 돌봄 문제 등 지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지원
	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어려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지원
	건강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건강 상 어려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지원

* 다양한 복지 및 금융 등과 같은 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맞춤형 취업지원 및 취업상담 매뉴얼 참조

단계 5 해석 마무리

- 이 단계는 앞에서 설명한 취업역량평가 결과에 대한 해석 내용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취업역량 평가결과에 대해 느낀점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설명해 주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 또한 취업역량평가결과와 추후 면접 등을 통해 수급자의 서비스 유형 및 적합한 서비스에 대해 함께 논의해 가는 과정을 지속할 예정이라는 점과 이러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행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안내하는 것으로 마무리 함

2

직업심리검사 및 잡케어(취업활동계획 수립 전)

가

직업심리검사

- **(실시 목적)** 수급자격자의 직업선택 및 직업생활과 관련 있는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데 목적
- **(검사 종류)** 수급자격자 특성이나 주요 호소문제, 인지·정서적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직업심리검사'(총 25종, 한국고용정보원 중 1종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



고용노동부 직업심리검사 현황(총 25종, '24.12.월 기준)

구분	심리검사명	대상	검사 목적 및 내용	시간	비고
청소년	1 초등학생 진로인식검사	초5~초6	• 진로인식 수준 측정 및 진로설계 지원 • 희망 직업 및 학과분야 정보 제공	30분	모바일
	2 청소년 직업흥미검사	중1~고3	• 직업흥미 탐색 • 직업흥미에 적합한 학과/직업정보 제공	30분	모바일
	3 직업흥미탐색검사 (간편형)	중1~고3	• 직업흥미 탐색 • 직업흥미유형에 대한 정보 제공	5분	온라인 전용
	4 자기탐색형 직업흥미검사	중1~고3	• 직업흥미 탐색 • 직업흥미에 적합한 학과/직업정보 제공	20분	

구분	심리검사명	대상	검사 목적 및 내용	시간	비고	
청소년	5	중학생 진로적성검사	중1~중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적성능력 측정 • 학업적성능력에 적합한 학과계열, 직업 추천 	63분	
	6	고등학생 적성검사	고1~고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적성능력 측정 • 직업적성능력에 적합한 직업분야 추천 	65분	
	7	청소년 인성검사	중1~고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격 5요인 이론을 기초로 성격 특성 측정 • 성격 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 	25분	
	8	중학생 진로발달검사	중1~중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성숙도 및 진로의사결정 영향 요인을 측정하여 진로발달 수준 이해, 적합 진로설계 지원 	15분	
	9	고등학생 진로발달검사	고1~고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성숙도 및 진로의사결정 영향 요인을 측정하여 진로발달 수준 이해, 적합 진로설계 지원 	15분	
고용	10	직업가치관검사	15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가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적합직업 추천 	20분	온라인 전용
	11	진로준비진단검사	제한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준비상태 진단, 취업준비에 도움되는 고용24 서비스 추천(심리검사, 온라인 교육 등) 	2분	온라인 전용 모바일
	12	흥미로 알아보는 직업탐색	제한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흥미유형별 관련 직업정보 제공 	1분	온라인 전용 모바일
성인	13	성인용 직업적성검사	18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적성능력 측정 • 직업적성능력에 적합한 직업분야 추천 	80분	
	14	직업선호도검사(S형)	18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흥미 유형에 따른 적합 직업 추천 	25분	모바일
	15	직업선호도검사(L형)	18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흥미 유형에 따른 적합 직업 추천 • 성격 및 생활 경험 관련 특성 측정 	60분	
	16	준고령자 직업선호도검사	5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흥미 유형에 따른 적합 직업 추천 	20분	온라인 전용
	17	대학생 진로준비도검사	18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및 취업선택 지원 관련 진로발달수준 및 취업준비행동 수준 측정 	20분	모바일
	18	구직준비도검사	18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동기, 구직기술 등 구직활동 관련 특성 측정 • 구직활동에 유용한 정보 제공 	20분	모바일
	19	영업직무 기본역량검사	18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 직종 직무수행 관련 기초 역량을 진단하여 적합 수준 제시 	50분	
	20	IT직무 기본역량검사	18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직종 직무수행 관련 기초 역량을 진단하여 적합 수준 제시 	95분	
	21	창업적성검사	18세 이상 창업희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희망자의 창업 적합성 수준 진단 • 창업 적합 업종 추천 	20분	모바일
	22	중장년 직업역량검사	45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 근로자의 직업역량 평가를 통한 후기 경력개발 지원 	25분	온라인 전용
	23	준고령자 구직상담검사	5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태도 및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직업상담 지원 	30분	
	24	북한이탈주민 구직지원검사	탈북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흥미 유형에 따른 적합 직업 추천 • 구직·취업과정에서의 심리적 어려움 상담 지원 	40분	
25	이주민 취업준비도검사	국내거주 이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을 원하는 이주민의 취업준비도 진단을 통한 취업상담 지원 	60분	온라인 전용	

- 직업심리검사 종류는 대상자 특성에 따라 상담사가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 ① 가급적 초기상담 시 구직준비도검사를 통해 수급자의 구직의욕과 능력 수준을 진단한 후,
 - ② 2회차 상담 시 직업선호도검사(L형) 등을 통해 수급자격자가 직업적 흥미 및 성격, 생활사 등 특성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상담 실시
 - * 고용24를 통해 직업선호도검사 등을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초기상담 시 과제로 부여한 후 2회차 상담 시 결과 해석 등에 집중하는 방식도 가능
 - * 직업심리검사는 취업활동계획 단계에서 반드시 1종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급자격자의 구직욕구 및 취업역량 정도에 따라서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에도 추가 실시 가능
- 다만, 초기상담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면 신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 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결과 해석 및 심층상담 가능

Q&A

Q 1년 이내 직업심리검사 실시 이력이 있으나, 취업활동계획 수립 내용과 맞지 않거나 심리검사 해석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 상담사는 수급자격자의 구직욕구 및 취업역량 정도, 기존에 개별 실시한 직업심리검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수급자격자가 개별 실시한 직업심리검사가 취업활동계획 내용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수급자격자와 상호 협의하여 적합한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수급자격자가 개별 실시한 직업심리검사가 취업활동계획 내용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도 심리검사 실시없이 개별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를 활용한 상담이 가능하나,
 - 수급자격자는 개별 실시한 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 등 상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 ≫ (별도 결과 해석 상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철회 가능하며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됨

- **(실시 안내)**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검사의 내용과 실시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면서,
 - 검사 결과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직업 등의 잘못된 선택을 미리 방지해 주는 등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 수급자격자가 자발적으로 검사에 참여하여 솔직하게 응답하도록 유도
 - * 직업심리검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직업심리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 철회(법 제12조제4항) 및 취업지원 종료 처리(법 제29조제1항제6호)

- **(검사 실시)** 수검자의 심리상태에 따라 검사 결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검사를 하는 장소는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여야 함
 - 시간제한이 있는 검사의 경우에는 시간을 준수하고, 정확한 진단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검사 실시 환경 관리
 - * 일반 민원접수대나 필경대에서 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에 대한 안내 없이 수검자 혼자 검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수검 시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검사에 대한 태도가 지나치게 저항적이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무리하게 검사를 진행하기보다, 보류·중단하고 상담 실시

- **(결과 해석)** 결과표의 내용을 중심으로 상담을 실시하되,
 - 수급자와의 상담을 통해 얻은 다양한 정보와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개인적·상황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검사 결과 해석
 - 검사 결과 해석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보급하는 직업심리검사별실시요람 및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한 후 해석
 - * 직업심리검사 운용 및 해석상담에 경험이 없는 직원은 반드시 직업심리검사 상담업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협조를 받아 조치



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 시 유의사항

- ① 스스로 직업심리검사의 피검자가 되어보기
- ② 직업심리검사의 종류별로 전문 매뉴얼 또는 실시요람 등 숙지하기
- ③ 직업심리검사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급자격자를 검사 결과만으로 단정하지 말기
- ④ 상담의 목적을 고려하여 직업심리검사 결과를 통합적으로 전달하기
- ⑤ 수급자격자의 인지적 능력을 확인하기
- ⑥ 수급자격자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검사결과 및 한계를 이해시키기
- ⑦ 결과 해석 후에는 직업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하기



실시요람 다운로드 방법

- 고용노동부 직업심리검사 실시요람은 사이버진로교육센터(work.go.kr/cyberedu)에 접속하여 “학습자료 > 직업심리검사 자료”에서 해당자료를 다운로드받아 활용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교육센터

교육안내
학습자료
공지사항
센터소개
마이페이지

로그인
자주하는질문
 사이트맵

직업심리검사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심리검사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 가치관 등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진로 및 직업군 탐색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모든 검사는 무료로 제공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실시 : 워크넷 > 직업·진로 > 직업심리검사
- 오프라인 실시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센터(Tel. 1350(유료))에서 검사실시 및 진로상담

> 학습자료 > 직업심리검사 자료

전체
청소년
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상담자

총 8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10개씩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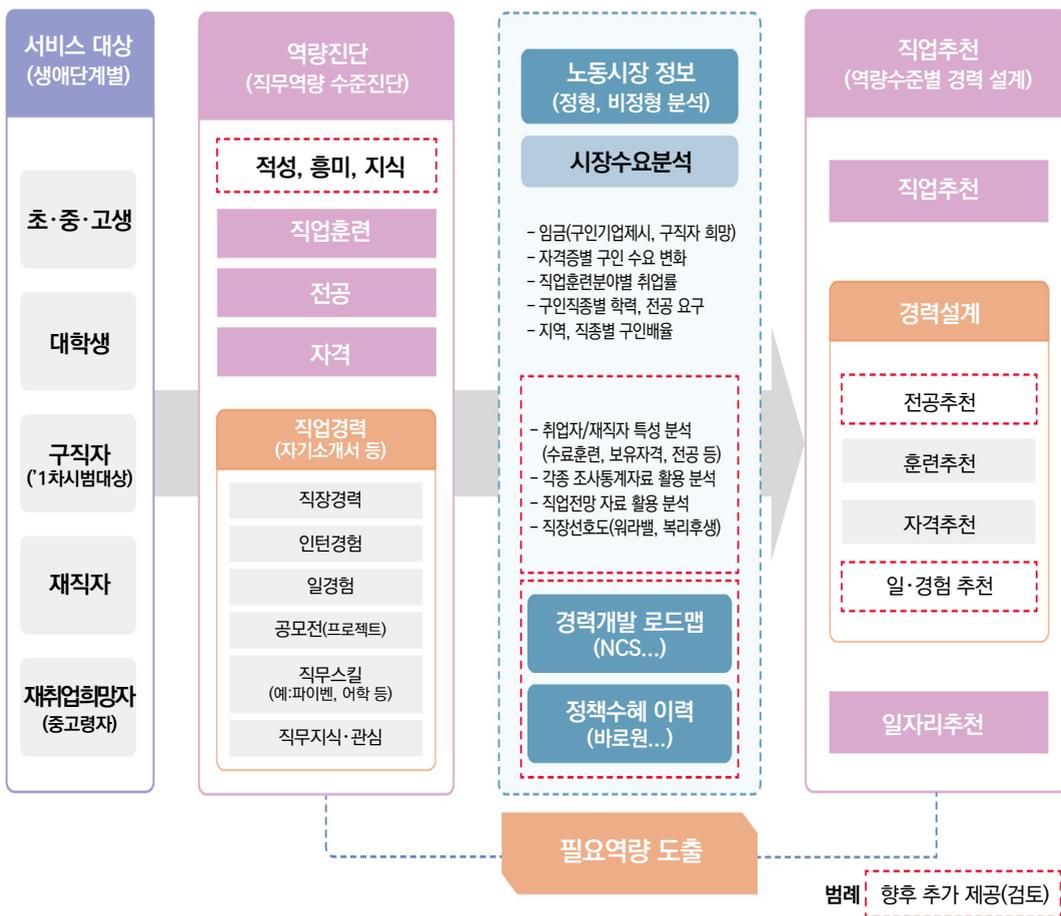
번호	제목 / 개발연도 / 대상	등록일	조회	자료
8	직업가치관검사 실시요람 상담자	2023-11-03	941	

143

나 잡케어

- **(개념)** 전 생애에 걸친 경력단계에서 개인들의 직업선택 및 취업준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AI, 데이터 분석 기반의 맞춤형 진로 직업상담 지원 서비스
 - 직업·직종별 필요 역량진단 정보와 노동시장 정보를 분석하여 개인의 역량 수준별 경력 로드맵 제시, 훈련, 자격, 일자리 정보 등 추천
 - 진로·취업의 상담이나 진로 설계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직업·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하여 내담자, 사용자 등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지원

▣ 잡케어서비스 데이터 분석·운영 체계 ▣



- **(활용 데이터)** 고용 관련 고객정보(직무역량 연관분석, 심리검사결과, 경력개발 경로 등)와 시장정보를 온톨로지, AI 기술 등으로 분석·비교하여 내담자 특성에 맞는 훈련과정, 자격증, 채용정보 등 제공
 - **(고객정보)** 구직자가 작성한 이력서를 분석하여 연관 직종을 추론·추천하고 해당직종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구직자가 보유한 역량 간 차이와 경력개발 관점에서 필요한 직무역량을 제공
 - **(시장정보)** 직종, 지역별 구인구직 일자리 상황, 임금, 전공, 훈련, 자격 등 직업선택 및 취업에 필요한 노동시장 데이터를 시계열로 제공
 - **(추천정보)** 구직자의 직무역량에 적합한 일자리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 자격증, 일자리 등을 추천
- **(효과성)** 잡케어 서비스를 통해 직업·직무역량, 노동시장 정보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업선택이나 진로 설계 등 취업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직업상담사가 진로미결정자 및 취업희망자에게 심층 직업상담을 제공하여 고용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
- **(안내)** 사용자 시스템은 '바로원 → 개인 → 직업상담지원 클릭'으로 접속하며, 자세한 내용은 '직업상담지원서비스 사용자 매뉴얼' 참조(시스템 자료실 탑재)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예시

① 취업활동계획서(안) - 앞면

● 취업활동계획서

서비스기관	○○고용센터	담당자명	○○○
		전화번호	044-000-1234

1. 수급자격자 정보 >>> 취업지원 전산망에 입력된 자료 자동생성

성명	홍○○	생년월일	1998.12.31.
수급자격 인정일자	2026.3.15.	전화번호	044-123-0000(또는 없음)
IAP 수립일자	2026.4.1.	휴대전화	010-000-1234

취업지원 서비스기간	2026.3.23. ~ 2027.3.22. (12개월)	집중취업 알선기간 (취업노력기간)	2026.12.23. ~ 2027.3.22. (3개월)
------------	-----------------------------------	--------------------------	-----------------------------------

2. 취업 창업 희망조건 >>> 구직등록에서 연동된 취업지원 전산망에 입력된 자료 자동생성

희망근무지①	세종시	희망근무지②	공주시	희망근무지③	
희망직종①	자동차 정비원	희망직종②	자동차 튜닝원	희망직종③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희망임금	3000만원(연봉) 면접 후 결정 가능	근무가능시간	08:00 ~ 19:00

3.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계획 >>> 취업지원 전산망에 입력된 자료 자동생성

구분	프로그램명	참여(예정)기간	운영기관명	전화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집단상담	성취프로그램	2026.4.15. ~ 2026.4.18.	○○고용센터	044-000-0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업훈련	자동차정비기능사	2026.5.10. ~ 2026.6.30.	○○직업전문학교	044-000-0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격증 시험응시	자동차정비기능사	2026.7.15.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취업특강	시선을 사로잡는 서류전형 준비	2026.7.2. ~ 2026.8.1.	사이버 진로교육센터	1577-7114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2026.8.10. ~ 2026.9.30	○○협회	044-000-0000

4.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활동 계획 >>> 취업지원 전산망에 입력된 자료 자동생성

구분	활동(지원)기간	활동(지원)횟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입사지원에 필요한 컨설팅 참여	2026.7.1. ~ 2026.7.1.	월 1회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입사지원서(취업알선상담 포함) 제출	2026.10.2. ~ 2027.3.22.	월 2회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입사지원에 필요한 컨설팅 참여	2027.1.2. ~ 2027.2.1.	월 1회 이상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계획 수립 (예시)

◆ 취업활동계획 기본 원칙

- (통합적) 취업역량평가 및 상담을 통해 취업욕구 및 능력을 분석하여 제공되어야 할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상호 보완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제공
- (시계열적) 수급자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가능한 적합한 순서대로 제공
- (구체적)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준이 되므로, 매 지급주기마다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이행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함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계획 수립 예시 ┃

- (수급자 정보) 특성화고 졸업 청년(군필), 운전면허증 보유 외 다른 자격증 없음, 자동차 정비 분야 취업희망(IAP 수립 4월)
- (특징) 고등학교 졸업 이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나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고자 전문 자격증 취득을 희망, 직업적 가치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적고 정보 부족
- (진단) 자동차 정비분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기능사 자격증이 필요하여 직업 훈련 필수, 다만 집단 상담프로그램(성취 프로그램) 참여 및 상담을 통해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나 직종이 합리적 의사 결정이었는지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이행) 직업훈련 참여 전에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를 계획하고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직업정보 및 훈련 정보탐색 하도록 상담 진행(4월)
 - 이후, 2개월 과정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반'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자격증 취득을 지원(5~7월), 직업훈련 참여 후 취업활동계획 재진단 실시(필수 대면 상담, 7월)
 - 취업특강을 통해 입사지원에 필요한 구직능력 향상 지원(7월)하고, 일경험을 연계하여 취업능력 향상(8~9월)
 - 이후 취업알선 및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여 적극적 구직활동 실시(컨설팅 서비스 제공 포함)



- (구직활동 인정) 2~8회차 기간동안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 2회차: 집단상담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 4일) 참여로 구직활동 2회 인정
 - 3회차: 직업훈련(훈련예정일수 10일 이상)에 참여하여 지급주기 80% 이상 출석으로 구직활동 2회 인정
 - 4회차: 직업훈련(훈련예정일수 10일 이상) 참여 및 필수 대면상담 참여(컨설팅 참여)로 구직활동 3회 인정

- 5회차: 취업특강 1회 및 자격증 시험 응시로 구직활동 2회 인정
- 6/7회차: 일경험 프로그램(참여예정일수 10일 이상)에 참여하여 80% 출석으로 구직활동 2회 인정
- 8회차: 입사지원서 제출 2회로 구직활동 2회 인정
- 이후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취업알선 및 입사지원에 필요한 컨설팅(자기소개서 클리닉 등) 제공

4

취업지원 프로그램(맞춤형 취업지원 및 취업지원 상담 매뉴얼 참고)

가 개요

- (의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수급자가 취업의욕과 직업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 취업취약계층은 복합적인 취업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고용과 복지 등 각종 지원을 연계하여 수급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

Q&A

Q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정의하는 ‘취업지원’은 무엇이고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 취업지원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①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②구직촉진수당 지급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법령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정한 지원을 총칭하는 의미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취업지원서비스는 ①취업지원 프로그램(법 제13조)과 ②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법 제14조)으로 구분되며,

-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포함

-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고용복지+센터)와 자치단체 및 민간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고용·복지·금융·창업 등 지원 프로그램을 포괄
 - ①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②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③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 등이 있음
 -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복지로),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중앙-지자체 복지서비스, 복지로), 전국 민간단체 복지지원 등

- **(중복 참여)** 국민취업지원제도(I·II유형 모두)는 수급자의 취업의욕 고취, 직업능력개발, 취업장애요인 해소 등의 목적에 부합하면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중복참여를 인정하고 있음
 - * 다만 국가·자치단체가 구직활동을 목적으로 월 평균 50만원 또는 총 300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취업지원 종료사유에 해당하므로 제외

- 상담사는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복참여와 관련하여 참여 기준, 절차, 취업활동계획 반영, 미이행시 제재사항을 사전에 자세히 안내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규정에 따라서 다른 기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함

나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심리상담 및 취업진로상담

1. 취업의욕 고취·취업기술 향상 프로그램(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개요)** 수급자의 취업의욕 고취, 취업기술 및 취업자신감 향상 등을 위해 집단상담 프로그램 또는 단기집단상담, 취업특강 실시
 - 수급자가 다른 구직자와의 집단 활동과 교류를 통해 심리적 취약성과 구직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구직의욕과 취업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급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조치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되 센터 내 팀 간 협조를 통해 최대한 많은 수급자들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위탁기관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보급하는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 (CAP@)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급자의 구직의욕과 취업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취업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운영
 - * 위탁기관 소속직원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 진행자 양성과정」을 수료한 경우 자체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 가능
- **(원칙)**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취업의지·능력이 낮은 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전(필요시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1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 수급자가 2회 이상 참여를 희망할 경우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참여를 허용하되 동일 프로그램 참여는 지양
- 다만,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이 곤란할 경우 단기집단상담, 취업특강, 취업설명회, 과제부여 등 취업의욕 및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타 프로그램 활용 가능
-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거나 수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취업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반드시 설명(가급적 참여 기간 중 1회 이상 연락)

①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현황

● 고용센터 운영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주요내용	일수	시간	
집단상담	성취프로그램	성인 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기술 향상을 통해 자신감 회복 지원 • 취업정보수집, 지원서류 작성, 모의면접 등 	4	24	
	청년취업GYM(집)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모듈 프로그램	취업희망 청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특성별 모듈(총 16개) 조합·운영 • 취업동기 부여, 정보탐색, 취업클리닉, 적응력 향상 등 종합 지원 	2~4	12~24	
	소그룹	청년취업ON (3종)	취업희망 청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직무군별(경영사무/영업마케팅/IT) 주요 역량 이해와 관련된 개인 경험 연계 중심 구직기술 강화 지원 	2·4	12
		내일또다시 (2종)	성인 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설치·정비·생산직, 사회복지·돌봄직 분야 재취업지원을 위한 정보탐색역량 강화 지원 	3	12
		마음톡톡심플	취업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단념청년, 니트 및 성인 구직자 등 자기이해를 통한 구직의욕 향상 지원 	3	12
		조선업	조선업 취업희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전환 고민 중장년층 등의 인식개선과 산업·직무 이해를 통해 직업 선택 폭 확대 	2·3	12
		반도체	반도체 취업희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층의 반도체산업 분야 진출을 돕고, 취업 후 고용유지 지원 	2·3	12
	신호탄 신중년 재취업설계	50~6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자, 이전직 준비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노동시장 이해와 경력 전환기의 재취업 활동 지원 	3	18	
	취업희망프로그램	심리적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의 자존감 회복과 구직의욕 향상 지원 • 일·직업가치·나익강점·채용트렌드 이해, 대인관계향상 지원, 희망실현 계획서 작성 등 	4	24	
	4U(포유) 40대 구직자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40대 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대 구직자들의 진로전환과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심리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의지를 높이며 구직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3	18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주요내용	일수	시간
집단상담	CAP@(캐파) 청년층직업지도 프로그램	취업희망 청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리적 직업선택부터 구직활동까지 종합 지원 자기탐색, 기업탐색, 서류작성, 모의면접 등 	4	24
	Hi+(하이플러스) 고졸청년층 취업지원프로그램	고교 1~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드, 보드게임, 온라인시스템 등을 활용, 경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참여형 활동 강화 경력·직장·취업역량·구직준비 이해, 채용서류·면접 준비실전, 경력개발계획수립 등 	2~5	12~20
	단기집단상담(7종)	성인 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직스트레스 다루기, 청년(마음의 힘기르기, 나를 이해하기, 비즈니스 매너), 신중년(잘 살아온 내 인생 앞으로는?, 나를 이해하기, 직장 내 행복한 대화 이끌기) 등 	1	각 3
	취업특강(8종)	성인 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요령, 직업심리검사와 직업선택, 근로기준법, 취업정보 수집 등 	1	각 2
	행복오름(7종)	기초생활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이해, 강점 발견, 구직기술습득, 직장적응 이해 등을 통한 취업능력 향상지원 	1	각 1.5

● 새일센터 운영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주요내용	일수	시간
집단상담 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①새일스타트 ②새일플러스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분야 설정 선정된 분야에 재진입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천방안 모색 	3~5	12~20
	WiCi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여성결혼 이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결혼 이민자 취업의욕 제고 구직기술 향상 한국 직장생활이해 	4	12

2. 전문심리상담서비스와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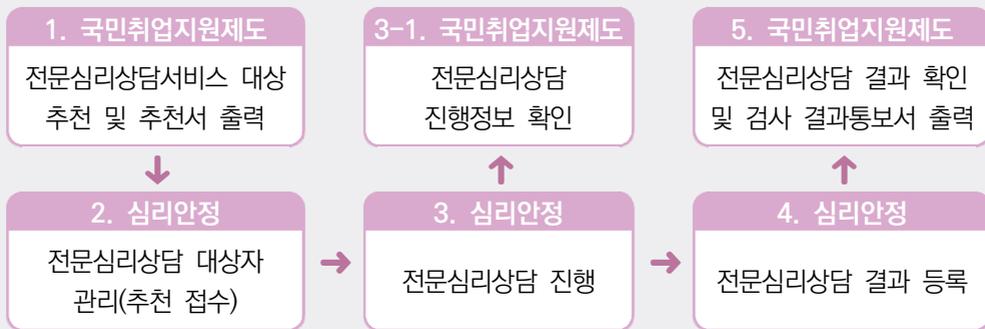
- **(시기 및 대상)** 수급자 가운데 실직 스트레스, 불안·우울 등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의 심리안정지원 사업 연계
 -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공
 - 전문심리상담은 수급자 중 아래의 사람을 우선 대상자로 고려
 - ① 취업할 용기를 낸 은둔청년, 쉬었음청년 등이 포기하지 않도록 마음회복 지원이 필요한 경우
 - ② 최근 2년 이내에 갑작스러운 생활여건 상의 변화로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경우
 - ③ 장기 실직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에 대한 의지가 상당 수준 약화되어 있는 경우
 - ④ 대인관계에 상당한 불안 증세 등을 보여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방법)** 수급자의 동의 후 심리상담 추천서(서식 32)를 통해 심리안정지원 사업 연계
 - * ‘심리안정지원 사업’ 위탁 시 수급자에 대한 심리상담 진행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조치. 아울러, 수급자에게 제도 진행에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음을 안내(개인당 최대 6회차까지 서비스)
 - 전문심리상담을 받고 있음을 이유로 상담 등 다른 취업지원서비스를 기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지양



전문심리상담 전산 의뢰·실시 개관

- ① **(심리상담 추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사는 취업활동계획 수립단계에서 수급자격자가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심리상담가에게 전산으로 대상자 추천
- ② **(심리상담 실시)** 심리상담사는 상담을 실시하고 매 회기별로 상담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 ③ **(결과 통보)** 전문심리상담가는 상담결과를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사에게 전산으로 통보
 - 심리상담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수립될 때까지 완료되지 않더라도 그 때까지의 상담결과를 전담 상담사에게 공유
- ④ **(상담결과 활용)** 전문심리상담 결과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등에 활용

Ⅰ 국민취업지원제도-심리안정지원사업 연계 흐름도 Ⅰ



- **(고려사항)** 전문심리상담의 의의 등을 수급자에게 자세히 안내하고, 수급자 및 전문심리상담사와의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전문심리상담을 통한 수급자의 심경 변화 등 파악
 - 특히, 여타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간 중 심리상담 서비스를 센터에서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심리상담사와 당일 상담내용 및 분위기 외 수급자의 상담기간 중 변화사항 등에 대한 내용 파악
- **(타 정신건강 프로그램 활용)** 기타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 예방센터,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심리상담이 가능한 기관 활용 가능

다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1. 개요

-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를 습득하고,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 참여 프로그램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수급자의 실업기간을 장기화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수급자 취업역량 및 취업희망 직종, 참여환경(여건) 등을 고려

2. 운영원칙

- 아래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중단, 관련 직업훈련기관 등에 수급자 연계 제한 등의 조치 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액 면제(자비부담율 축소) 또는 훈련참여지원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취업지원을 신청한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일부터 특정 훈련기관의 특정 훈련과정만을 수강할 목적으로 취업지원을 신청한 경우
 - 직업훈련기관 등이 훈련생을 모집한 후 훈련과정 개강일이 되기 전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당을 받고 오도록 안내한 후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 훈련생을 연계시키는 경우
 - 직업훈련기관 등이 자체모집한 훈련생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홍보하여 수급자의 취업활동계획과 무관하게 해당 훈련기관에 수급자를 당연히 보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의를 제기(민원성 항의)하는 경우
- 월 1회 이상 대면 또는 유선상담을 실시하여 수급자의 적정 훈련 수강여부 확인
-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연계에 필요한 상담은 「직업훈련과정 탐색표」(서식 33) 및 「직업훈련과정 탐색 과제표」(서식 34)를 활용, 수급자에게 적합한 훈련 과정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

3.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의 종류

- 수급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수급자의 취·창업 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훈련 과정을 의미*

* 국민내일배움카드, 인턴, 중앙부처·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등, 고용노동부인증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계좌적합훈련과정 이외의 (비인정) 훈련과정, 기타 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훈련(자비부담 일반학원 수강 포함)



연계 불가 훈련과정

-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 (유의) 기타 유관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그 명칭이 직업훈련이나 직업교육 이더라도 교양 목적이거나 특강인 경우에는 직업훈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칭이 아닌 실제 교육과정 내용이 직업훈련의 형식과 내용에 부합되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여 적용
-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기능과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 훈련 수료 후 창업이나 취업 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 그밖에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 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
- 그밖에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과정

- 직업훈련 등 참여 중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요건 법 제6조, 구직촉진수당 수급 제한 요건 법 제7조제3항, 종료사유 법 제29조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참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지원 신청 및 수급 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 따라서, 직업훈련 등을 먼저 수강 중인 자도 취업지원 신청을 통해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허용하되,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취·창업 희망 직종과 관련이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취업활동계획에 없었던 직업훈련을 새롭게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취업활동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4.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과의 연계

- **(훈련 상담)**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가 훈련상담을 병행하며, 희망직종에 취업하기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업훈련으로 연계
 - 수급자 담당자(민간위탁 수급자는 고용센터 위탁기관 담당자)는 HRD-Net을 통해 훈련과정, 개설일자, 모집현황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훈련대상자가 취·창업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포함)
 - * 수급(자격)자는 상담사를 통해서만 수강신청 가능
 - 민간위탁 수급자가 훈련을 희망할 경우 위탁기관으로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참여 추천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참여 적정 여부를 판단한 후 내일배움카드 발급(서식 77,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대상자 추천서 참조)
 -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수급자 등 일부 제외),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면세사업자 등 일부 제외)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제외하고 있음

Q&A

Q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직업훈련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대상이 있나요?

A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더라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은 카드 발급 불가

-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운영위원회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일반수급자,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제출 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카드발급 불가
- (자영업자)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면세사업자인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 휴업신고자, 신용회복지원 확정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카드발급 불가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업무매뉴얼 기준을 따르므로 고시 및 지침을 숙지하여 업무 처리(필요시 고용 센터 직업능력개발과(팀)과 협의)

● (훈련 종류)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직업훈련 예시

- ① 국민내일배움카드(K-디지털 트레이닝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등 포함)
- ② 한국폴리텍대학 1년 이하 비학위과정 직업훈련
- ③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
- ④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
- ⑤ 양성훈련(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 단, 훈련수료에 따라서 당연 채용을 하는 것으로 채용을 확정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시하는 훈련은 제외)
- ⑥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공단이 직접 실시하는 직업훈련
- ⑦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 ⑧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계좌적합훈련과정 이외의 (미인정) 훈련과정
- ⑨ 기타(창업교육, K-Move 스쿨 국내 훈련과정 등)

- **(훈련과정수 제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수강 가능한 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및 자비 수강 훈련,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훈련 등 온라인·오프라인을 포함하여 모든 **직업훈련은 최대 4회(단, 집체훈련은 최대 3회)**로 제한
 - 다만 **Ⅱ유형 참여자**는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직업훈련은 최대 6회(단, 집체훈련만은 5회)**로 제한
 - * K-디지털 크레딧 훈련은 1회에 한하여 직업훈련 참여횟수에 포함하지 않고, 모듈식 훈련과정의 경우 단계별로 훈련과정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1개 과정으로 인정 가능

1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 참여 희망자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등의 업무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및 업무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하여 처리하되, 고시·지침 등 개정·변경가능성을 고려하여 수급(자격)자의 계좌발급 신청일 현재 유효한 규정 및 지침 등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수급자에게 온라인(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하여 계좌 발급을 신청하도록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수급자 담당자는 계좌발급 적정성을 확인한 후 계좌발급 조치
 - * 신속한 훈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계좌발급과 훈련진단·상담은 동시에 진행 가능



구비서류 안내

- 1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 2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한함)
- 3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
-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에는 카드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좌를 발급받는 사람이 서명 전에 확인하도록 안내

- **(계좌한도)** 1인당 5년간 300만원 한도의 훈련비를 지원하며, ①계좌잔액이 0원인 경우 및 ②다음 훈련과정 수강 신청시 지원 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계좌의 지원한도)에 따라 일부 대상자에게 2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 I 유형 요건심사형 및 비경활 선발형, 청년 선발형(중위소득 60% 이하자)

- **(자비부담)**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4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전체 및 II유형 특정계층 참여자는 직종별 취업률 40% 이상인 과정 참여 시 자비부담 면제, 직종별 취업률 40% 미만인 과정은 훈련비의 20% 자비부담

Ⅱ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4. 직종평균 취업률 및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 Ⅱ

구분		직종평균(3년) 취업률에 따른 지원율					돌봄 서비스 훈련과정	외국어 법정 직무 과정	K-디지털 크레딧
		70% 이상	60% 이상 70% 미만	50% 이상 60% 미만	40% 이상 50% 미만	40% 미만			
대상	근로장려금 수급자	92.5%	87.5%	82.5%	77.5%	72.5%	10%	50%	90%
	일반훈련생			65%	55%	45%			
	국민취업 지원제도 II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	85%	75%	70%	60%	50%			
	국민취업 지원제도 I유형 및 II유형 중 특정 계층	100%			80%	90%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에도 불구하고 훈련공급 상위직종에 대해 10%p의 범위내에서 훈련비 감액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 시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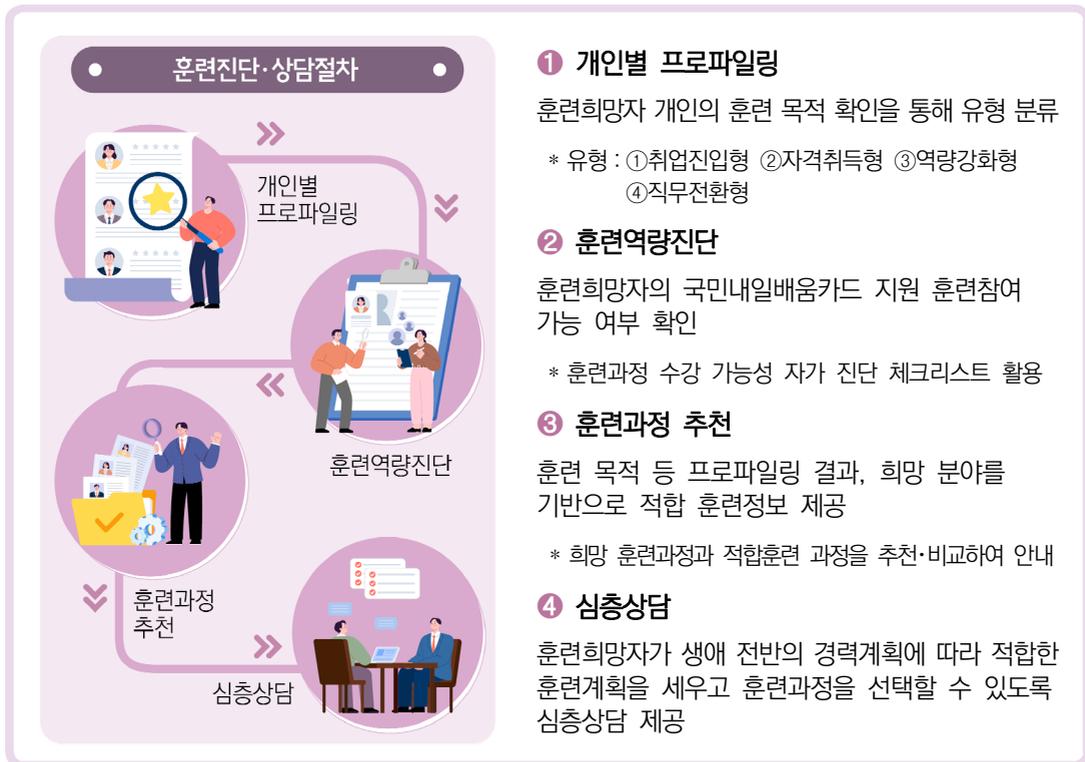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디지털트레이닝 과정(AI 엔지니어 과정 제외),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일부 특화훈련의 경우 기존 자비 부담이 없었으나, '26년 이후 개시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II유형 청년 및 중장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최대 60만원)를 부담할 수 있음

- **(적용 시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인정 결정을 받은 날부터 등록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자비부담 면제 또는 경감이 적용됨

- 다만,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취소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자가 아닌 것으로 자비부담률이 우대 적용되지 않고 자비부담금 납부 책임을 지게 됨(초기상담이 진행된 이후 중단된 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자에 해당하므로 자비부담률이 동일하게 우대 적용됨)

- **(훈련과정 수강신청)** 상담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자가 취업역량평가, 직업심리검사, 직업훈련 진단·상담* 결과를 토대로 취·창업에 필요한 훈련분야 및 희망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와 협의하여 훈련계획 수립**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는 훈련시간 140시간 미만·이상을 구분하지 않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훈련 진단·상담을 실시한 후 수강 신청할 수 있음(집체·온라인 등 모든 훈련 필수)



- **(수강신청 방법)** 상담사가 수급자와 협의하여 수립한 훈련계획서를 직업훈련 전산망에 등록 및 희망 훈련과정 수강신청(140시간 미만 훈련도 수급자가 임의 수강 신청 및 등록 불가하여 상담사가 사전 상담 후 승인 등 조치 필요)
 -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직접 훈련과정 수강 신청하는 것은 불가, 상담사와 훈련상담(훈련필요성 및 적합 훈련과정 탐색 등 상담진행)을 성실하게 실시하고 훈련과정을 선택 하도록 사전 안내 및 관리
- **(훈련수급자 관리)** HRD-Net을 통해 수급자의 훈련실시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월 1회 이상 유선으로 훈련과정 만족도와 훈련 내용 이해 등 과정 이수에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센터에 방문하도록 요청하여 과정 변경 등에 대한 상담 실시
- **(동일 과정 재수강)** 수료한 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음
 - ↳ 수급(자격)자가 수강을 희망하는 훈련과정이 과거 훈련이력 등과 동일 과정으로 의심되는 필터링 결과가 도출된 경우, 기수강 과정과의 유사(동일) 훈련 여부를 확인하여 동일과정인 경우 재수강 제한(국민내일배움카드 동일 훈련과정 중복수강 방지를 위한 수강신청 처리 업무지침(24.12.30.) 참고)
 - * 다만, 임신·출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가능
- **(훈련 중 타 훈련 참여)** 국민내일배움카드 2개 이상 훈련과정 수강 시 훈련 시간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시 수강 가능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 타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훈련은 동시 수강 불가
 - * 1일 훈련 최대 가능 시간은 훈련의 효과성 및 수급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8시간을 초과한 훈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훈련 과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만족도 조사)** 훈련과정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
 - * 미입력 시 마지막 단위기간 훈련장려금(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한함) 부지급

- **(유의 사항)** 훈련 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필요시 직업훈련 담당자와 협의·조치

참고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별 훈련장려금 등(월 최대 지원액)

(단위: 원)

훈련과정		훈련 장려금	특별훈련수당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소멸지역
국가기간전락 산업직종훈련	부리직종	20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그외		-	-	-
K-Digital Training훈련	시특화과정	20만원	20만원	40만원	60만원
	선도기업		10만원	20만원	30만원
	기타 일반과정		-	-	-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단기)AI 전환 대응과정	-	-	-	-
	(일반)AI 전환 대응과정	20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단기)육성산업·직종과정	-	-	-	-
	(일반)육성산업·직종과정	20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단기)지원대상산업·직종 과정	-	-	-	-
	(일반)지원대상산업·직종 과정	20만원	-	-	-
일반고 특화훈련		20만원	-	-	-
일반직종 훈련		11.6만원	-	-	-
돌봄서비스 훈련		11.6만원	-	-	-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 시 변동 가능

2 폴리텍대학훈련

- **(개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진학예정자),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이주배경 구직자 등 실업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하이테크과정, 중장년특화과정, 전문기술과정, 여성재취업과정, 이주배경구직자훈련 등

- **(훈련대상자 선정 및 모집)** 한국폴리텍대학은 국가기간·전략산업부터 첨단·신산업 분야까지 다양한 비학위 양성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훈련기간이 중장기(3개월 ~ 1년)인 만큼 취업 희망 직종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정
- **(한국폴리텍대학 훈련과정)** 대부분 정기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센터-폴리텍대학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폴리텍 대표 홈페이지(kopo.ac.kr) 입학안내를 참조하여 과정 안내

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

- **(개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인력수요를 파악,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해 현장 기술인력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 **(훈련실시 주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계획 공고를 통해 선정한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 **(훈련대상)** 15세 이상 미취업자로서 컨소시엄 협약기업 채용 예정인 자
 - **(훈련방법·훈련과정정보)** 집체훈련으로 실시, 개별 훈련과정 정보는 해당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홈페이지 또는 운영기관에서 검색
- * 월평균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는 채용예정자 훈련의 경우 훈련수당 지급(월 20만원 한도)

■ 채용예정자 훈련 참여 방법 ■



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

1. 개요 및 운영원칙

- **(개요)** 수급자가 일경험을 습득하고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 **(연계사업)**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타 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단체) 등의 다양한 일경험 및 인턴제 등 단기 일자리 사업이라도 수급자의 일경험 및 직무습득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사업을 일경험 프로그램으로 연계
 - 공공기관 인턴사업, 대학생 현장실습, 민간기업의 인턴제 등 단기 근로 등으로 3개월 내외로 운영하는 일자리.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외 일자리도 인정 가능
 - * 주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 및 직접일자리사업 선발은 당연 종료 사유에 해당(법 제29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시행규칙 제20조제1항)되나, 3개월 내외의 인턴제 등 단기 일자리에 취업 이유로 종료처리하고 이후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 참여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경험 참여 요건 및 방법을 폭넓게 인정하여 연계 가능
 - 사회적기업 취업 시 주 소정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서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수급자의 희망에 따라 일경험으로 인정 가능
 - * 사회적기업 해당 여부는 사회적기업포털(www.seis.or.kr)에서 확인
 - 다만, 일경험이나 직무체험 목적 등에 맞지 않는 직접일자리 사업(예,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 등)이 연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연계시기)** 일경험 및 직무 체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급(자격)자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에 종료될 수 있는 일경험 프로그램(일경험 목적 일자리 포함)이면 상시 연계 및 참여 가능
 - *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최대 연장 기간 포함, 다만 집중 취업알선기간(취업노력기간) 3개월 확보 필요

- **(참여 횟수 제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최대 기간 중 **2회**로 제한
 - * 중도 탈락, 미수로 등도 1회로 인정하며, 고용노동부 미래내일 일경험 중 '기업탐방' 유형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운영 방법)** 상담사는 수급자와 사전 상담 및 협의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일자리가 일경험 목적에 부합되고 수급자에게 필요한 내용인지 확인 필요
 -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취업활동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구직활동(I 유형) 등으로 관리
 - 취업지원 신청 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전부터 참여 중인 일자리도 일경험으로 연계 가능하므로 반드시 취업활동계획에 반영할 필요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직접일자리 사업을 일경험으로 연계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상담사와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반영하고 이후 시작되는 경우만 일경험으로 연계하여 운영
 -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는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사유에 해당되나, 고시 제8조제2항제1호에 의거 법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로 보지 않음
- **(일경험 종료 시)** 일경험 프로그램으로 연계한 일자리 근무가 종료되고 정규직 전환이나 재취업에 실패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가능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취업으로 종료하고 정규직 전환 시작일부부터 취업성공수당 근속 기간 계산

2. 고용노동부 일경험과의 연계

1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 **(사업목적)** 채용시장 경향이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심 직무에 대한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 **(사업내용)** 미취업 청년(15~34세)을 대상으로 ‘인턴형 일경험’, ‘프로젝트형 일경험’, ‘ESG지원형 일경험’ 총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



고용노동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주요 내용

유형명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사업내용	기업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 기업은 과업 수행지도를 위한 멘토 등 지정·운영	기업에서 제안한 팀프로젝트 수행 기업 또는 운영기관 지정 전문가가 수행 과정 코칭	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등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지원기간	1~5개월 내외	2개월 내외	6개월 이내
지원내용	(청년) 1인당 교육수당, 참여수당, 체류지원비 (기업)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멘토수당	(청년) 프로젝트 실행비 팀 지원금, 개인별 참여수당 (기업)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멘토수당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비, 참여자 수당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실비 및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청년일경험 포털(프로그램 검색 및 참여신청)



청년일경험 포털
회원가입 | 로그인

사업소개
일경험 프로그램
우수사례 커뮤니티
알림마당
고객센터

알고 싶은 직무, 만나고 싶은 기업, 직접 경험해 보!

[청년기업]
사업 안내 및 참여 방법 문의

[청년]
일경험 중 부당대우, 해로사항 등 기타 일경험 관련 문의

상담센터
☎ 1811-8447

☎ 1811-8447

일경험 프로그램

등록일순
마감일순

전체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기업탐방형
≡ 직무 전체
📍 지역 전체

인턴형 마감 D-day

[에스제이정보통신] IT 일경험 프로그램(12-8)

📅 모집기간 : 25.11.26~25.11.26
 👤 모집인원 : 2명
 ≡ IT
 📍 대전

자세히보기 →

인턴형 마감 D-day

[케이엘정보통신] IT 일경험 프로그램 (12-8)

📅 모집기간 : 25.11.26~25.11.26
 👤 모집인원 : 1명
 ≡ IT
 📍 대전

자세히보기 →

인턴형 마감 D-day

[한국플랫폼서비스기술] IT 일경험 프로그램(12-8)

📅 모집기간 : 25.11.26~25.11.26
 👤 모집인원 : 1명
 ≡ IT
 📍 대전

자세히보기 →

인턴형 마감 D-day

[안경메니저] 경영사무 일경험 프로그램(12-6)

📅 모집기간 : 25.11.25~25.11.26
 👤 모집인원 : 1명
 ≡ 경영·사무
 📍 대전

자세히보기 →

프로그램 정보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유형 전체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기업탐방형

직무

전체 경영·사무 금융·회계 영업·해외영업 광고·마케팅 IT 연구·R&D 생산·제조 공공행정 기타

지역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전북 지역무관

2 중장년 경력지원제

- **(사업목적)**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을 제고
- **(대상)**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대 이상 중장년층
- **(지원내용)** 참여자에게 참여수당 월 최대 150만원, 참여기업에게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지원

3. 성평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여성인턴과의 연계

- **(사업목적)** 경력단절여성 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 및 기간)**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 대상 3개월간 지원
- **(지원내용)** 인턴 연계기업 3개월간 월 80만원 지원, 이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6개월 이상 근무 시 참여자에게 60만원 및 기업에 80만원 지원

마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 및 금융지원과의 연계

- 수급자는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연계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복지, 금융서비스 수요를 파악하여 고용복지플러스 전산망(워크플러스)를 통해 관련기관에 서비스 연계·의뢰
 - 생계급여·긴급생계비 등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복지담당자가 워크플러스를 통해 구직자 주소지 읍·면·동에 의뢰하고, 필요시 사례관리 대상자로 관리
 - * 지자체 복지담당자가 입주하지 않은 경우 고용복지+센터 담당자가 권한을 부여받아 서비스 의뢰
 - 워크플러스 초기화면의 “내정보수정” 탭에서 담당업무에 “복지지원팀” 추가

- 취업에 2개 분야 이상(복합) 애로가 있는 구직자는 필요한 서비스 기관과 서비스 연계를 진행하고, 고용서비스 외에 타 기관의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복지+센터 내 사례관리협의체를 통해 해결방안 논의

* 취업문제와 함께 주거문제, 신용회복문제, 아이돌봄문제 등 복합적인 취업장애요인 해소가 필요한 경우

- 취업장애요인 해소와 취업알선 강화를 위해 고용복지+센터 사례관리협의체에 유관기관 참여를 확대* 및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례관리 상호 참여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복합서비스 제공 추진

* (現) 지자체 일자리센터, 여성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 고용복지+센터 입주기관 중심 참여 → (改) 지자체 복지지원팀,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복지센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참여기관 발굴 및 연계 강화

① 사례관리를 통한 고용·복지·금융 등 복합서비스 연계

1 사례관리 목적

- 고용복지+센터를 찾은 민원인이 지닌 어려움이 단순 서비스 연계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다방면의 전문가(복지, 의료, 심리, 고용, 주거, 교육, 금융, 법률 등)들이 모여 필요 서비스를 파악하여 연계·지원
- 서비스 연계 후 지속적인(월 1~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새로운 애로사항 발생 시 계획을 재수립하여 지원
 - * 사례관리협의체 운영 등 고용복지+센터 운영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는 「고용복지+센터 운영 매뉴얼」, 고용복지+센터 사례관리협의체 운영강화 방안 안내(고용서비스정책과 -2175, '23.4.20.호) 참조

2 연계 대상

- 사례관리협의체에 의뢰되는 민원인은 반드시 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일 필요는 없으며 다른 기관의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고 지속적인 밀착 사례 관리가 필요한 경우 대상으로 선정

복지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때(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이혼, 단전, 휴·폐업, 화재, 실직, 노숙, 교정시설 출소자 등의 생계곤란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하여 112 경찰접수 후 주 소득자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생계가 어려울 경우 💡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발달 영역별 서비스 필요시
금융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빚이 많아 힘들 때 💡 채무와 신용문제로 고통 받고 있을 때
법률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이면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변호사가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
정신건강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작스러운 생활 여건상의 변화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 💡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어 있는 자 💡 대인관계 등에 있어 상당한 불안 증세를 보이는 자

3 사례관리서비스 연계 절차

창구 담당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상자 취업 애로사항 파악 ② 워크플러스(Workplus)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동의서' 작성 안내 ③ 타 기관에서 상담전화 갈 수 있음을 안내 ④ 사례관리 담당자에게 대상자의 복합애로사항 제공 및 의뢰여부 협의 ⑤ 의뢰대상 선정 확정 후 기본정보 작성 및 의뢰
↓	
연계기관(부서) 담당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⑥ 대상자 필요 욕구에 대한 초기상담 실시
↓	
사례관리담당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사례관리협의체 상정 여부 결정
↓	

사례관리담당자	<p>⑧ 사례관리협의체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소집 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구성 <p>[내부위원] 센터소장, 취업지원담당, 사례추천 상담사, 사례관리담당</p> <p>[외부위원] (자치단체) 복지담당, 기업&일자리지원센터 상담사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상담사 (신용회복위원회) 심사역</p> <p>※ 서비스 내용 및 기관 운영사정에 따라 협의체 구성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소집 <p>① 구직자의 복합 애로로 협의를 통해 각 기관간 솔루션 모색이 필요한 경우는 위원장이 해당 참여기관 담당자 등 소집</p> <p>② 그 외 협의는 위원장 및 구직자를 추천·선정한 담당자가 유연한 방식(유선, 메신저, 긴급 미팅 등)으로 협의체 운영 가능</p> <p>※ 회의 자료는 회의 운영방식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활용</p>
↓	
사례관리협의체	<p>⑨ 서비스 제공방향 등 논의 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여부 결정</p> <p>※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구직환경 및 상담내용을 워크플러스에 상세 기록하여 추천기관·사업 담당자에 공유 (동일내용 반복 상담 최소화)</p>
↓	
연계기관(부서) 담당자	<p>⑩ 사례관리 협의체에서 논의 된 서비스 제공</p>
↓	
사례관리담당자	<p>⑪ 서비스 진행과정 모니터링 및 추가서비스 필요성 등 제공계획 수립</p>
↓	
종결	<p>⑫ 서비스 완료 및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사례회의 종결여부 결정</p>

4 사례관리서비스를 통한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사례

사례 1 오랜 자영업운영으로 직업진로나 생계에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함에 따라 새로운 진로탐색이 필요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서울서부고용센터]

사례관리협의체 대상자로 선정	①취업 전까지 생계지원을 위한 복지지원 서비스 연계, ②스트레스와 현 상황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보건소 연계, ③안정적인 일자리 취업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 월세 지원방안,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주거복지 상담소 연계하여 안내
고용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취업지원(구인정보제공, 취업알선), 구직지원(입사지원 클리닉, 면접코칭 등) 서비스 제공 - 자아존중감 회복을 위한 상담 진행
패션디자이너로 취업 성공	

사례 2 배우자 사별로 인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포항고용센터]

금융 상담	-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개인회생을 희망하여 법률구조공단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및 경제적 도움을 위한 복지 상담
고용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 및 일경험 제공하여 위해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판매업 종사자로 취업 성공	

사례 3 부부가 건강 및 경제적 생활고로 고통을 겪던 중 취업하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인천고용센터]

사례관리협의체 대상자로 선정	- 경제적 및 심리적, 종합적인 도움이 필요
복지서비스 제공	- 긴급복지지원 상담 및 경제적 도움을 위한 복지 상담 - 건강상의 문제등 어려움이 있어 심리안정프로그램 연계
고용서비스 제공	- 취업의욕 고취 및 적합한 구인처 알선 등 전반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요양병원으로 취업 성공	



대표적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제도(예시)

①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내용)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
-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② 영구임대주택 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공급

- (내용)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및 주거비 등 제공
- (문의) 시·군·구청, LH마이홈(☎1600-1004),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공사 ☎1588-0466 등)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내용) 경제적 어려움으로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은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ccer.ccrs.or.kr)

④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 (내용)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 (문의)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또는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1577-0199)

⑤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

- (내용) 법률상담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무료 제공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 지원센터 (☎132, <https://resu.klac.or.kr>)

⑥ 소상공인 지원(응자)

- (내용) 상시근로자 5명(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의 점포 운영을 위해 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정책자금 대출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88-5302, www.semas.or.kr),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7 위기가족 지원

- (내용) 위기가족, 한부모가족, 1인가구,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 사례관리기반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지원
- (문의) 시·군·구 가족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가족상담전화(☎1577-4206)

8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 지원
-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9 아이돌봄서비스

- (내용)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 ~ 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서비스 제공
- (문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정부 지원 신청 후 아이돌봄(idolbom.go.kr)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더 많은 구체적인 복지 정보가 필요하면 보건복지부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참조

바 기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민간기관 고용프로그램 연계

- 취업 장애요인 분석 및 특성·진단에 맞춰 수급자가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취업 준비교육, 직업 훈련, 창업지원, 일경험 등 고용프로그램 연계 가능(서식 38, 복지서비스 의뢰 신청서 참조)
- 특히,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일경험 프로그램 등 고용프로그램을 지역 단위로 발굴하여 연계 가능
-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및 협업은 ‘맞춤형 취업지원 및 취업상담 매뉴얼’ 참조



고용·복지서비스 기관 협업·연계를 통한 취업성공 사례

사례 1 복합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참여자의 취업 걸림돌 해소를 통해 취업성공

- 참여자 김○○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경제적 손실 및 채무 법률 문제 등 심리적 압박으로 자살 징후까지 보였고,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17년간 일을 하였으나, 사기 사건 연루 이후 단기간 일용직을 전전하여 경력단절이 심하고, 나이가 있어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
 - ⇒ 채무, 법률, 심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법무부, 정신건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전문 상담을 지원하고, 심층 상담 및 이력서·자소서 클리닉을 통한 구직 기술을 향상한 후 알선으로 자동차부품 조립원으로 취업에 성공

사례 2 심리적 불안감 및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참여자에게 심리안정프로그램 제공 및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생계비대부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해소하여 취업성공

- 참여자 전○○은 부정확한 발음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학창시절 왕따를 당해 자살 시도 등 심리적 불안감이 높았고, 그동안 여러 직업을 가졌지만 근속기간은 대부분 6개월을 넘기지 못하였고 장례지도사를 희망하지만 희망 직종에 대한 구직 능력이 취약
 - ⇒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 안정을 도모하였고, 장례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직업훈련과 연계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생계비대부를 신청토록 해 경제상황 걱정없이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자격증 취득 성공
 - ⇒ 참여자 전○○의 가장 취약점인 면접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모의면접을 진행하고 촬영된 영상본을 분석하여 면접 공포감을 해소한 끝에 장례지도사로 취업 성공

사례 3 장기간의 공무원 시험 준비 실패로 생긴 우울증과 무기력감을 정신건강 심리 상담 연계를 통해 극복하여 반도체 엔지니어로 취업성공

- 참여자 이○○은 20대 후반이나 장기간의 공무원 시험 실패로 인해 불안감과 무기력감이 강했고, 나이에 비해 사회생활 경험이 전무한 것에 위축감이 상당
 - ⇒ 참여자가 희망하는 직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희망직종에 대한 정보 탐색 과제를 부여한 후 관련분야 직업훈련과 연계하였고, 참여자의 불안감 증세 및 무기력증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참여자 연계
 - ⇒ 정신건강 복지센터 상담 후 참여자의 무기력증 및 우울증세가 많이 호전되어 본격적인 취업을 위해 입사지원에 필요한 이력서 컨설팅 및 면접 클리닉을 실시한 끝에 반도체 엔지니어로 취업성공

사 해외취업 및 창업지원 등

1. 해외취업 지원(K-Move 스쿨, 해외일경험, 기타 해외취업 등)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해외취업연수(K-Move 스쿨) 과정 및 해외일경험(WELL)을 안내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
 - * 구체적인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http://www.worldjob.or.kr> 참고
- KOTRA 해외K-Move센터, 공공 해외취업알선 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취업 희망 청년에 대한 해외취업 연계
 - * ▲ (KOTRA) KOTRA 글로벌일자리사업
 - ▲ (KOICA) ODA 해외인턴, 국제개발협력인턴, 체험형 청년인턴 등

2. 창업 지원 연계

- 수급자 중 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등 중앙정부·자치단체 지원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연계(서식 36, 창업지원프로그램 대상자 추천서 참조)
 - 대상자에게 유관기관의 창업지원 관련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
 - * 창업교육 일정 등에 따라 운용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음을 설명하여 이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유관기관에 대상자 추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수급자가 대상자로 확정되었는지 확인
 - 추천자의 창업교육 불참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각적인 통보 협조를 요청하고 수급자에게는 유관기관 교육과정 참여가 불성실한 경우 향후 취업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안내
 - ↳ 월 1회 이상 수급자와 유선연락 등을 유지하면서 참여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 창업자금 지원 희망자에게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등의 창업자금 지원 제도를 확인하여 안내



창업지원 안내

① 창업진흥원(www.kised.or.kr)

- 창업도약·초기창업·예비창업패키지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예비 및 초기 창업자, 스타트업·1인창업기업·중장년기술창업 등 대상별 창업지원 등 원스톱서비스 지원
- 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유치, IR, 창업경진대회, 지역창업자·기업 간 네트워크, 마케팅·판로개척, 글로벌 진출 등 지원
- 창업관련 법률·특허·금융·경영 등 원스톱 컨설팅(상담) 등

② 창조경제혁신센터(ccci.creativekorea.or.kr)

- 전국 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운영,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 기관·프로그램의 연계
- 온·오프라인 상담,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지원, 판로지원,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등의 창업기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의 파트너 기업, 유관기관과 연계·협업을 통해 창업 지원

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biz.or.kr, ☎1533-0100(소상공인 통합 콜센터), ☎1357(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창업지원, 경영성장, 재기지원, 정책자금 등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예비 및 초기 창업을 위한 상권정보시스템, 컨설팅, 프랜차이즈 정보 및 교육 제공 등 맞춤 지원

④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1357)

- 창업교육 지원사업, 시설·공간 지원사업, 창업자 대상 멘토링 및 컨설팅 제공, 정책자금 상담, R&D 및 판로·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제공

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1577-5475)

- 법인 유형별 설립정보 제공,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보 등 매뉴얼 제공, 법인 설립 절차 체험 등 법인설립 지원

⑥ 기타 지원기관

- 자치단체별 창업지원제도, 대학 내 또는 기관 연계 창업보육센터 등

5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가 개요

- **(의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
 - 다만,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달리,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은 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취업 알선 또는 고용정보 수집·제공 등은 **반드시 지원**하여야 함
- **(주요 내용)**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은 ①구직기술 향상 지원과 ②직접적인 취업 알선으로 구성(필요한 경우 ①② 병행, 동시에 진행)
 - 수급자가 입사서류 작성이나 면접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구직기술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직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을 선행하고,
 - 수급자가 빠른 취업알선을 희망하거나 구직태도, 구직기술 등에서 취업 준비도가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취업알선 상담을 진행

나 제공 방법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안내)** 취업활동계획 수립 당일, 관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실시내용 등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후 별도 상담일을 지정하여 실시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5개월 이내 1회 필수 대면상담을 통하여 취업활동 계획 재진단이 이루어짐을 안내
- * 직업훈련, 일경험 참여 등으로 기한 내 대면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연기 조정 가능

-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중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종료일 전에 유선연락 등을 통해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상담일을 지정·통지 가능
- 이때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기간, 진행절차, 실시방법 등을 설명
- **(서비스 제공 의무 횟수)**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집중 취업알선기간(취업노력기간) 3개월 포함) 동안 월 1회 이상 대면 또는 유선 상담을 진행하고 월 1~2회 구인 정보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 *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에는 월 1회, 그 외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는 월 2회 의무적으로 취업알선을 포함한 구인정보 및 관련 서비스 제공
 - ↳ 수급자 특성에 따라 판단하되 가능한 취업알선을 포함하여 제공하고,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로 취업알선이 즉시 필요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구인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을 생략할 수 있음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에 최종 3개월은 원칙적으로 집중 취업알선(취업노력기간)* 기간으로 의무 운영하여야 함
 - * 가능한 구인처 발굴 등을 통한 취업알선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상담 실시
- **(구직기술 향상지원 의무)**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모든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1종 이상의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또는 1회 이상 상담사에 의한 컨설팅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구직기술 향상지원 상담(컨설팅) 실시

다 세부 내용

1. 구직기술 향상

- **(개요)** 수급자가 입사서류 작성이나 면접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구직기술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알선에 선행하여 일자리 정보수집, 입사서류 작성, 면접 등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구직기술 향상을 위한 과정을 진행

- 이때 상담사는 수급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여 수행하도록 함
- 구직기술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종합적인 해결전략이 필요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를 추천할 수 있음
- **(일자리정보 탐색방법 알아보기)** 수급자가 채용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수집한 일자리 정보가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인지 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상담사는 수급자에게 자신의 조건에 맞는 구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수집한 정보를 평가·선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줄 필요
 - 수급자의 연령, 경력, 희망직업(직무), 희망기업 등의 정보를 토대로 적절한 정보 출처원(기업, 기관, 사이트 등)과 정보수집 방식을 안내
 - * 수급자가 기업을 특정하지 않고 희망직업만 있는 경우 → 일반포털사이트, 수급자가 특정기업 정보를 찾는 경우 → 기업 홈페이지, 기업 인사담당자 등 활용
 - 일반적으로 구직자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구하는지 경로에 대해 먼저 설명하여 수급자가 어떤 자료를 활용할지 선택하도록 함
 - * 온라인 사이트, 취업지원기관, 박람회 및 설명회, 채용정보지, 인적 네트워크 등 활용방법 및 장단점 설명, 수급자의 연령, 경력, 희망직종(직무) 또는 희망 기업 등에 따라 어떤 것이 유용한지를 직접 판단해 보도록 함
 -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출처의 신뢰성과 정보의 최신성 고려
 - 구인정보는 다각도, 주기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담사가 안내한 정보를 수급자 스스로 탐색해 보도록 하여, 수급자가 능동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이력서 클리닉)** 이력서는 거의 모든 기업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입사서류로 개인적인 신상, 학력, 경력, 교육 및 특이사항 등을 포함하므로 수급자가 이력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으므로, 수급자가 작성한 이력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면서 느낀 어려움이나 상담사가 판단하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클리닉 실시
- **(자기소개서 클리닉)** 자기소개서는 이력서와 함께 많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입사서류로, 인사담당자가 지원자의 성격과 태도, 회사 지원동기, 직무역량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하는 서류임
 - 수급자의 특성, 희망직업(직무), 기업의 특성을 파악해야 클리닉이 가능하므로 사전작성 및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수급자가 사전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오도록 과제를 부여하고 작성 과정에서의 어려움, 상담사가 판단하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클리닉 실시
 - *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 수급자가 상담사에게 무조건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함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상담사는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중 적합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안내
 - * 수급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집체 프로그램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참고 사이트 등을 안내하고 '자기소개서 작성해오기'와 같은 과제 부여 가능
- **(면접 클리닉)** 면접은 기업에서 대면을 통해 지원자가 필요한 역량과 태도를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과정이며, 지원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나, 수급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
 - 상담사는 면접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급자의 면접기술 강화를 위해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은 실제 면접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해야 함을 안내

- 수급자 스스로 이유를 알지 못하거나 상담사가 판단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 모의면접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을 통해 보완사항을 확인하는 방법도 활용
- 실제 면접경험이 없거나 적어서 어려움이 큰 경우에는 면접기술강화를 위해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중 적합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④ AI 모의면접 체험기 활용 방법

- 1 (목적)** 구인·구직자들의 언택트 면접 채용방식 수요 증가
→ 인공지능 기술(AI)을 활용한 “AI 면접기” 체험 필요성 강화
- 2 (내용)** ①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자 ②취업알선 대상자 ③실업급여 수급자 ④유관기관·민간위탁 대상자 ⑤기타 신청자를 대상으로
 - AI 면접기를 활용한 클리닉,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 AI 면접 채용 희망 기업에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등
- 3 (결과 활용)** 면접클리닉 및 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 AI면접 결과를 활용하여 참여자의 성향 및 장·단점을 분석, 입사지원 컨설팅 실시

AI 면접기 기능

- (유형별 면접) 인성면접, 역량면접, 전공면접 등 유형별 연습 가능
- (기업별 직무면접) NCS기반 직무수행능력 등 기업별 직무면접 가능
- (외국어 면접) 외국언어로 면접 연습 가능(영어, 중국어, 일본어)
- (역량검사) 기억력, 민첩성, 수리력, 공간인지능력 등 성과역량 관련 능력 측정
- (성격검사) Big5 성격검사로 “성향파악” 단계를 간접적으로 체험



AI 면접기 사용 방법

- ① **회원가입:**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입력(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 필요)
- ② **로그인 후 연습문항 선택(최대 10개까지 선택 가능)**
 - 면접 유형별 선택 >> 중분류 유형 문항 선택 >> 세부 문항 선택
- ③ **면접준비 후 응시**
 - 면접응시를 선택 >> 진행하면 면접관이 나와 질문을 함 >> 화면 상단의 시간(60초)을 보면서 적절히 답변(자동녹화) >> 시간이 지나면 다음 질문으로 자동 이동 또는 상단의 다음 선택
- ④ **결과보기 및 전송, 출력(기본 면접 소요시간: 30분)**
 -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에서 면접실로 이동 >> 결과보기 가능 >> 이메일 입력 후 전송 가능 >> 필요 시 결과 출력
- ⑤ **추가 기능 활용(추가기능 소요시간: 10분~20분)**
 - 필요시 공사·공단 등 희망 기업의 면접 및 역량검사 체험 >> 역량진단 게임 등 진행 가능

2.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개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수급자가 빠른 취업알선을 원하거나 구직태도, 구직기술, 직업기초능력 등에서 취업준비도가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진행
- **(구직자 맞춤형 취업알선)** 수급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기 위해서는 고용24에 등록된 수급자의 구직신청서 내용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구인처를 검색하여 적합한 곳이 있으면 알선
 - 특히 직종, 직무내용, 근무희망조건 등을 중심으로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과 구체성을 수급자가 충분히 인지·수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함께 확인

- 고용24에서 구인처를 찾기 어려운 구직자에 대해서는 민간 포털취업 사이트나 직종·업종별로 전문화된 취업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외부구인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구직자에게 제공 가능
-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수급자의 개인별 희망직업 등을 감안하여 적정 구인처를 적극 탐색, 고용24 상의 구인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채용지원서비스 적극 제공

③ 채용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

- **〈일자리 수요데이〉** 고용서비스기관의 시설 또는 다른 장소를 이용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 만남(현장 채용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 구직자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없이 기업 인사담당자를 만나 면접기회를 얻을 수 있음
- **〈채용박람회〉** 채용면접뿐만 아니라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규모 채용행사(직접 참가기업 30개소 이상)
 - 자주 접하기는 어렵지만 구직자에게는 직업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다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동행면접〉** 고용서비스기관의 담당자가 일 경험이나 면접경험, 자신감 등이 부족한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방문하여 안정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구직자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믿음과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취업성공률을 높일 수 있음(다만 구직자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 여부 판단 필요)

3. 고용장려금제도 등 활용 및 연계(2026년 기준)

① 고용촉진장려금(사업주 지원)

- **(사업목적)**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 자세한 지원 요건 및 대상은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제45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참조

-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로서 취업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기간만료 및 취업으로 수급이 종료된 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함(이수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자격 유효)

*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제외 근로자 및 사업장 요건등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문의하여 특정 사업장이 장려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안내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별표1)

1.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자격이 있는 자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 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로 봄.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지원내용)**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연 최대 720만원(대규모 기업 360만원) 한도 내 지급

2 청년 특화 취업지원프로그램수당(II유형 참여 청년 취업자 지원)

- **(사업목적/지원대상)** 청년의 취업 촉진과 기업의 빈일자리 구인난을 지원하기 위하여 II유형 청년 대상 빈일자리 취업지원프로그램 시행('25.1.~)

- **(지원내용)**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훈련참여지원수당 최대 120만원*,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원

* 직업훈련 1개월 당 2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자세한 내용은 7부 청년 특화 취업지원프로그램 280p 참고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주 및 취업자 지원)

- **(사업목적)**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15~34세 청년*

* 참고로 비수도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취업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여부 무관 지원

- **(지원내용)**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비수도권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48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60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원)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72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

4 사회적기업 취업알선(취약계층 채용 기업)

-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은 주주나 소유자의 이윤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참여근로자로 채용

* 취업지원서비스 1개월 이상(1개월 미만이라도 IAP를 수립한 경우 포함) 진행 중인 자, 기간만료자, 취·창업으로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인 자

- **(취업알선)** 고용24 테마별 채용관에서 ‘사회적기업관’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구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지역협력과를 통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기업 중 취업알선에 동의한 기업 명단 활용하여 적극 취업알선

라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실시 시 고려사항

- **(구직활동 인식 공유)** 취업알선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결실을 얻기 위한 마지막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대해 인식 공유 필요
- **(지속적인 연락체계 유지)** 구인처 알선을 통해 취업까지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취업성공에 대한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
 - 형식적인 구인정보 제공보다 취업성공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락과 지지 필요
- **(취업에 대한 자신감 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수급자 스스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할 가능성 증대
 - 따라서 취업에 대한 희망을 북돋아 주는 등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 필요

04

수당 지급

I

소득지원 개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수급요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을 지원

구분	근거 (구직자취업촉진법)	목적	내용
구직 촉진 수당	법 제18조, 20조, 21조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제16조	I 유형 수급자에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시 지급 - (2회차 ~ 6회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이행시 지급 📌 지원금액 (월 60만원 + 가족수당 최대 40만원) × 6개월
취업 활동 비용	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2조	II 유형 수급자에게 취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15 ~ 25만원(1회) 지원 📌 참여장려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고용센터(위탁기관)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알선참여 시 1회 2만원 × 5회(1개월당 1회 한도)
취업 성공 수당	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3조	수급자의 신속한 취업과 근속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I·II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및 II유형 특정계층(소득무관)으로서 취·창업한 자 📌 근로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근로자) 주30시간 이상 일자리, 고용보험 취득 - (노무제공자·프리랜서) 월평균 250만 이상 소득 발생 - (창업자) 사업자등록 + 전용공간 확보 + 매출 발생 📌 지원내용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년 근속 시 100만원(총150만원)

II

구직촉진수당

1

지급대상

- 법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자격을 인정받은 I유형 지급자격자 중 IAP(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IAP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지급자

2

지급액

1. 기본수당: '26년부터 월 60만원('25년까지 월 50만원)

- * 구직촉진수당 지급수준은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사항으로, '20년 12월 월 50만원으로 의결, 이후 '25년 12월 월 60만원으로 의결

2. 추가수당(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 * '22년 12월 및 '23년 5월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지급수준 및 처리기준 결정

● 가족수당 지급 대상

- 지급자격 심사시 확정된 가구원 중 미성년자(18세 이하), 고령자(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지급자격 심사시 가구원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취업지원 신청일 이후 지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출산한 신생아

● 가족수당 지급 시 유의사항

- 중증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인 경우 1인당 20만원 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하루라도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급 주기 가족수당 전액 지급
- 1명의 부양가족 몫으로 2인 이상 신청인 **동시 수급 불가** 및 가족수당 수급 종료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타 신청인이 가족수당 수급 가능
- 부양가족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참여자는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부양가족 중 수급자의 신청으로 가구원에 포함된 자(배우자 또는 1촌 직계혈족이 아닌 가족)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와 분리되면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참고 가족수당 중복지급 제한 예시

● 부+모+자녀(18세 이하)로 구성된 3인 가구

- ① 부와 모가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참여시: 자녀 몫으로 부 또는 모 1명만 가족수당 수급
 - * 초기상담 시 수급자격자로 하여금 가족수당 대상을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IAP수립한 날까지 변경가능하며, 구직촉진수당 1회차 수급 이후 다른 수급자의 가족수당 대상으로 변경 불가
- ② 부가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참여 후 모가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참여시: 부가 자녀 몫으로 가족수당을 수급하고,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후부터 모가 자녀 몫의 가족수당 수급 가능
- ③ 자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참여시: 부 또는 모가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하더라도 가족수당 지급 불가. 자녀의 취업지원 종료 후 부 또는 모가 가족수당 수급 가능

3

지급기간

- **(원칙)** 수급 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구직 활동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하여 월 단위로 지급
 - 1회차는 IAP 수립 시, 이후 6회차까지 IAP 수립일을 기준으로 1개월 단위 (지급주기)로 지급
- **(분할지급)** 수급자가 분할지급을 따로 신청한 경우, 수급자와 상담사가 협의하여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연장한 경우에도 총지급액은 기본수당 360만원 + 가족수당 최대 2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지급액은 월 지급액의 50%로 결정
 - * 구직촉진수당 기본수당은 월 60만원(100%) 또는 30만원(50%)으로만 결정 가능하고, 가족수당도 100% 또는 50%로만 결정 가능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분할지급 신청의 경우, 취업활동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전에 분할지급 방식(금액, 횟수)을 정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취업활동계획 변경은 해당 지급주기가 시작하기 전 지정일까지 가능

3부 II-2. 취업활동계획 변경 87p 참고

참고 분할지급 예시(가족수당 40만원 있는 경우)

-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을 9개월 동안 분할지급을 신청하면서 처음 3개월 동안은 월 100만원,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월 50만원(월 지급액의 50%)으로 분할지급 요구 가능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9회차	합계
기본수당(60만원)	60	60	60	30	30	30	30	30	30	360
가족수당(40만원)	40	40	40	20	20	20	20	20	20	240
계	100	100	100	50	50	50	50	50	50	600

4

지급기준

가 지급회차별 지급기준

-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
 - ① **(1회차 지급)**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된 경우
 - 방문 상담, 직업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상담 참여, 취업역량평가 등 상담사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부과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경우
 - ② **(2회차 이후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수립된 구직활동을 지급주기 별로 모두 이행한 경우 전액 지급
 -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구직활동은 지급주기별 **최소 2개 이상**(취업활동계획 재진단을 위한 필수 대면상담 포함 시 **3개 이상**) 수립하여야 하며, 구직활동을 3개로 정하고 2개만 이행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감액 지급

나 구직활동 이행에 따른 지급기준(구직활동의무 이행 인정기준)

1. 직업훈련 참여

-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직업훈련(3부 IV-4-다.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156p 참고)에 참여하여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 → 구직촉진수당 지급 단위 기간 내 ①훈련출석 예정일수가 10일 이상인 과정은 구직활동 2개, ②10일 미만인 과정은 구직활동 1개로 인정

* 미인정 훈련과정 및 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훈련(자비부담 일반 학원 수강 등)은 총 훈련일수가 10일 이상+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이고 출결관리가 되는 과정에 한하여 인정 가능

* 원격훈련과정은 수료한 경우 구직활동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수료일이 포함된 지급주기**의 구직활동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과정은 구직활동 2개, 40시간 미만인 과정은 구직활동 1개로 인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출석일수 및 출석률 인정기준 적용

- 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집체훈련과정 및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시간으로 출석률 산정**
- 지각·조퇴·외출로 인하여 1일 소정 훈련시간의 50% 미만을 수강한 경우 해당일자는 **결석**으로 처리
- 지급주기 중 지각·조퇴·외출 횟수의 합이 3회인 경우 1일 **결석**으로 처리
- 소정 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인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3에 따른 출석인정기준 적용 가능(경조사, 휴가 등)
- 훈련개시일 이후 훈련생 등록기간에 **중간 편입**한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개시일부터 훈련 등록 전일까지의 훈련일수는 소정 훈련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훈련기관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강된 경우 폐강일 이전 훈련일수 대비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80% 이상 참여 여부를 확인

- 지급주기 중 훈련수강 포기한 경우 미출석일은 결석으로 처리. 다만, 수강 포기 사유가 취업인 경우 수강포기일 이전 훈련 참여일자에 대해서는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

* 지급주기 중 임금근로자(주30시간 이상 근로), 노무제공자(월소득 250만원 이상)로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는 직업훈련 출석률과 무관하게 취(창)업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

- 지급주기 중에 2개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훈련 참여에 따른 출석률을 구분하여 적용

* 다만, 출석률이 80% 미만인 과정이 있더라도 지급주기 중 참여한 전체 훈련과정의 소정 훈련일수를 기준으로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직업훈련 참여로 인한 구직활동은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

2. 일경험 참여

-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일경험(3부 IV-4-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 166p 참고)에 참여하여 참여 예정일수의 **80% 이상 참여** → 구직촉진수당 지급 단위기간 내 ①**참여 예정일수가 10일 이상인 프로그램은 구직활동 2개**, ②**10일 미만인 프로그램은 구직활동 1개로 인정**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중 프로젝트형과 같이 참여일수가 확인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활동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의무 부여 후 이행 시 구직활동으로 인정 가능
- 출석일수 인정 및 출석률 인정기준은 **직업훈련과 동일하게 적용**

3.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안정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집단상담프로그램, 단기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수료), 심리상담, 취업진로상담 시 구직활동으로 인정**
- **2일 이상의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 시 구직활동 2개로 인정, 그 외 단기집단상담 및 취업특강은 각각 구직활동 1개로 인정(단, 취업특강은 전체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구직활동으로 2회만 인정)**
 - * 집단상담프로그램이 구직촉진수당 2회기 이상의 지급주기에 걸쳐 운영되는 경우 수료일자가 포함된 지급주기의 구직활동으로 인정
-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시 상담 1회를 구직활동 1개로 인정, 그 외 심리상담 및 취업진로상담 등 참여 시에도 동일하게 상담 1회를 구직활동 1개로 인정
- 고용서비스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사와 취업상담 등을 진행하거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에 참여한 경우 **구직활동 1회로 인정**
 - * 취업활동계획 재진단을 위한 필수 대면상담 참여도 구직활동 1회로 인정하며, 이력서 클리닉 후 다른 날 자기소개서 클리닉에 참여한 경우 각각 구직활동 1회로 인정 가능

4. 고용-복지-금융 연계사업 참여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빈곤·양육 등 취업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 및 금융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
 - 취업의욕 고취·취업기술 향상 프로그램 참여와 동일한 기준으로 상담(심층 면담),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상담 1회 및 프로그램 수료를 구직활동 1개로 인정**하되 참여 프로그램 형식과 내용이 2일 이상의 집단상담프로그램에 해당하면 구직활동 2개로 인정
 - * 복지·금융서비스 참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확인하고 인정, 다만 참여기관에서 발행하는 별도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 복지서비스 의뢰에 따른 이행 과정 및 결과 확인서」(서식 39)로 확인하거나 상담사가 참여기관 담당자와 유선확인하여 처리 가능

5. 입사지원 등 직접적 구직활동 시

- 수급자의 희망취업 조건과 맞는 구인이 있는 사업장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경우 이행한 횟수별로 구직활동 1회** 인정
 - 단, 취업 의사 없이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불인정
 - * 구인이 없는 사업장에 응시하는 경우, 구인직종이나 직무가 수급자의 취업희망 분야와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취업알선을 거부하거나 서류합격 후 면접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등
 - 면접 없는 이력서 제출이 3회 이상인 구직활동자에게는 취업활동계획 5회차부터 가급적 취업알선 또는 직업지도 프로그램 등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인정
 - *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사가 제시한 취업알선이나 연계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필요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6. 자영업 준비활동 시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창업을 위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창업준비 활동*을 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
 - * 시장조사, 영업장 확보를 위한 장소 물색 및 계약,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 영업장 인테리어 공사, 프랜차이즈 창업에 필요한 시장조사·교육·계약 등 일련의 준비 활동 등
- 수급자는 자영업 준비활동 이행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행으로 처리
 - * (확인자료) 각종 계약서, 면접 확인서, 컨설팅 참여 확인서, 구인광고 게시물, 시장조사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제안서, 인테리어 공사 자료, 자격증 시험 응시 자료, 훈련참여 확인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
- 자영업 준비활동은 사업자등록을 하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활동 내용 및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구직활동 이행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여 형식적 구직활동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 반복적으로 동일한 준비활동만을 이행하지 않도록 관리(반복적인 시장조사만 이행, 반복적으로 구인광고 등록 등 제한)

7.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기타 구직활동 시

- **(구직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증 시험 응시를 **구직활동 1회**로 인정할 수 있으며, 자격증 시험에 탈락하고 다른 날 동일한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각 구직활동으로 인정
- **(전문성 향상 등)** 노무제공자, 영세자영업자가 해당 사업 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 각종 시설·장비·기계·차량 유지 보수, 사업제안서 제출, 포트폴리오 작성 제출, 면접·교육·시험응시 등의 활동을 한 경우 각 행위별로 구직활동 1회로 인정

- **(사회봉사활동)** 노동시장 여건상 구인업체 부족 등으로 고용정보 제공 및 직접적 구직활동이 어려워, 취업희망직종·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구직기술 향상 등 직업지도를 위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

다 종료자에 대한 지급기준

- **(취·창업 종료자)**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중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취·창업일이 포함된 지급주기는 구직활동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 지급주기 중 ①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 ②사업자등록으로 신규 창업(소분류 이상 업종전환 포함), ③월 소득 250만원 이상 노무제공자로 취업한 경우에 한하며, 불완전 취업으로 수급자 본인이 취업종료를 원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 불완전 취업이나 수급자 본인이 취업 종료를 원하는 경우 구직활동 의무 이행 시에만 구직촉진수당 수급 가능
 - * 해당 취·창업으로 지급주기 중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취업지원 종료 후 발생한 소득이므로 신고 대상 소득이 아님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중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①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②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구직활동을 하거나 할 것을 조건으로 월 평균 50만원 또는 총 300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이 포함된 지급주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까지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 수급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날(생계급여 결정일)로 취업지원이 종료(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종료)되는 경우 종료일 전일까지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 수급 가능

* '25.7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자부터 해당 기준 적용

- **(본인 희망 중단자)** 중단일이 포함된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라 유예자에 대한 지급기준

-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중 유예 결정 시 유예일이 포함된 지급주기는 유예 전일까지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
 - 다만 유예 사유 발생으로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유예 시작일을 해당 지급주기 시작일로 유예 처리하여 재참여 후 소멸된 지급주기 없이 다시 지급주기 생성

3부 Ⅲ-2.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 유예자에 대한 사항 100p 참고

마 부양가족 요건 변동 시 지급기준

- 가구원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하루라도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수당 전액 지급

* **예시** 가구원인 아버지의 연령이 5.10.부터 70세가 된 경우, 지급주기가 4.11.~5.10. 이라도 해당 주기 가족수당 10만원 지급

- 부양가족 중 부양가족 요건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외되기 전날이 포함된 지급주기는 가족수당 전액 지급하고, 다음 지급주기부터 가족수당 미지급
- * **예시** 1촌 이내 직계혈족이 아닌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 이에 부양가족이었던 시아버지가 5.10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여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에 미등재 된 경우, 5.9에 포함된 지급주기의 가족수당은 전액지급, 이후 지급주기부터 가족수당 부지급

바 지급 중단 등 기준

- 정당한 사유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 중단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 수급자가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중단 되지 않음
 - 다만 구직활동 없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지급주기 시작일부터 취업지원 유예 처리하여 소멸되는 지급주기가 없도록 함
 -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급중단이 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유예자에 대한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처리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급 중단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법 제26조, 시행령 제11조, 운영규정 제10조)**

1. 소개된 일자리·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취업하고자 하는 업종·직종 등과 현저히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거주지의 이전이 필요하나 그 이전이 어려운 경우
3. 소개된 일자리·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기능에 대한 일반적인 임금수준의 100분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수급자의 정신적·신체적 능력 또는 지식·기능·기술 수준으로 보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소개된 경우
- 나. 소개된 사업장에 숙소사·사택 등이 없고 통근가능 지역에서 주택을 얻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양해야 할 동거가족과 별거하게 되어 주거를 이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수급자의 소질·능력 등으로 보아 지시받은 직업훈련 등의 직종이 부적당하여 훈련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임금체불 포함)한 것이 명백한 사업장에 소개되거나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공공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
- 마. 그 밖의 사회통념상 직업소개를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재해로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가. 국가가 인정하는 자연재난(지진, 해일, 산사태, 홍수, 태풍, 대형 산불 등) 발생으로 수급자가 물리적·시간적·직접적으로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나. 수급자 본인이 7일 이상의 연속적인 입원(또는 통원치료)을 요하는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 이행이 물리적·시간적으로 불가능하여 이행하지 못한 경우

- 다. 수급자의 배우자, 수급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7일 이상의 연속적인 입원(또는 통원치료)을 요하는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병간호 등의 조력이 필요하여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 이행이 물리적·시간적으로 불가능하여 이행하지 못한 경우
- 라. 수급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 이행이 물리적·시간적으로 불가능하여 이행하지 못한 경우
- 마. 자녀 입양 등 그 밖의 사회통념상 구직활동 의무 이행이 물리적·시간적으로 불가능하여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바. 그 밖의 사유 발생시 그 타당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직촉진수당 50%를 감액 지급하되,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함

* 지급주기의 구직활동을 50% 이상 이행한 경우를 의미

** 총 지급액 360만원(가족수당 포함 시 최대 600만원)에서 감액된 금액만큼 제외하여 조정

- 정해진 구직활동을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전액 부지급

* **예시** 10일 이상 직업훈련(구직활동 2개) + 이력서 제출(1개) + 취업특강(1개)로 '총 4개'를 정한 경우

↳ ① 직업훈련 출석률 80% 미만 + 나머지 모두 이행
⇒ 구직활동 2개 이행 ⇒ 50% 지급

② 직업훈련 출석률 80% 이상 + 이력서 제출 이행 + 취업특강 미수료
⇒ 구직활동 3개 이행 ⇒ 50% 지급

③ 직업훈련 출석률 80% 미만 + 이력서 제출 미이행 + 취업특강 수료
⇒ 구직활동 1개 이행 ⇒ 전액 부지급

5

소득 발생 신고 및 감액·지급 정지 기준

가 소득 발생 신고

1. 신고소득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발생한 ①근로소득, ②사업소득, ③재산소득, ④이전소득과 ⑤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

- 수급자격 인정일부터 소득의 원인행위가 발생한 사안에 한정

예시 4.1.~6.30.까지 근무하였으나 6월 임금체불로 퇴사, 7.15. 취업지원 신청, 8.1. 수급자격 인정, 8.5. 수급자격 통지, 8.25. IAP수립 → 1회차 지급주기는 8.5.~8.25.로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소득 신고필요. 6월분 체불임금이 8.20.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8.1. 수급자격 인정 이전 원인행위(근로)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신고 대상 소득 아님

- ①~④: 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급자격 심사 시 확인하는 소득 항목과 동일. 다만 수급자 본인의 소득에 한정

*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자립지원수당과 같이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 대상 소득에서 제외,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이 일경험 연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⑤프로그램 참여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신고소득에 포함

예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주 30시간 이상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는 경우 주 30시간 이상 근로로 당연 종료사유에 해당하나, 일경험으로 연계하여 계속 지원 가능 ⇒ 이 경우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나 프로그램 수당이므로 신고소득임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수급자(월 250만원 미만 소득 발생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의 소득금액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른 조정률(2부 11-2-나. 소득조사 사업소득 44p 참고)을 적용하여 지급주기 중 발생한 매출(수입)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 확정되므로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에는 현실적으로 확인이 불가, 따라서 매출(수입)에 조정률을 적용하여 소득 산정

2. 소득 발생 신고 시기 및 방법

-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상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제출 시 신청서에 소득 발생 여부 및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액, 소득내용, 소득발생일(기간)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
 - 취업(임금근로자, 자영업, 노무제공자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은 취업일자, 취업형태, 주 소정근로시간, 회사명을 함께 신고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 검토 시 신고소득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모든 신고소득의 합이 7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합이 시행령 제9조의2 제1호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 생략 가능
 - 아울러 재산소득(이자 및 배당금 소득) 및 수급자격 조사 시 확인된 이전 소득(연금 소득)은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소득액을 미신고 또는 적게 신고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

기준금액이란?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의 2배 또는 1인가구 중위소득 60% 중 더 많은 금액

┃ '26년 기준 ┃

수급자별 월 단위 지급액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지급정지 대상 신고소득 기준	1,538,543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신고 대상 소득 기준
 ('24.7.26. 구직촉진수당 지급시 신고 대상 소득 판단기준 시달 참조)

- **〈원칙〉** 수급자격 인정일부터 근로 제공, 사업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등의 원인행위를 행하여 발생한 **모든 소득은 실제 소득이 발생한 날을 포함하는 지급주기 지정일에 신고**
- **〈예외 적용〉** 원래 ①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지만 체불 임금 수령 등과 같이 ②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2회 이상의 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하여 해당 지급 주기의 구직촉진수당에 영향이 있는 경우, 참여자의 분리 적용 요청을 받아 ③당초 지급하기로 한 날을 소득발생일로 반영 가능
 - 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1개월 이상의 정해진 주기를 기준으로 반복 지급되는 소득 & 지급의 주체가 변경되지 않고 동일한 경우 & 소득의 귀속 년, 월 또는 회차를 특정할 수 있는 소득(예: 5월 국민연금, 2회차 훈련수당 등) →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 * 지급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임금, 프로그램 등의 지급회차는 실제 소득발생일을 기준으로 적용
 - ② **(수급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공휴일로 임금 당겨지급, 체불임금 수령,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수당 일괄 지급 등
 - ③ **(당초 지급하기로 한 날)** 임금은 고정적 지급일, 고정적 지급일이 없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수당 등의 경우는 참여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회차 구분이 가능할 때 회차별 지급액으로 분리 적용
- **〈유의 사항〉** 입증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고 입증자료(근로계약서, 사업주확인서, 임금체불확인서 등)가 없으면 실제 소득이 발생한 날을 그대로 적용

나 신고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감액·지급 정지 기준

-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구직촉진수당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감액 지급 또는 지급 정지

신고소득 < 기준금액	구직촉진수당 전액 또는 감액 지급 ※ 기준금액 - 신고소득 = 지급액(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 한도 내 지급)	
신고소득 > 기준금액	프로그램 수당을 제외한 신고소득 > 기준금액	지급 정지
	프로그램 수당을 제외한 신고소득 < 기준금액	0원 지급(부지급)
신고소득 = 기준금액	구직촉진수당 0원 지급(부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횟수가 3회가 되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

* 이때 취업지원 중단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수급 등 모든 취업지원서비스의 종료를 의미



「구직자취업촉진법」상 수급권 철회 및 소멸 등 관련 규정 비교 설명

- (법 제12조제4항, 취업활동계획)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사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 철회 가능
- (법 제21조, 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정지 또는 감액 지급하고, 정지횟수가 3회가 되는 때에는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 지원 중단
- (법 제26조,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지급을 중단한 횟수가 3회가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회차의 지급을 중단한 날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권 소멸
- (법 제27조,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구직촉진수당등을 받은 날부터의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을 취소(법 제28조에 따라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 가능)

- 분할지급을 신청한 경우 및 구직활동 일부 이행으로 감액하는 경우에도 본래의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뺀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예시 분할지급 신청한 경우와 구직활동 일부 미이행으로 감액하는 경우

● 분할지급 신청한 경우

예시 구직촉진수당 월 80만원인 사람이 월마다 소득 120만원이 발생했을 때

- (분할지급 없는 경우) $160\text{만원} - 120\text{만원} = 40\text{만원}$, 구직촉진수당 40만원 지급
- (분할지급 30만원 신청한 경우) $160\text{만원} - 120\text{만원} = 40\text{만원}$, 40만원 한도 내 구직촉진수당 지급 가능하므로 30만원 전액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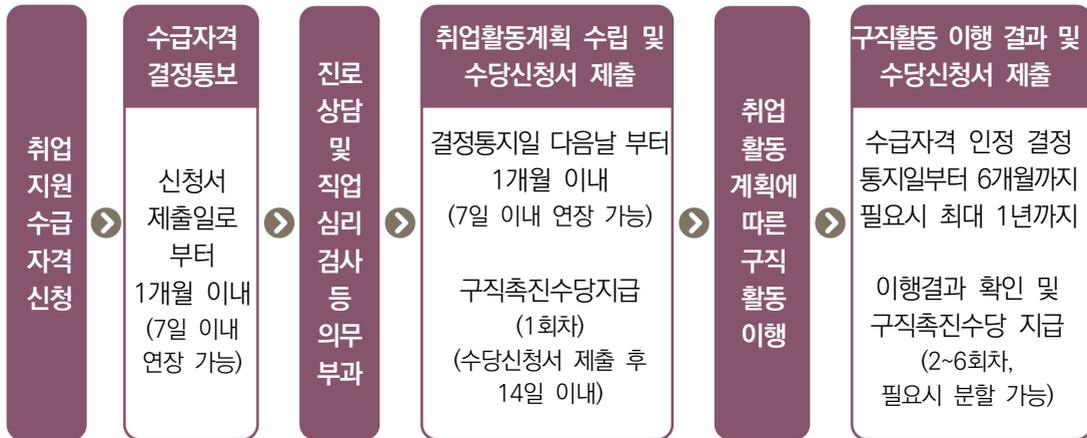
● 구직활동 일부 미이행으로 감액하는 경우

예시 구직촉진수당 월 80만원인 사람이 지급주기 중 소득 140만원이 발생, 구직활동 2회 계획하였으나 1회만 이행했을 때

- $160\text{만원} - 140\text{만원} = 20\text{만원}$, 20만원 한도 내 구직촉진수당 지급 가능하므로 구직활동 일부 미이행에 따른 당초 월지급액의 50%인 금액인 40만원이 아닌 20만원 지급

6

신청 및 지급



1.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일(지정일) 및 지급주기

●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완료된 날

- 1회차 지급주기는 인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까지 이므로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걸린 기간에 따라 1개월보다 짧을 수 있음

● (2회차 이후) 해당 지급주기의 마지막 날

- 2회차 이후 지급주기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월력상 1개월을 주기로 함

* 취업지원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취업지원이 재개된 자의 지급주기는 재참여 일자 기준 월력상 1개월 단위

2. 지정일 변경(연기 또는 당겨 지정)

- (연기) 2회차부터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7일(토요일과 공휴일 불산입)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일을 연기할 수 있음 법 제20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 수급자와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상 지정일을 연기할 수 있으나, 이때 **변경된 지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주기가 새롭게 시작됨**을 반드시 안내

- **(당겨 지정)** 지급주기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등인 경우 수급자와 협의하여 **지급주기 종료일 전 3일 이내로 지정일을 당겨 지정할 수 있음**

- 이는 지급주기 변경 없이 지급신청만 미리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지급주기 전체에 대한 소득 발생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해야 함(**지급주기 종료일 이전에 구직촉진수당 지급 불가**)

- **(유의사항)** 전회 지정일까지 다음 지정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법령에 따른 지정일 변경 사유에 해당*하거나 상담사가 판단하여 지급주기 중 지정일을 변경해야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주기 중 지정일 변경 가능

* 구인자와의 면접,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대한 간호,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 발생 등



지정일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 관련 예시

- **(구분)** 지급주기를 원래 정해진 지정일에서 앞으로 당겨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정해진 지급주기에 변동이 없으나,

- 지급주기를 원래 정해진 지정일에서 뒤로 밀려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급주기가 뒤로 밀려난 기간만큼 변경되고 이후 지급주기도 변경됨

예시 1 지급주기가 2.2.~3.1.인 경우, 3.1.이 공휴일로 수급자가 상담사와 협의하여 지정일을 2.28.로 정한 경우에는 2.28.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는 당초 정해진 2.2.~3.1.이 되나,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활동 의무는 2.2.~2.28. 기간 내에 모두 이행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유의)** 구직활동 2개는 2.2.~2.28. 기간 내에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소득 발생 등 구직촉진수당 지급 제한 사유 확인은 3.1.까지 확인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함

예시 2 지급주기가 5.1.~5.31.로, 지정일이 5.31.이나 5.31. 구인자와의 면접으로 수급자가 지정일을 6.2.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6.2.로 지정일을 변경하면 해당 지급주기는 5.1.~6.2.로 변경됨

- 구직활동 의무이행기간과 소득 발생 확인 기간도 모두 5.1.~6.2.이 되며, 다음 지급주기는 6.3.~7.2.로 다음 지정일은 7.2로 지정됨

3. 신청방법 등

- **(신청 방법)** 지정일에 방문 또는 온라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

- **처리 방법**

- **(방문 제출 시)** 상담사는 ①수급자에게 지급주기 내 이행한 구직활동 증빙자료 (필요시 소득증빙 등)를 지참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②구직 활동 이행내역을 확인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 내용 및 이행결과 내용을 전산입력 등 처리(검토요청)

- **(온라인 신청 시)** 상담사는 ①수급자에게 지급주기 내 이행한 구직활동 증빙 자료(필요시 소득증빙 등)를 첨부하여 지정일에 지급신청서를 작성·제출토록 사전 안내, ②지정일에 제출된 지급신청 내용을 확인 후 유선상담을 통해 구직활동 이행 결과 등을 확인 처리(검토요청)

- **(지급신청서 의무 제출)** 신고소득이 구직촉진수당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직촉진수당 부지급(지급한 것으로 간주) 대상이더라도 소득 발생 여부와 구직활동 이행 여부는 신고해야 하므로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안내

- **(미제출 시)** 신청 행위가 없으면 지급·부지급 처분을 결정할 수 없어, 취업지원 전산망에는 부지급 처분은 하지 않고* 구직활동 미이행으로 해당 지급주기 수급권만 소멸 처리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는 지정일에 수급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수급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므로 신청행위가 없으면 부지급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님

4. 지급 여부 결정

- 지정일에 신청된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 결정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하였는지 ①고용정보통합포털 등을 통해 확인하고, ②그 외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 * 담당자가 이행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공문 발송 또는 유선확인 등 조사 실시
 - 아울러, 이행한 구직활동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인지 확인 철저

- 「허위 구직활동」은 구직활동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으로 부정수급에 해당
 -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한 행위 등
- 「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의사 없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 부지급 대상
 - ①마감된 구인업체에 입사지원, ②단순 명함 제출, ③면접에 합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미취업, ④전화로만 구직활동, ⑤근로조건 변동 등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는 경우, ⑥본인의 취업희망 직종과 무관한 직종에 입사 지원하는 경우 등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신고소득 여부, 취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액 결정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또는 지급 정지 및 중단
 - 구직촉진수당 감액, 지급정지 및 중단, 수급권 소멸 등의 제한 사유 발생시 수급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구직촉진수당 감액 업무처리 절차 및 요령

-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사전에 관련 내용 및 처분 후 이의제기 방법 등을 고지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심사·재심사 청구 등 행정쟁송에 대응
 - 수급자의 의무 불이행 및 신고소득 확인내용, 수급자 의견제시 검토내용, 감액처분 근거 및 결정 내용, 행정절차 처리 내용 등 정리 필요
- ①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정지·중단한 횟수가 3회가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회차의 지급을 정지·중단한 날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나머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권은 소멸됨을 안내
 - 프로그램 수당을 제외한 신고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한 횟수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아니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중단한 횟수는 각각 산정
- ② 구직촉진수당 신청에 대한 지급정지·중단에 따른 부지급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나, 3회 이상의 지급정지·중단으로 수급권 소멸은 권익을 제한한 처분으로 사전에 처분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 이행 후 처분
- ③ 구직촉진수당 지급 제한 및 정지·중단에 따른 수급권 소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Ⅲ

취업활동비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방문상담 참여 시 취업활동비용 지원
 - ①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② 참여장려수당으로 구분
 - 취업활동비용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무매뉴얼 및 별도 시달되는 지침이 지원 기준이 됨

1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 지급대상

- II유형 수급자 중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성실히 참여하여 의무를 이행하고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자
 - 따라서,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등에 참여 중인 자라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 등 법 제2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 각호의 사유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지급

2. 지급액

● (기본 지급액) 15만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은 실비보상적 수당으로써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 다른 유사 사업에서 지원하는 각종 수당과의 중복지급 가능

● (추가 지급액) 소득수준과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고용센터 또는 운영기관 방문횟수에 따라 3~10만원 차등 지급

- 대면 취업특강 및 대면 단기집단상담 2회 이상, 심리안정프로그램 상담횟수 2회 이상,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중 기업탐방(2일 이하)
: <특정계층> 5만원, <청년층·중장년층> 3만원
- 집단상담프로그램,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중 기업탐방(3일 이상)
: <특정계층> 10만원, <청년층·중장년층> 5만원

Ⅰ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지급액 Ⅰ

구분	기본지급액	추가지급액		합계
특정계층	15만원	대면 취업특강·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2회	5만원	20만원
		심리안정프로그램 상담 2회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중 기업탐방(2일 이하)		
		집단상담프로그램	10만원	25만원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중 기업탐방(3일 이상)				
청년층 중장년층		대면 취업특강·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2회	3만원	18만원
		심리안정프로그램 상담 2회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중 기업탐방(2일 이하)		
	집단상담프로그램	5만원	20만원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중 기업탐방(3일 이상)			

-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수료로 인한 추가 지급 시, 해당 프로그램을 취업 활동계획 수립 상담 기간 내 시작하였다면 해당 프로그램 수료일이 취업 활동계획 수립일 이후라도 추가수당 지급

● **(조건부수급자)** 자치단체에서 의뢰된 조건부수급자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하기 전에 자치단체로 이관되는 자**에 대해서는 1일 2만원 지급(최대 6만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간 중 진단평가 상담 등을 위해 고용센터 및 관련기관에 출석한 날에 대해 교통비 및 실비 보상차원

* 1일 2회 이상 출석한 경우에도 1일 최대 지급한도는 2만원

3. 신청 및 지급

- 취업활동계획 수립일에 신청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2. 훈련참여지원수당('26년 폐지)

※ '26년 훈련참여지원수당 폐지로, '25년 취업지원 신청자까지 지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원기준은 기존 업무매뉴얼(2025년 1월) 참고하되, 「국민내일배움 카드 운영규정」 개정('26.1월)으로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 지원과정(금액) 변경

↳ 훈련장려금 외 특별훈련수당이 지급되는 훈련과정은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

3

참여장려수당

1. 지급대상

- II유형 수급자 중 **취업활동계획 수립일 이후**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1회 이상**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집중 취업상담(최소 30분 이상)**을 실시한 자
 - 참여자가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취업활동계획 재진단에 참여하거나, 구인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 코칭 등의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급액

- **취업활동계획 수립일 다음날부터 1개월 단위로 월 1회, 1회 2만원(최대 5회, 총 10만원 한도)**

3. 신청 및 지급

-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종료(중단)되거나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중 5회 집중 취업상담을 실시가 완료된 경우, 일괄 신청을 받아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지급횟수 1회)

IV

취업성공수당

- 취업성공수당은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으로,
 - ① 수급자가 취업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달성한 것에 대해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이며,
 - ②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의 취업의욕을 제고하는 기제이자,
 - ③ 취업상태를 일정 기간 유지시킬 수 있는 근속 유도 기제로서 의미를 가짐

1

지급대상

- I·II유형 수급자 중 취업지원 신청 당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및 II유형 특정계층 수급자로서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 기간(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포함) 내 취·창업으로 종료되고 6개월 이상 근속한 자 중 지급기준에 충족한 자
 - 유예기간 중 취·창업한 경우 취업지원 기간 내 취업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아님
 - '24.2.9. 이전 종료자의 경우 기간만료 종료 후 사후관리기간 내 취·창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

2

지급액 및 지급기간

- 취·창업 후 12개월 동안 근속을 유지한 경우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
 - 취·창업일로부터 6개월 근속 시 50만원(1회차), 이어서 6개월 추가 근속 시 100만원(2회차) 지급

3

지급기준

가 임금근로자로 취업

- **(취업조건)** 주 30시간 이상 근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

① (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일자리를 충족

- 다만, 주 30시간 미만의 불완전 취업상태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동일 사업장에서 주 30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되어 취업으로 종료(3부 Ⅲ-3. 취업지원 종료 104p 참고)되더라도 취업성공수당은 부지급 대상

↳ 그러나, 주 30시간 이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 단순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닌 사업주의 제안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으로 근로조건이 향상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 * 실업상태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주 30시간 미만 근로로 본인 희망 취업종료된 사람이 취업일부터 6개월 이내 주 30시간 이상 근로로 근로조건 변경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근로조건이 변경된 시점부터 근속기간 산정)

②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다만,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취업자는 예외적으로 취업성공수당 지급
-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또는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부지급 대상

- *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대상 일용 근로자

- 공무원 취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은 취업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충족으로 부지급 대상
 - ↳ 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공무원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지급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면 임용일자(출근일) 기준으로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전 **최종 이직 직장**(상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업장에 한함)으로 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시 취업한 경우는 부지급 대상**
 - ↳ 최종 이직 직장은 이직 당시 근무했던 직장을 말하며, 동일 기업(사업)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장소를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른 직장으로 간주

● **(근속기간)** 수급자가 취업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

- ① **(근로조건 변동)** 취업일 이후 근속 중 근로조건(근로시간, 피보험자격 취득 등)이 변경되어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근속기간 산정
- 이 경우,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취업자는 근로조건 변경일부턴 1개월 내 ‘수급자 근로조건 변경 사실 통지서(서식 44)’ 제출하여야 함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속 중 근로조건 변경

- ① 실제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업종료는 실제 취업한 일자로 종료처리하더라도, 고용보험 취득일부터 취업성공수당을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적용
- ② (근속기간 기산점) 변경된 근로조건 적용일 기준
- ③ (후속조치) 근로조건 변경일부턴 1개월 내 ‘근로조건 변경사실 통지서(서식 44)’ 제출* 안내 철저
 - * 기한 내 미제출했다 하더라도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시까지 해당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면 인정

② (연속근로로 사업장 변경 예외 적용) 수급자가 취업 후 전직(자발적 및 비자발적 모두 포함)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변경되어도 다른 사업장(근무 장소)에 연속 취업하여 피보험기간 단절 없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연속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단, 1회에 한함)

* 근로자의날, 토요일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피보험기간 단절이 있는 경우는 연속근로로 인정

- 다만, 아파트 경비직과 같이 위탁업체 변경 등으로 동일업무·동일장소에 근무하며 피보험 단절기간 없이 취득·상실을 반복하는 경우는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사업장 변경횟수에 미포함)

③ (첫 번째 취업 후 이직 예외 적용) 첫 번째 취업 이후 3개월 이내 이직(퇴사)하고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경우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고자 이직한 사업장으로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 이 때 첫 번째 취업 사업장 및 재취업한 사업장 모두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에 충족하여야 하며, 취업자는 재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 이직 및 전직 통지서(서식 45)」를 제출*하여야 함

* 기한 내 미제출했다 하더라도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시까지 해당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면 인정



이직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여부

예시 A사업장에 취업하여 종료처리 하였으나 1개월 미만 근무하다 이직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속 참여하던 중 다시 B사업장에 취업하여 취업종료 처리 하였으나, B사업장에 2개월 근무하고 1개월 이내 다시 C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A사업장 취업은 일용근로로 간주되어 취업종료가 취소되고 이후 취업한 B사업장이 첫 번째 취업에 해당하고, B사업장 취업일 기준 3개월 이내 이직하고 이직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 C사업장에 취업하였으므로 C사업장 기준으로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다만, 이때 B사업장과 C사업장 모두 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주 30시간 근로 + 고용보험 가입 등) 충족해야 함

* 첫 번째 취업 이후 1개월 미만 근무하다 이직(퇴사)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속 참여 신청 가능(이 경우 일용근로로 간주되어 취업종료 취소)하므로 이 경우 첫 번째 취업으로 보지 않음

3부 III-3. 지속참여 107p 참고

- **(취업경로)** 취업은 고용센터 등의 알선에 의한 취업뿐만 아니라, 수급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의한 취업도 인정

*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취업 희망분야나 직종과 일치하지 않은 분야에 취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제한하지 않고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

나 창업

- **(창업조건)** 사업자등록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공간 확보** + 사업 영위를 통한 매출 발생

① 사업자등록

- 업종, 지역, 규모 등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는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전한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은 부지급 대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 코드	분류명	예시
55102(세세분류)	여관업	여관(모텔 포함), 여인숙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요정, 룸싸롱, 한국식 접객주점, 서양식 접객주점, 바(접객서비스 딸린)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주점 클럽
* 생계형 기타 주점업(56213 및 56219: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토속주점)은 제외대상 아님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외상수금대리, 채무자추적서비스, 개인신용도조사 등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무도장, 댄스홀, 콜라텍
9612(세분류)	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이 중, 불건전 터키탕업, 안마시술소 등

- 법인사업자 등록자는 신규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만 지급(기 등록된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로 취임한 경우는 부지급)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상태로 참여한 수급자(영세자영업자, 불완전취업자 등)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소분류 이상의 업종을 추가·전환하거나 기존 보유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소분류 이상이 다른 업종의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창업으로 인정(3부 Ⅲ-3. 취업지원 종료 107p 참고)하므로 이 경우에 한하여 지급 대상

②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공간 확보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리적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하나, 레미콘 기사 등과 같은 노무제공자는 건물 형태가 아닌 **차량(구인 또는 임차)도 전용공간 확보**로 인정

* 독서실, 고시원 등과 같이 고유의 사용 목적이 있는 공간을 사업 장소로 신고하는 경우는 불인정

- 무점포 창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물리적 전용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나, 사업을 영위하여 월평균 250만원 이상 소득이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기간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거나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의 확인(1인 창조기업 확인서)을 받은 경우 전용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

③ 매출 발생

- 사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발생한 자에 한해 지급 가능하나,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도 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자재구매 등 매입액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사업 운영기간) 수급자가 사업자등록 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 사업자(개인 및 법인) 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등록상태 유지를 전제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므로 지급기간 중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 *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사업자 등록일 이후인 경우 사업개시일 기준이며, 2회차는 1회차 지급 시와 동일한 사업체(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 유지를 전제로 지급
- 사업자등록으로 취업 종료(창업) 하였으나 사업 전용공간 미확보 등 취업성공수당에 해당되지 않다가 종료일 기준 6개월 내 전용공간 확보 등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에 충족하게 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충족일부터 사업운영기간 산정

다 노무제공자로 취업

- **(소득 발생)** 취업 종료일 기준 월평균 250만원 이상 소득이 지속 발생
 -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취업일)을 기산점으로 근속기간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
 - ↳ 다만,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이 있더라도 1·2회차 평균(1~12월차)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차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취업성공수당 총 150만원 지급
 - 월 7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의 소득발생으로 불완전 취업상태에서 수급자 본인 희망으로 취업종료 한 경우, 종료일 기준 6개월 이내 월 소득 250만원 이상이 발생* 되면 월 소득 250만원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요건 충족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 * 발생일은 노무제공자 취업종료일 기준에 따라 정해진 일자로 적용
- **(노무 제공 기간)** 수급자가 취업 종료일부터 6개월 이상 노무 제공
 - 계약서의 노무제공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실제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6개월 이상 매월 노무제공에 의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라 고용형태 변경 시

- **(근속기간 합산 적용)** 근로 단절 없이 동일 사업장, 동일 근무장소에서 근무하였으나 고용형태가 임금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로 변경되었거나, 노무제공자에서 임금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각각 고용형태별로 정해진 취업성공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근속기간 합산 적용
 - * 고용형태 변경 근속기간 합산 사업장에서 전직 시 해당 사업장 근무기간은 임금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인정 가능

예시 A사업장에서 근로 단절 없이 임금근로자(주30시간 근로), 노무제공자(월 250만원 이상 소득)로 동일 근무장소에서 근무하고 근로 단절 없이 B사업장 임금근로자(주30시간 근로)로 전직한 경우 A사업장 근무기간은 임금근로자로 보아 A사업장 취업일부터 근속기간 산정

- **(첫 번째 취업 후 이직 예외 적용)** 첫 번째 취업 후 이직 예외 적용은 임금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뿐 아니라 **고용형태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첫 번째 취업 후 이직**

- ① **(기본원칙)** 사업 참여 후 이루어진 첫 번째 취·창업 이후 3개월 이내 이직(퇴사 및 폐업)하고 1개월 이내 재취업(재창업)한 경우에도 재취업(재창업)한 사업장 기준으로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 포함
- ② **(인정기준)** 다음 4가지 요건 충족시 지급대상으로 인정
 - 이직시기: 첫 번째 취업일 기준, 3개월 이내 이직(퇴사 및 폐업)
 - 이직횟수: 첫 번째 이직(퇴사 및 폐업)
 - 신청기한: 이직일 다음날 또는 폐업일부터 1개월 이내 재취업 사실 신청
 - 취업요건: 첫 번째 취·창업 및 재취업(재창업) 사업장 모두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충족
- ③ **(절차)** 이직과 동시에 새로운 취업으로 바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
 - 이직일 다음날 또는 폐업일부터 1개월(월력상) 이내 재취업(재창업)한 경우에는 재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 이직 및 전직 통지서(서식 45)」를 제출*
 - * 기한 내 미제출했다 하더라도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시까지 해당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면 인정
 - 취·창업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이직하고 1개월 이내 재취업(재창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은 마지막 사업장 취·창업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마 기타 지원제도와와의 관계

- 취업성공수당은 저소득층 대상 신속한 취업과 근속을 유도하는 수당으로, '25.1.1. 취업자부터 동일(유사) 목적 다른 지원제도 지원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중복지원 가능

* '24년까지 취업자의 기타 지원제도와 관계는 기존 업무매뉴얼(2025년 1월) 참고

바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 등의 경우 지급 여부

- 임신·출산, 부상·질병·군복무 등 개인의 불가피한 사유 또는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 등 사업체의 불가피한 사유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지 못했으나, 당해 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해당 기간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 이 경우 취업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해당 대상기간 동안 불가피한 사유*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반드시 첨부
 - *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무급휴직기간, 산재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기간 중 무급휴직 기간 등
 - 한편, 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동일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이 단절되는 경우에는 단절기간을 제외하고 전후의 근속기간 합산 후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 사용자가 계속고용을 약속하고 채용서류 보완 및 고용형태 변경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직, 재입사(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및 재취득)한 경우, 안정적 일자리 지원과 근속 유도라는 취업성공수당의 취지를 고려해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 * 인턴제 등 참여를 일경험으로 연계하지 않고 취업지원을 종료한 경우, 인턴제 종료 이후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일정기간 근로가 단절되는 경우(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근속기간이 충족된 경우 수당 지급 가능)
 -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후 채용 절차를 거쳐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의 단절이 발생하였다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4

신청 및 지급

- 취·창업 종료 후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근속 후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은 12개월 근속 이후에 소급하여 일괄 지급 신청 가능하고, 신청 당시 재직(또는 사업운영) 여부와 무관하게 6개월 또는 12개월 근속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
- 첫 번째 취업 후 이직한 사업장으로 취업성공수당 신청 시 재취업 시점에서 '수급자 이직 및 전직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한 후 지급
- **(임금근로자 취업 검토사항)** 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내용의 취득일자, 주 소정근로시간 등으로 판단
 - 피보험자격 취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방법을 안내 하고 추후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
 - *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서식 47),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
 - 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되, 신고가 잘못된 경우 추후라도 환수될 수 있음을 안내
- **(노무제공자 취업 검토사항)** 노무제공 계약서(고용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지속적 소득 발생 여부 확인
 - 원칙적으로 공적기관에서 발급한 자료 또는 그에 준하는 입증자료만 인정하되, 소득을 확인하는 공적자료 확인에 시차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발행하는 거주자별 원천징수영수증(보수지급명세서 등)과 수급자의 통장 거래 내역 등을 교차 비교하는 방식으로 확인



노무제공자 취업성공수당 지급 조정률 적용 기준

- **〈개요〉** 노무제공자로 취업한 사업소득자는 매출(수입)이 선 발생하고 이후 종합 소득신고를 통해 소득이 확정되는 구조로 매출 발생과 소득 확정에 최대 2년의 시차가 발생되므로
 - 고시 제3조제3항에 의거 사업소득자의 매출(수입)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조정률을 병행 적용하여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을 판단
- **〈적용〉** 노무제공자의 취업성공수당 대상 소득 적용 기준은 반드시 국세청 확인 등의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소득 확정에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감안하여 매출(수입)을 확인하는 자료(사업주 발행 거주자별 원천징수영수증 및 보수지급명세서 등 + 수급자의 통장 거래 내역)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소득 확인 가능
 - 조정률 적용은 발생된 매출(수입)에 세금이나 경비 등이 공제되기 전의 원천금액을 기준으로 고시에 따른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으로 환산하여 판단 (단, 공적자료로 소득이 확인되면 조정률을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⑤ 취업성공수당 지급시 확인 서류 및 방법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① 1차 취업성공수당

- 제출서류: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필요시 재직증명서 등 확인)
-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6·12개월 근속여부는 반드시 고용보험 전산망으로 확인

② 2차 취업성공수당

- 제출서류: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필요시 재직증명서 등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내역에서 근속기간 및 재직여부만 확인하여 지급하되, 상실신고에 시차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시 사업장에 재직 여부 등에 대한 유선확인 등 필요

창업한 경우

● 1~2차 취업성공수당 공통

- 제출서류: ①지급 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 ③임대차계약서 등 시설요건확인 가능 서류(1인 창조기업 예외) ④사업을 계속하고 매입 또는 매출이 발생(매월 연속으로 매입 및 매출이 발생하여야하는 것은 아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최근 발행된 세금계산서, 매입 및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1종만 제출

* 매출 및 매입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휴업한 기간등이 있을 경우 부지급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등으로 취업한 경우

● 1~2차 취업성공수당 공통

- 제출서류: ①지급 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③노무제공 입증 증명자료 등(매입·매출 발생 자료, 재직증명서나 활동증명서 등), ④소득금액 증명자료 등
- 조정률을 적용하여 매출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V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등 지급) 방법

1

계좌 입금

- **(원칙)** 수급자 명의의 지정 계좌로 입금
-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용불량 상태 등의 수급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는 **압류방지 계좌인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 가능
 - 「행복지킴이 통장」은 정부지원금 등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외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실업급여 사업도 함께 사용하므로 고용노동부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농협중앙회 등 13개)에서 발급한 **행복지킴이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수급자는 추가 발급 없이 보유 통장 사용 가능**
 - * '24년 8월까지 '구직촉진수당등'만 입금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전용통장인 「취업이름 통장」 운영(취업이름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수급자는 계속하여 보유 계좌로 '구직촉진수당등' 수급 가능)

구분	내용
상 품 명	『행복지킴이 통장』
통장확인	통장 첫 페이지의 “행복지킴이, 압류방지 전용통장” 문구로 확인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통장의 첫 페이지(인감이 날인된 면)에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라는 문구 표시
고용노동부 사업 참여 금융기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아이엠뱅크(대구은행), 신협중앙은행
개설방법	고용노동부 사업 참여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예금주가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서’ 제출
상품내용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취업성공수당 입금 가능 ※ 그 외 행복지킴이 통장 사용 타 정부지원금 입금은 가능하나, 은행이나 개인이 입금하는 것은 제한

2 취업지원 전산망 펌뱅킹 처리

- **(펌뱅킹 개요)** 취업지원 전산망과 펌뱅킹금융기관 전산망 연결을 통해 지급 의뢰 자료 송신, 수급자 계좌 실시간 이체
 - (대상)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민간위탁수수료

● (펌뱅킹 처리 절차)



- **(계좌번호 관리)** 수급자별 수당수급계좌를 별도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수당 신청서 접수 시 수당수급계좌를 전산망에 입력, 계좌 유효성 확인 후 결재 (계좌 여러 건 등록 가능하나, 1일 1개 등록 제한)

* (수당수급계좌) 수당신청서에 표시된 “일반계좌/압류방지계좌” 확인·입력

- **(계좌등록 결재완료)** 지급계좌는 취업지원 전산망 계좌번호 관리에서 계좌 등록 후 결재완료된 계좌만 지정 가능

* (계좌결재) 수급자명과 예금주명이 다른 경우 (팀)과장 결재, 같은 경우 담당자 결재

- **(타인명의 계좌 관리)** 압류방지 통장 도입에 따라 타인명의 계좌 등록·사용은 불가

- **(지급금 지급검토)** 각종 수당 지급신청서 지급 검토 후 담당자가 결재요청

- **(지급금 지급결정)** 담당자가 결재 요청한 신청 건에 대하여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서 팀·과장이 지급금 지급결정(결재)*

* (위임전결규정) ①수당, 비용신청서 처리(담당 전결), ②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등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팀장 또는 과장 전결)

- (지급·재지급 의뢰) 계좌입금책임자*는 지급결정된 건을 펌뱅크금융기관으로 지급의뢰, 지급의뢰 시 금융기관으로 실시간 전송되어 수급자 계좌로 이체
→ 지급의뢰 후 정상지급 여부 확인, 지급실패된 경우 재지급 처리

* (계좌입금책임자) 가급적 지급결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자로 센터별 2인 이내로 지정, 부재시 대행자 지정 가능

- (착오지급금 회수) 담당자가 착오지급금 회수등록 후 팀장 또는 과장 결재
 - ① 당해 연도에 지급된 수당에 대한 반환(여입)은 회수내역 등록 후 OCR지로 고지서 출력·우편송부, 납부내역 확인
 - * OCR지로고지서 상 지로번호는 7006162임을 유의
 - ② 지난 연도에 지급된 수당에 대한 반환(세입)은 회수내역 등록 후 징수요청, 해당 청·지청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정
 - * 취업지원 전산망을 통해 징수관리(고지서 발송, 수납내역 확인 등) 가능



OCR지로고지서 수납금 처리 절차

- ① OCR지로고지서 수납금은 본부에서 관리하는 반환계좌로 입금, 본부에서 국고 여입 회계처리
- ② OCR지로고지서 발행 후 회계연도가 지난 후 수납되는 경우 청·지청 수입징수관이 세입 처리(본부에서 해당 건 별도 통보)

- **(상계처리)** 구직자취업촉진법 제2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반환명령한 수당과 향후 지급해야 할 수당이 있으면 상계 처리
 - 반환명령한 수당이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일 경우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 등의 금액 전액을 충당(당연 상계 처리)해야 하고,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일 경우 수급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처리 가능
 - * 서면으로 수급자의 동의 필요(서식66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 상계처리 신청서)
 - 전산상 상계처리로 반환명령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고 지급으로 처리
 - * **예시** 2회차 구직촉진수당 60만원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명령 대상 → 3회차 구직촉진수당 6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금액은 0원으로 입력하고 지급으로 처리

05

**부정수급
업무처리**

I

부정행위 개요

- **(부정행위의 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은 행위를 말함^{법 제27조}
 - *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말함
- **(부정행위 제재 대상)** ① 취업활동비용^{법 제16조}, ② 취업성공수당^{법 제17조}, ③ 구직촉진수당^{법 제18조}

㉠ 부정행위 관련 용어(법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21.1.1. 시행)
 -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은 것
 - **(부정수금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은 금액
 - **(부정수급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은 자
 - **(지급제한)** 부정수급을 한 경우 그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은 날 이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부정수급 한 수당의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것
 - **(반환명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것
 - **(추가징수)** 부정수금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구직촉진수당만 해당)
 - **(연대책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부정수급 한 자가 다른 자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공모한 자도 부정수급자와 연대하여 책임(총 반환명령액의 공동 납부 책임)을 지는 것
 - **(공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다른 자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이 있는 등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부정행위

- **(벌칙)** 부정수급자 및 공모자에 대하여 처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 **(양벌규정)**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부과

● 부정행위의 성립 및 판단 기준

- **(부정행위의 성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은 경우만 부정행위에 해당되며, 지급받으려고 하는 행위(미수행위)*는 부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대상이 아님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실행에 옮겼으나 구직촉진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고 적발된 경우
-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 수급자의 행위가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①지급받지 않아야 될 수당을 지급받거나 ②지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는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
 - * 실제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거나 사실을 왜곡할 목적으로 은폐하는 행위로 사기, 교사, 문서위조 등과 같은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물론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거짓된 행위를 통한 방법도 포함
- **(사실관계 기준 판단)** 부정행위 여부 판단은 형식이나 계약 내용 및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부정행위 성립 판단 기준 [관련 판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법적 의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훈련생에 대한 비용 신청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3두1980 판결, 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두6105판결)

- (정당한 사유) 행위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음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

예시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결과적으로 지급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친 경우만 부정행위로 판단

⇒ 지급주기 중에 이자소득(그 외 발생소득 없음)이 발생하였으나, 구축수당 지급 신청서에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고 구축수당을 지급 받았더라도 그 이자소득과 지급받은 구축축진수당의 합이 월단위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부정행위 제재 대상이 아님

예시 관련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오류(제3자의 착오)로 인하여 구축수당을 과다 수급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경우로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서 개업연월일을 수급자 신고(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진 기준 포함) 일자가 아닌 착오로 다른 일자로 발급한 경우 구축수당이 과다 지급되었어도 사실관계에 따라서 과다 지급된 기간은 부정수급이 아닌 부당이득에 해당

● 부정행위 주요 유형

유형	부정행위 방법
수급 자격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월 소득 250만원 이상 발생, 창업(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기준) 등의 취업사실 거짓신고 및 미신고 💡 주민등록 허위신고 등 가구원 범위 거짓신고 💡 신청인 및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등 거짓신고 및 미신고 💡 취업경험요건 거짓신고 및 미신고 💡 법 제7조제3항 각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제한규정 관련 거짓신고 및 미신고 💡 재참여 제한기간 관련 취업기간 등 거짓신고 및 미신고 💡 거짓으로 작성된 각종 신청서,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구직 촉진 수당 (I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월 소득 250만원 이상 발생, 사업자등록증 창업 등 취업 사실 거짓신고 및 미신고 💡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필요한 의무이행 관련 거짓신고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소득 발생 거짓신고 및 미신고 💡 구직촉진수당 수급에 필요한 구직활동 의무이행 거짓신고 💡 지정일 변경과 관련된 변경사유 등 거짓신고 💡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급이 중단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 거짓신고 💡 구직촉진수당 수급 관련 거짓으로 작성된 각종 신청서, 증명서 및 확인서 등 제출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과 관련된 거짓신고 및 미신고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취업 활동 비용 (II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월 소득 250만원 이상 발생, 사업자등록증 창업 등 취업 사실 거짓신고 및 미신고 💡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필요한 의무이행 관련 거짓신고 💡 취업활동비용 수급에 필요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행 거짓신고 💡 취업활동비용 수급 관련 거짓으로 작성된 각종 신청서, 증명서 및 확인서 등 제출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활동비용 수급과 관련된 거짓신고 및 미신고 등으로 취업활동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유형	부정행위 방법
취업 성공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형태별 취업성공수당 수급 요건이 되는 취업인정기준 관련 근로시간, 소득수준 등 거짓신고  거짓으로 작성된 각종 신청서,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취업성공수당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성공수당 수급과 관련된 거짓신고 및 미신고 등으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개념 및 제재 기준

- ① (허위 구직활동-부정수급)** 입사지원이나 면접을 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한 행위 등으로 부정수급에 해당

 - 허위 구직활동으로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
해당 구직촉진수당 등을 반환명령하되 추가징수는 면제*
 - * 추가징수 면제는 1회에 한하며 2회부터는 추가징수 대상에 해당

- ② (형식적 구직활동-부당이득)** 이력서를 제출하였거나 방문하여 면접을 진행하였으나 구인이 없는 사업장 또는 자신의 취업희망 분야와 전혀 맞지 않은 곳에 취업의사 없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 해당 지급주기 구축수당 부지급 처리

 - 사후적으로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명령

II

부정행위 예방 노력

- **(필요성)** 부정행위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정책효과를 왜곡시키며, 적발에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
- **(부정행위 예방 노력)** 수급자격 신청 및 심사 단계, 각종 수당(비용) 신청 및 지급 단계 등 전체 업무 프로세스에서 부정행위 예방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제도 안내 철저)** 취업지원 신청 및 초기상담 단계에서 제도 취지 및 수당 지급 기준, 부정행위 사유 및 발생 시 제재 기준 등을 자세히 안내·고지하여 부정행위 발생 사전 차단
 - **(수급자격 심사 철저)** 수급자격 요건 및 입증자료를 철저히 대조 확인
 - **(취업 및 소득발생 엄격 확인)** 구직촉진수당 수급 과정에서 취업 및 소득발생 신고 의무를 자세히 안내,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입증자료 제출 의무화로 수급자의 자기 책임성 강화
 -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수급자 개인별 특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에 근거한 구직활동 이행 여부 확인을 통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발생 차단

Ⅲ

부정수급 조사 실무

Ⅰ 부정수급 조사 및 처분, 반환명령 절차 Ⅰ

① 부정수급 의심	• 의심자 적발, 자진신고, 제3자 신고 등
② 부정수급 조사 및 적발	• 조사계획 수립(생략 가능) • 증거자료 수집 및 확보 • 사업장 방문 및 출석요구 등을 통한 조사
③ 부정수급 조사결과 및 예정된 처분 내용 보고	• 조사결과 및 예정된 처분 내용 보고 (조사보고서 작성 및 내부결재)
④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 의견제출 통지서 발송(공시송달) • 의견 진술 및 청취(「행정절차법」)
⑤ 부정수급 처분 결정 및 통지	•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추가징수 포함) 결정 • 처분 통지서 송부
⑥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서 발부	• 청·지청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정 • 취업지원 전산망에서 납입고지서 발부
⑦ 피보험자격 변동사항 통보 ⑧ 형사처벌	• 조사결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변동 시 • 근로복지공단에 통보 • 형사고발(필요시)

1

조사 형태(유형)

1. 제3자 등 신고(제보)

- 구직자취업촉진법에는 제3자 신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사실 관계에 따른 민원으로 접수하여 조사 가능
- (신고 및 접수) 방문, 인터넷(국민신문고, 홈페이지),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하며, 서면 신고에는 부정행위 신고서(서식 58) 제출*
- * 제보 사건은 본부 및 외부기관의 각종 보고 등의 요구가 많아 별도의 현황 관리 필수(서식 59)

2. 자진신고

- 부정행위자 또는 공모자가 고용노동부장관(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조사 개시 전에 부정행위를 스스로 먼저 신고하여 조사에 착수

3. 의심자 조사(자체 적발)

- 각종 수당 및 비용 지원 과정에서 업무 관련 담당자가 부정수급 의심 내역을 포착하여 자체 조사에 착수
- 직권으로 조사하여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것으로 자진신고가 인정되지 않음

4. 본부(외부기관 포함)의 조사 지시

- 부·정기 감사 지적사항, 감사원 감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사건 이첩 등 부정수급 의심자 조사지시에 따른 조사
-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과 방법, 처분 기준이 제시되며 조사결과는 절차에 따라 기한 내 보고 등

2

부정수급 조사 기법



부정수급 조사 권한 등 법적 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서 구촉수당 지급주기 중 소득발생에 대하여 수급자 및 사업주 등 관련자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부정수급 조사에 필요한 ‘보고 및 조사, 과태료’ 등과 같은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 따라서,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 조사
 - 조사결과에 따른 지급제한, 추가징수 포함 반환명령은 구직자취업촉진법을 적용함에 유의

- 「행정조사기본법」
 - (행정조사의 개념)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함 (법 제2조제1호)
 - (조사방법 및 실시) 출석 및 진술 요구(법 제9조),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법 제10조), 현장조사(제11조), 자료등의 영치(제13조), 조사의 사전통지(제17조) 등

- 「공공재정 환수법」
 - (부정청구등의 개념)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거나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함(법 제2조제5호·6호)
 - (조사방법 및 실시) 조사의 실시 등(법 제13조), 과태료(법 제31조)



부정수급 조사의 기본 원칙

● 부정수급 조사에 임하는 자세

- 부정수급의 진위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관련 증거자료 확보 및 의견진술 등으로 정확하게 조사하여 결과 도출
- 피조사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선입견을 버리고 증거 확보 및 수집에 노력하고, 증거에 의한 부정수급 혐의 입증
- 주변 인물이나 가족에 대한 조사·탐문시에는 부정수급 의심자의 명예 및 신용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 외부 조사 지시나 제보사건 조사에는 제보자의 신원이 피조사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제보자 신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암시나 공개 절대 불가)
- 조사자가 피조사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등 증거력 및 심리적으로 조사에 우위를 점하여 피조사자가 조사를 회피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도망하여 조사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부정수급 조사 유의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확보하되 거소가 다를 경우 실제 주거지 주소와 긴급 연락처 추가 확보
- 부정수급을 인정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부정 행위 사실을 부인할 경우 관련자(공모자, 사업주 등)에게 입증자료 제출 요구 및 출석요구하여 조사
- 현장 조사 시 증거인멸 방지를 위하여 불시 방문이 가능하며, 공무원증 휴대·제시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임을 반드시 사전에 고지(공문 지참하여 제시)
- 부정수급이 명확하나 소재 불명 등으로 우편이 반송된 경우는 공시 송달 등을 통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여 해당 사건을 적정한 기간 내에 종결하도록 과정 관리
- 신고자료 오류로 부정수급 의심자가 된 경우에는 사업장 및 관계기관에 입증자료를 요청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내부복명으로 종료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될 경우 조사 전 사업장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부정수급 적발 및 조사·업무처리 기간 단축
- 자진신고 또는 착오에 의한 반환, 부정수급액이 소액인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출석요구를 지양하고 팩스·온라인 등을 통한 진술서 징구 등으로 간소화 처리 ⇒ 추가징수 면제 및 제재 효력을 충분히 설명

1. 사전 준비

- **(사건 자료 분석)** 부정수급 조사 착수 전(의견진술 요구, 현장조사, 출석요구 대면조사 등) 반드시 사건 전체(부정수급 유형 및 구조)를 분석하고 조사 단계별 대상이나 방법을 사전 파악
- **(자료 준비)** ①취업지원신청서 및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 신청서 등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일체, ②사업주 및 유관기관을 통해 확보한 자료, ③부정행위 의심 내역 관련 각종 정보 자료*, ④부정행위 조사 관련 법적 근거 등을 숙지(준비) 하여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 행태에 따라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 자료, 소득 재산조사 관련 자료, 사보원 연계자료, 고용보험 및 바로원 자료, 4대보험정보 연계자료, 행정정보망공동이용센터 조회 자료, 고용24 및 직업훈련정보망 등 자료

2. 서면 조사

- **(의의)** 부정수급 여부 사실확인이나 적발 등 조사를 위하여 부정수급 의심자 및 공모 의심자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통해 서면 조사를 진행(서식 60)
- **(조사 진행 및 유의사항)** 신분증 확인, 조사 취지나 목적 등을 설명하고 자백의 가능성을 포함한 의사 확인

- **(분리 조사)** 조사 중 다른 사건 관련자와 함께 있는 경우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도 기피하는 심리가 있으므로 사건 관계자와 분리하여 조사 실시
- **(서면 진술)** 부정행위 내용이 단순하고 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 의견진술서(서식 61)에 자필로 부정행위 경위 및 인정 여부를 작성하게 하고, 공모자가 있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문답 형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불필요한 사적 질문 등 금지

*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개인 인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농담이나 불필요한 사적 질문으로 논점을 흐리거나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진술조서 작성 방법

- 질문은 간단하게! 답변은 길고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표현!
 - 표준어로 표기! 필요시 피조사자 표현 그대로 작성!
 - 진술 그대로! 작성자의 주관이나 추측 표현 금지!
 - 피조사자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
 - 피조사자의 고유한 어투를 그대로 표기
 -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표현!
 - 추상적 표현을 자의로 사용하지 말 것
 - 추리적 언사와 사실적 진술을 구별하여 표기
 - 순서에 따라 문맥이 통하도록 작성!
 - 진술이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닌 임의적(자발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명백히 표기!
-
- **(서면 조사 내용 확인)** 진술서 작성 후 피조사자에게 반드시 열람하게 하여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진술서 작성 종료
 - 진술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변경하고, 변경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주장 내용을 진술하여 기재하도록 조치*
 - * 진술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정 과정을 남겨 어떤 부분에 이의가 있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임
 - **(조사 종결)** 피조사자가 확인서 및 진술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조사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진술서에 간인 및 기명날인(서명)하게 하여야 함

3. 현장 조사

- **(유의사항)**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①반드시 2인 이상 동행 출장하고, ②현장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목적 등* 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송달(서식 60)** 하여야 하며, ③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현장조사 출입 시에 내보여야 함(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

* 조사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제출자료,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그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다만,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 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음(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

- **(조사 요령)** 현장조사는 현장 상황에 맞게 조사를 진행하되 가급적 ‘관계자 면담 조사 → 필요서류 열람 및 징구 등 → 사업장 현장 확인 및 확인서 징구 등’ 순서로 조사를 진행

- ①반드시 방문목적은 고지하고 신분증(공무원증) 제시, ②권한이 있는 자(대표이사 등)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되, 부재중인 경우 다음 순으로 권한이 있는 자와 사건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자*가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

* 조사자는 피조사자의 신분증 또는 명함 등을 통해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여 사건과 관계없는 자가 조사에 참여하거나 조사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증거자료 확인)** 조사에 필요한 사업장 관련 서류 열람을 요구하고 부정행위 적발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사본을 징구

* 사건 실체 확인이나 부정행위 적발에 필요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근부 및 근태자료, 입사지원서 등 관련 자료, 세금 신고 자료, 거래처 명부, 매출 관련 자료, 식대 지급 자료, 출입증 발급 대장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능한 원본 서류로 확인한 후 사본을 징구

- 관계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자 PC 등 보관 자료 확인, 사진 촬영, 근로자 등 관계인 면담, 관계자 등으로부터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서면 의견진술서(확인서 등) 징구

* 열람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할 방법이 없으며, 관계자 동의없이 자료를 열람하거나 징구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동의를 받은 후 진행

- **(조사 후 조치)** 조사가 완료되면 사실확인이나 부정행위 적발 등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①확인서 등을 피조사인이 작성하고 기명날인을 받도록 하며, ②필요시 확인자 신분증 사본 징구, ③법적 효력을 위하여 원본대조필 등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음

- **(조사 거부 시 조치)** 피조사자가 확인서 작성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현장에서 거부 내용에 대하여 조사담당자의 자필로 사유서를 작성하는 것도 필요

* 「공공재정환수법」 제31조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진술 번복 대비 증거 확보)** 의견진술서 제출하여 부정행위 일체를 자백하는 경우에도 자백에 대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제출받아 서면 의견진술서에 첨부·간인토록 하여 추후 자백을 번복하는 것에 대비

- **(추가조사 여부 고지)** 현장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아 추가조사가 필요하거나,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어도 공모자 조사 등 세밀한 추가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조사나 출석요구에 따른 조사가 진행됨을 피조사자에게 고지

4. 조사결과 서면 통보

- 현장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부정행위 조사의 결과를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부정수급자, 공모자, 사업주 등)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함 (서식 60, 「행정조사기본법」 제24조)

* 사업주 등과 관련한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도 조사 결과는 반드시 서면 통지

3 부정수급 처분

1. 부정수급 제재

- **(개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은 자는 건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을 저해한 자로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재
- **(행정처분)** 「구직자취업촉진법」에서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로써 ①지급제한 법 제27조, ②반환명령 법 제28조제1항, ③추가징수 법 제2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9조를 규정하고 있음
 - **(연대처분)** 부정수급자와 제3자가 공모한 경우에는 공모한 자도 부정수급자와 연대하여 반환명령(추가징수 포함)에 책임을 짐 법 제28조제3항
-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 제38조제2항
 -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38조를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함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

2. 부정수급 처분 절차

행정절차법에 따른 부정수급 처분 절차 개요

- ① **<개요>** 부정수급 처분과 같이 민원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하여야 함
 - **(절차적 정당성)**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없이 행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심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하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 (절차적 요건으로 당사자가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처분은 그대로 유효)
 - **(재처분 가능)** 처분 취소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처분 취소가 아닌 절차상 하자에 따른 취소로 소멸시효 이내이면 다시 처분 절차를 진행(절차요건 흠결의 위법사유를 시정)하여 처분 가능

- ② <처분의 사전 통지>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전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구체적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미리 통지하여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행정절차법」 제21조, 서식 62)
- ③ <의견청취>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행정절차법」 제22조)
- (의견진술 포기) 당사자가 별도 문서 제출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음(시행령 제14조)
 - * 조사 과정에서 의견진술서 등에 의견진술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별도 문서로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되며,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진술서는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로 인정되지 않음(처분사전통지 문서 송달에 따른 것만 인정)
- ④ <서면 의견제출> 부정수급 처분과 관련된 의견청취는 일반적으로 처분사전통지 후 구술·서면·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며, 일반적으로 민원인은 '의견진술서' 제출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서식 63)
- 다만, 민원인이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해야 함
- ⑤ <제출 의견 반영 여부> 행정청은 민원인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 할 수 있으며, 처분 원인을 제고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27조)
- 민원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을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⑥ <문서 송달> 처분사전통지서 등 문서 송달은 직접교부, 우편,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수취 현황을 파악
-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유치송달과 공고에 의한 송달로 처분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
- ⑦ <처분 방식> 처분은 신속 처분, 문서 통보, 담당자 명시, 이유제시, 불복제기 방법 등의 고지 등이 갖추어야 처분의 명확한 효력이 발생함

3. 지급 제한

- **(개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남은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수당 등의 지급 결정을 취소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 법 제27조제1항
 - **(부당이득과 구분)** 법률상 원인 없는 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실을 주는 부당이득(민법 제741조~749조)과는 구분되며, 행위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정수급이 아닌 부당이득으로 반환명령 법 제28조제4항
- **(지급 제한의 시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날(해당 지정일)부터 지급 제한
 - 다만, ①수급자격 요건(인정 및 유지)과 관련된 부정수급은 최초 부정수급한 해당 지정일부터 지급 제한, ②소득 미신고 및 구직활동 거짓신고에 따른 부정수급 모두 해당 지정일부터 지급 제한
- **(지급 제한의 효력)** 당해 수급자격에 의한 구직촉진수당 등의 수급권은 지급 제한일부부터 모두 소멸*
 - *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은 경우 수당 등을 지급받은 날 이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남은 기간의 수급권이 사실상 소멸됨
 - **(재참여 제한기간)** 부정수급으로 지급제한(지급결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제한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12조

4. 부정수금액 반환명령 및 산정 방법

- **(개요)** 지급 제한 처분과는 별도로 부정수급자 및 공모자가 부정수급 한 금액을 환수하여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처분
- **(반환명령 대상자)** ①부정수급자, ②부정수급 공모자로서 연대책임이 있는 자도 포함

- **(반환명령 대상 금액)**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취업성공수당
 -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급 제한에 따라 지급제한일부터(제한일 포함) 지급된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취업성공수당은 부당이득반환 대상
 -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소득 미신고로 10만원을 더 받은 경우 10만원은 반환명령, 나머지 금액은 부당이득 반환대상

5. 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 **(개요)**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 법령에서 정한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추가하여 반환명령
 - *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시에만 추가징수(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은 추가징수 대상에서 제외)
- **(추가징수 반환명령 대상자)** ①부정수급자, ②부정수급 공모자로서 연대책임이 있는 자도 포함
- **(추가징수 금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추가징수하는 금액은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반환명령 금액과 같은 금액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추가징수 대상 부정행위 유형)** ①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경우, ②취업 확정 또는 취업 중인 사실을 숨기고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③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④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제한되는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또는 거짓 구직활동 신고로 부정수급이 2회 이상인 경우(2회부터 추가징수) 등
- **(추가징수 면제)** ①자진 신고한 경우, ②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제한되는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또는 거짓 구직활동 신고로 부정수급을 처음으로 한 경우*, ③제3자의 폭행·협박 또는 부당한 강요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

- * ‘처음으로 한 경우’ 예시: 총 4회 구족수당을 지급받았으나 1~4회차 모두 허위 구직활동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부정수급을 처음으로 한 경우’는 1회차 구족수당에 한정하여 1회차 구족수당 부정수급액은 추가징수 없이 반환명령하고 2~4회차 구족수당 부정수급액은 추가징수하여 반환명령
- * 수급자격과 관련된 부정행위(취업종료 사유 등)는 구족수당 지급중에 발생하더라도 ‘소득 거짓신고나 구직활동 거짓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1회차 부정행위부터 추가징수 대상에 해당임에 유의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반환명령 산정 예시

일반적인 처분 기준

- (처분 기준) ①부정수급액 반환명령, ②부정수급액 1배 추가징수 반환명령, ③부정수급 기간이 아니어도 지급 제한일부터 지급된 수당 등 반환명령, ④부정수급으로 인한 종료는 재참여 제한기간 5년 적용 등
- (수급자격인정 부정수급) ①거짓된 방법으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으로 지급된 구직촉진수당 등 전체 반환명령, ②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반환명령, ③남은 기간 수당 등 수급권 소멸
- (구직활동인정 부정수급) ①거짓된 방법으로 인정받은 해당주기 기간의 구직촉진수당 등 반환명령, ②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반환명령(처음인 경우는 추가징수 면제하고 2회째부터 추가징수), ③구직촉진수당이 감액 지급될 경우 지급제한에 따라 부정수급 기간이 아니어도 지급된 금액은 반환명령, ④남은 기간 수당 등 수급권 소멸
-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①부정하게 지급받은 취업성공수당 반환명령(추가징수 없음)

예시 4회차 수당까지 지급된 상태에서 취업지원 신청 당시부터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취업 사실을 숨기고 부정수급(기 지급액 60만원 × 4회)

» 수급자격인정 부정수급으로 ①1~4회차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액 반환명령(240만원), ②부정수급액 1배 추가징수 반환명령(240만원), ③총 반환명령액 480만원, ④5~6회차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예시 4회차 수당까지 지급된 상태에서 2회차 지급주기 기간 중에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사실을 미신고하고 2~4회차 구축수당을 지급받은 후 5회차 지급주기 중에 취업사실이 적발됨(기 지급액 60만원 × 4회)

≫ ①3~4회차*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액 반환명령(120만원), ②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반환명령(120만원,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추가징수 대상), ③총 반환명령액 240만원, ④5~6회차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 취업종료 사유에 해당되는 안정된 일자리 취업을 미신고하여 거짓된 방법이 포함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2회차 지급 주기 중에 취업사실 미신고한 행위가 2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없음

↳ 2회차 지급주기 중에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취업 자체를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여 수당 수급 사유에 해당

1회 부정행위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는 처분 기준

- (추가징수 면제) ①구직활동 이행 내용을 거짓 신고하거나 ②법 제21제1항에 따른 소득발생을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하여 발생된 부정수급이 처음인 경우에는 추가징수 면제(1회째에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나 2회째부터는 추가징수 대상)

예시 (소득미신고) 1~3회차 기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이 4회차 지급과정에서 1~2회차 수당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60만원 × 3회)

≫ ①1회차 수당은 부정수급액으로 지급주기 전체 반환명령(60만원), ②2회차 수당은 지급주기 전체 부정수급액과 부정수급액의 배액 추가징수액을 포함하여 반환명령(120만원), ③3회차 지급액은 부정수급이 아니어도 1회차부터 지급 제한이 적용되어 3회차 지급주기 전체 금액 반환명령(60만원), ④4~6회차 수당은 수급권 소멸

⇒ 총 반환명령액(240만원): 부정수급액(1~2회차, 120만원) + 추가징수액(2회차, 60만원) + 지급제한 기간 이후 지급액(3회차, 60만원)

예시 (구직활동 이행 허위신고) 구직촉진수당을 6회차까지 지급받고(60만원 × 6회) 수급이 종료된 수급자가 1회차와 3회차 수당이 각 허위 구직활동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 » ① 1회차 수당은 추가징수 없이 지급주기 전체 부정수급액만 반환명령,
- ② 3회차 수당은 지급주기 전체 부정수급액과 부정수급액 배액 추가 징수액을 포함하여 반환명령, ③ 2회차 및 4~6회차는 부정수급이 아니어도 1회차부터 지급 제한이 적용되어 2회차 및 4~6회차 지급 주기 전체 금액 반환명령
- 총 반환명령액(420만원): 1회(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60만원) + 2회(지급제한에 따른 원금 반환 60만원) + 3회(부정수급액 + 추가징수액 120만원) + 지급제한일 이후 지급액(4~6회차, 180만원)

■ **감액 지급에 따른 부정수급 처분 기준**

● **(부정수급액 산정 기준)** 거짓된 방법으로 지급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부정수급에 해당. 따라서 구직촉진수당 감액 지급에 따라 소득 발생 사실을 일부 거짓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거짓된 방법을 통해 받은 금액의 차액만큼이 부정수급액에 해당되고, 나머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환수 대상에 해당

예시 가족수당을 포함하여 9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1~6회차 모두 지급받은 이후 1회차 및 2회차 각 지급주기 중에 5번의 일용근로가 있었으나 각 4번의 일용근로만을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1회차〉 실제 소득발생액(5일) 100만원, 신고액(4일) 80만원 → 구직촉진수당 90만원 지급
 〈2회차〉 실제 소득발생액(5일) 120만원, 신고액(4일) 85만원 → 구직촉진수당 90만원 지급

- » 소득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 따른 부정수급으로 ① 1회차 부정수급액 10만원(90만원^{소득 허위신고로 지급받은 금액} - 80만원^{정상적으로 신고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 ② 2회차 부정수급액 30만원(90만원 - 60만원), ③ 추가징수액 30만원 (2회차 부정수급액, 1회차는 면제), ④ 해당 지급주기 반환액 140만원 (1회차 지급액 중 부정수급액을 제외한 80만원 + 2회차 지급액 중 부정수급액을 제외한 60만원), ⑤ 지급제한일 이후 지급액 360만원 (수급권 소멸에 따른 3~6회차, 90만원 × 4회)

6. 연대책임

- **(개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른 자와 공모한 경우, 그 공모한 자도 그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법 제28조제1항(부정수급액 반환) 및 제2항(추가징수액 반환)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함
- **(연대책임을 지는 공모자)** 공모자가 부정행위로 이익을 얻었는지 불문하고 공모자가 공동 범행, 허위신고·보고 또는 증명 등의 방법으로 부정행위에 공모한 경우 적용
- **(연대 반환명령 업무처리)** 부정수급자와 공모자에게 총 반환명령액의 납부를 각각 명령하고 어느 일방이 납부한 금액은 총 반환명령액에서 감액 처리*

* 연대책무는 객관적으로 단일한 목적(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의 납부)을 가지기 때문에, 부정수급자에 의한 것이든 공모자에 의한 것이든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의 납부가 완료되면 양자의 채무는 소멸



연대책임 관련 법령: 민법

- ① **(제413조, 연대책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책무로 한다.
- ② **(제414조, 각 연대책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책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책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연대책임 적용 사례

- ① **(사업주 피보험자격 미신고)** 부정수급 조사 결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당연 취득 대상이나, 사업주가 구직촉진수당 수급 사실을 알고(수급자의 부탁 또는 부탁을 받지 않아도 임의적 판단으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누락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공모자로서 연대책임 대상자에 해당
- ② **(지인과 공모하여 허위 구직활동)** 부정수급 조사 결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이행한 것으로 지인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적발되면, 지인이 공모자로서 연대책임 대상자에 해당

7. 자진신고자의 처리

- **(개요)** 부정행위자 또는 공모자가 고용노동부장관(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부정행위를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말함
- **(자진신고 여부 판단)**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부정행위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신고된 것으로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 자신의 부정행위를 모두 밝힌 경우에 인정
 - *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관련 담당자가 부정행위 관련자에게 송부한 부정행위 관련 조사를 위한 통지가 도달하기 전을 말함
- 부정행위 관련자 어느 일방에 통지가 도달하면 다른 상대방에게도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석요구,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한 이후에는 자진신고로 인정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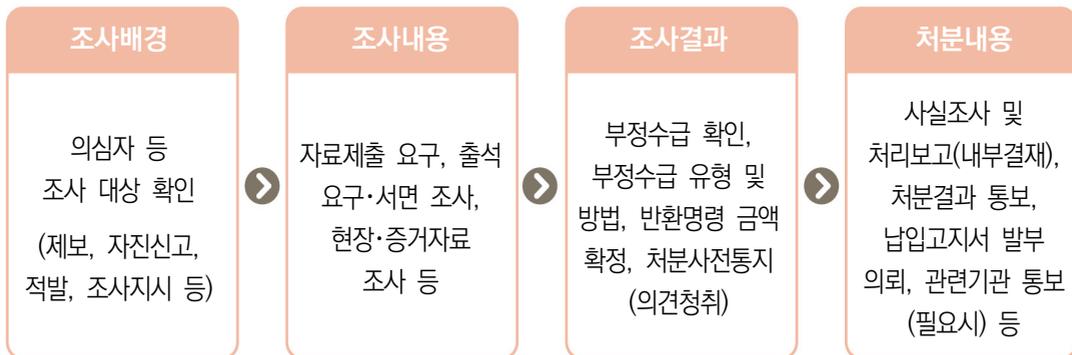
자진신고 관련 용어의 개념

- ① **(조사 착수)**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담당자가 부정행위 의심 내용에 대하여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부정수급 조사 관련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하는 것을 말하며, 부정행위 관련자의 수취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님
 - ② **(업무 관련 담당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 취업지원 상담, 취업성공수당 지급 등 업무 담당자로 민간위탁기관 및 연계협업 기관도 포함
 - ③ **(부정행위 관련자)** 각종 수당·비용 수급자 및 고용한 사업주(소속 근로자 등 포함), 부정행위를 공모한 제3자, 연대책임이 있는 자 등
- **(자진신고 효력)** ①추가징수 전액 면제^{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 ②형사고발 유보 (단, 공모형 부정수급은 제외)
 - 법규상으로 자진신고는 **추가징수만 면제**될 뿐, 지급 제한(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대상은 면제 없이 모두 적용됨
 - **(공모사건 적용)** 2인 이상이 공모한 부정행위에 어느 1명만이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사건 자체를 자진신고로 연대책임 면제 처분도 가능

4 조사결과 보고 및 조치

1. 사실조사 및 처리결과 보고

- 「부정수급 사실조사 및 처리보고(서식 65)」에 ‘조사·증거서류, 의견청취서, 그 밖의 자료 등’을 첨부하여 보고*(내부결재)



* (위임 전결) 부정수급 금액이나 공모사건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청 국민취업지원과는 과장 전결, 그 외 지청 내 센터는 팀장 전결로 진행

- **(착오지급액 반환)** 부정수급 조사결과 부정수급이 아닌 행정착오 등의 사유로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으면 그 지급금을 반환명령하고 조사를 종결 하여야 함 법 제28조제4항

2. 처분 통지

- **(송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처분 즉시 처분 대상자에게 각 결정서·반환명령서·통지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여야 함
 - ①구직촉진수당 미지급 결정서(별지 제12호서식), ②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지급결정 취소 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 ③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명령서(별지 제15호서식), ④취업지원 종료 통지서(별지 제16호서식)

-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서 발부 의뢰)** 반환금액을 전산망 내 부정수급 처리 내역에 입력하고 지방관서 징수관에게 반환금액에 대한 징수결정과 납입 고지서 발부를 신속히 의뢰
- **(반환명령액 납부)** 반환명령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이 발부한 납입고지서를 통해 반환명령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일시납부가 원칙**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 다만, **납부액이 구직촉진수당 월 단위 지급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자와 **협의하여 3회(1회당 각 납부기한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허용**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및 고시 제11조
- * 기본수당만 받는 경우 60만원, 가족수당 추가 수급자의 경우는 추가 금액 합한 전체 월 단위 지급액으로 함
- **(이의제기 절차 안내)** 부정수급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추가징수 포함)은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반드시 심사청구, 행정쟁송 등을 통한 이의 제기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함

IV

행정사항 및 사후조치 등

1

종료일 및 재참여 제한기간 적용

- **(종료일)** 부정행위 지급제한 처분에 따른 지급결정 취소로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이 취소된 날(부정수급 처분일)이 종료일이 됨
법 제29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6호
 - 다만,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 부정수급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종료사유에 따른 종료일이 그대로 유지됨
- **(재참여 제한기간)** 부정행위 지급제한 처분에 따른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의 재참여 제한기간이 적용됨^{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①취업지원서비스 기간중에 부정수급 처분은 처분일이 종료일로 처분 결정이 있는 날(처분일)부터 적용되며, ②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이후 부정수급 처분도 그 결정이 있는 날(처분일)부터 적용됨

* 예) '21.10.20. 취업지원서비스 기간만료 종료, '23.9.25. 부정수급 적발·처분 ⇒ 재참여 제한기간은 그 처분 결정이 있는 날인 '23.9.25.부터 5년이 적용됨

2

부정수급 조사업무 사후조치

- **(소멸시효)**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별 제24조}
 - **(시효 기산일)**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은 날(초일 산입)부터 3년, 3년이 도과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분하여도 반환을 명할 수 없음
- **(과태료)** 구직자취업촉진법에는 조사거부 등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으나,
 - 「공공재정환수법」 제31조의 과태료 규정을 준용, 부정수급 조사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가능**
 - * 부정수급 조사와 관련하여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
 - ** 「공공재정환수법」 제13조제1항 위반 내용을 내부복명으로 정리하고 동법 시행령 제30조(별표 2)에서 정한 부과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 부서에 과태료 고지서 발부의뢰로 부과 및 징수
- **(형사고발)** 구직촉진수당 등 부정수급자 및 공모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모두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됨
 - **(대상)**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형사처벌 대상여부의 판단은 부정행위 방법(고의성 여부 포함), 공모자 유무, 부정수급액 정도, 사회적 물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판단
 - **(방법)** 형사처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경찰서 등)에 형사고발(별도 고발장 작성) 하여야 함

- **(수사의뢰)** 부정수급자 및 공모자 등이 부정수급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의뢰를 통해서 부정수급 적발 및 형사처벌 가능

* 부정수급이 상당히 의심되나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불응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행정조사 권한으로는 조사의 어려움이나 한계가 있는 경우

- **(방법)** 수사의뢰자(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는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배경 및 대상자(부정수급자, 공모자, 제3자), 부정행위 내용 및 방법, 그간 조사한 내용, 부정수급액 및 반환명령액 등 처분 예정 내용, 부정행위 제재 및 형사처벌 근거 규정 등을 포함하여 공문으로 수사의뢰
- **(후속조치)**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수사결과를 회신받아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에는 신속히 부정수급 처분 및 반환명령 진행



형사고발과 수사의뢰 구분

- ① **(형사고발)**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한 후에 사법상 제재를 요구하는 법률 행위로서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 ② **(수사의뢰)** 수사의뢰는 법률용어는 아니며 수사기관에 각종 사무를 의뢰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부정수급 처분 전에 부정수급을 적발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나 사법상 제재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님

- **(법규 위반사항 등 통보)** 부정수급 조사 결과 각 행정기관의 법규 위반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행정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통보)** 특히, 부정수급 조사 결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변동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함

* **예시**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로 취업하였으나 취업사실 미신고(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미신고)로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미신고 사실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통보

3

부정수급 조치 현황 관리

- (전산 운용) 취업지원 전산망에서 부정수급 조사 및 결과, 반환명령 등 조치에 필요한 입력 등 전산 관리 가능
 - 부정수급 처분 및 반환명령 현황은 전산으로 관리하며 필요시 별도 대장으로 관리(단, 제보 사건 처리 현황은 별도 대장 관리 필요)

● 행정조사기본법

❖ 제9조(출석·진술 요구) ①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의 출석·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일시와 장소
2. 출석요구의 취지
3.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4. 제출자료
5. 출석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사대상자는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출석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출석한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원은 조사대상자의 1회 출석으로 당해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일시와 장소
2. 조사의 목적과 범위
3.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4. 보고거부에 대한 제재(근거법령 및 조항 포함)
5.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제출기간
2. 제출요청사유
3. 제출서류

4. 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5.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현장조사)** ① 조사원이 가택·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등에서 현장조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7.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사대상자(대리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동의한 경우
 2.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의 법령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② 행정기관의 장이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출석요구서등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의견제출)** ① 조사대상자는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 **제24조(조사결과와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 ❖ **제6조(출석요구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사대상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일시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받은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결정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송확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 **제13조(조사의 실시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거나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서류·시설·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자료제출의 요구 및 제2항에 따른 출입 등의 방법·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제1호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한 행정청이 부과·징수한다.

06

**조건부수급자
운영지침**

I

운영 개요

1

추진배경

-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위해서는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고용-복지 연계 체계 구축 필요
- 근로능력이 있고, 취업의지 및 취업가능성이 높은 빈곤계층은 고용센터(국민취업 지원제도 II유형)에 의뢰하여 일반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2

단계별 운영 방안

- **(자치단체) 조건부수급자 고용센터 선별 의뢰**
 - 자치단체는 자활사업 배치가 필요한 모든 조건부수급자(신규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사업 재배치가 필요한 기존 조건부수급자*)에 대하여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 85점 이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으로 의뢰
 - * 자활역량평가 점수 85점 미만인 경우에도 조건부수급자가 원할 경우 의뢰 가능
 - 행복e음 시스템 상에 자활역량평가점수 및 상담내용, 특이사항 등을 기입 후 고용센터 의뢰
 - *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자활근로 등 자활사업 유형 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
 - ** 조건부과유예 및 조건제시유예자는 고용센터 선별의뢰 대상에서 제외
 - ↳ 다만, 조건부과유예 및 조건제시유예 사유가 해제된 시점에는 자활역량평가 실시 후 의뢰 가능

●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참여 결정 또는 자치단체 재이관**

- **(취업가능자)** 취업의욕 및 능력이 높아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특정계층, 고용센터 전담 상담)으로 서비스 제공
- **(자치단체 이관자)** IAP 수립 전 진단회의를 실시하여 개인·가구여건 등으로 인한 취업장애요인이 단기적으로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자치단체로 재이관

* 고용센터는 진단회의 후 지자체 재의뢰 시 재의뢰 사유, 그간의 상담이력, 진단회의 결과 등을 함께 지자체로 송부

** 지자체는 재의뢰자를 대상으로 자활지원계획수립 상담 등을 실시하여 자활근로 등 특화사업에 배치

Ⅰ **지자체 조건부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뢰 프로세스** Ⅰ



II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운영

1

조건부수급자 고용센터 선별 의뢰

- **(자치단체 자활역량평가 실시)** 자치단체(자활·복지담당 공무원 등)에서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지원계획수립 상담을 실시하고 자활역량평가 실시
 - 자활지원계획수립 상담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지자체 자활근로사업 등 안내
 -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자활역량평가 실시
- **(고용센터 의뢰)** 자활역량평가 결과 평가점수 85점 이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의뢰
 - 다만, 평가점수 85점 미만인 경우에도 조건부수급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원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의뢰 가능
 - 조건부수급자 고용센터 의뢰 시 서비스 진행 내용, IAP 수립 전 진단회의 실시 후 자치단체로 이관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
 - *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담당 공무원)는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계획수립상담 내용(학력, 건강상태, 직업이력, 가구여건, 자활사업 참여 및 복지서비스 수혜 이력 등)을 고용센터 담당자와 공유
- **(장애인·출소자)** 장애인·출소자인 조건부수급자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련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법무복지보호공단)에 이관 조치

- **(의뢰취소)** 자치단체에서 고용센터로 의뢰하였으나, 실제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되어 초기상담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는 ‘의뢰취소’로 처리
 - 고용센터는 2회 이상 참석 요청 통지 후, 미참여자에 대해 자치단체로 ‘의뢰취소’ 요청
 - 자치단체는 고용센터 ‘의뢰취소’ 요청을 토대로 행복e음 전산에서 의뢰취소 처리
 - 자치단체는 의뢰취소자에 대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토록 배치
 - * 자활지원계획 수립 등 상담불응시 상담에 응할 것을 촉구하되, (1·2차 통지서 송부)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자활사업 지침에 의거 조건불이행 처리

2

고용센터 의뢰 이후 세부 운영지침

1 상담방법

① 초기상담(1회차)

- 초기상담(1회 30분 이상)을 통해 취업장애요인 등 개인특성을 판단하고, 일을 통한 자립과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단
- 심리적 측면(자존감, 사회성, 의욕수준, 심리적 안정감 등)을 파악하여 의욕 증진 필요사항 진단
- 생활 패턴(일상 생활시간 및 생활패턴, 언어 및 습관적 행동, 음주·가족생활 등)을 파악하여 개선 필요사항 진단
- 취업에 있어 주요 장애요소(양육, 부양, 치료, 주거 등)를 파악하여 개선 및 지원 필요사항 진단

② 심층상담 및 취업가능성 진단(2회차)

- 초기상담 이후, 심층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취업 의욕·역량 및 취업 준비를 위한 기초 여건 등을 중점 파악
 - 심층상담(2회차 상담)과정에서 참여자의 취업가능성을 진단하여 자활 경로 설정 가능
 - ① 취업의욕과 역량이 높으며 조기에 일반노동시장 취업의사가 있는 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제공
 - ② 참여자의 취업 준비를 위한 기초 여건 미비 등으로 취업역량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진단회의 개최 후 자치단체 재이관

③ 상담 및 구직활동 의무 부여

- 조건부수급자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에 준하여 적극적인 구직노력 의무 부여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시까지 아래 취업지원서비스를 월 각 1회(총 2회) 이상 진행
 - ① 월 1회 이상 유선 또는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상담을 통한 구직의사 점검
 - ② 월 1회 이상 IAP수립시 수급자가 참여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 등을 결정하여 구직활동 의무 부여
- *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통보, 조건부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수급이 중지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철저하게 관리

2 자활경로 설정

- **(기본방향)** 취업역량평가 점수 및 초기상담 결과 등을 활용하여, 고용센터 담당자와 자치단체 담당자 등이 진단회의를 통해 합의제로 최종 자활경로 설정
 - 다만, 심층상담 결과 취업의욕 역량 및 취업가능성이 높은 자로 진단되는 경우 별도 진단회의 생략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



진단 회의 절차

① 개최 시기

- 지자체에서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기상담을 실시하고,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3주(21일) 이내에 2회 이상 상담 후 진단회의 개최

② 구성

- 국민취업지원과장(위원장), 고용센터 담당자, 자치단체 자활·복지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
 - * 직제상 국민취업지원과 과장이 없는 고용센터는 고용센터소장 또는 국민취업지원 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

③ 평가

- 취업역량평가지, 참여기간 중 제공한 서비스 내용, 상담 내용, 취업장애요인 해소사항, 직업선호도검사 해석결과 등을 진단회의에 제출
- 고용센터 담당자,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등) 의견, 취업역량평가 점수 등을 종합하여 합의제로 최종 자활경로 설정

- **(최종 자활경로 설정)** ①취업가능자, ②자치단체 이관자의 2가지 유형으로 최종 자활경로 설정

⇒ ① **(취업가능자)** 취업의욕 및 능력이 높아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제공

② **(자치단체 이관자)** 개인·가구여건 등으로 인한 취업장애요인이 단기적으로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자치단체로 재이관

- * 자치단체 이관 사유는 ① 취업의사 없음, ② 개인의 건강상 이유, ③ 가구여건, ④ 기타를 선택하여 입력하되, 사유가 중복으로 나타나는 경우 모두 선택하여 입력

● **(결과 입력)** 자활경로 설정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반영

* 종합의견란에 판정결과, 이관 사유, 필요한 서비스, 기타 의견 등을 상세하게 입력
(고용센터 담당자 및 자치단체 담당자 공동 기재)

** 자활경로 설정 결과 통보 시 판단에 활용된 자료(서식 53, 진단 평가표, 서비스 제공내역 등) 및 그간의 상담이력 등을 자치단체와 공유

3 서비스 중단 및 참여 제한, 수당 지급

① **중단**

● 진단회의 전 참여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참여자에게 서면 통지 및 자치단체 이관

- ① 참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초기상담을 거부하거나 상담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 ② 형식적인 참여 등 취업할 가능성이 없고, 중단조치 할 수 있음을 통지한 후에도 개선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치단체는 고용센터에서 중단처리되어 이관된 참여자에 대해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토록 배치

- 자활지원계획 수립 등 상담 불응 시 상담에 응할 것을 촉구하되(1·2차 통지서 송부)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자활사업지침에 의거 조건불이행 처리

● 중단 처리시에는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등)와 긴밀히 협의 하여 결정

* 중단 처리 시 자치단체에 중단 사실 통보와 함께 그 간의 서비스 제공 내역, 상담 이력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자치단체와 공유

② 참여제한

- 이관자(의뢰취소자)는 이관일(의뢰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고용센터로 재의뢰 금지
 - 다만, 취업장애요인이 해소되어 자치단체(자활담당 공무원 등)에서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센터와 협의 후 참여 조치 가능

③ 진단평가 참여수당 지급

- IAP수립 전 자치단체 이관이 결정된 자가 진단평가 상담을 위해 고용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출석한 날에 대해서는 교통비, 식비 등 실비 보상 차원에서 1일 2만 원의 참여수당 지급(최대 3회 총 6만원 한도)
 - * 1일 2회의 상담 또는 서비스에 참여하더라도 2만원만 인정
 - ** IAP 수립자의 경우는 참여수당(최대 25만원)만 지급(진단평가 참여 수당과 중복 지급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 IAP 수립 전, 이관 또는 중도탈락자는 참여수당 미지급(진단평가 참여수당은 지급 가능)

④ 취업성공수당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에 참여한 조건부수급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취·창업한 경우에 지급 대상
 - * 조건부수급자의 특성 상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만료 후 다른 자활경로 수립을 위하여 사후관리기간 운영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만료 후 3개월(사후관리기간) 내 취·창업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이 됨

4 사업 운영 모니터링 지속 실시

- **(고용부·복지부)** 조건부수급자 현황 및 배치결과, 자활근로·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현황 등을 바탕으로 수시 점검 및 정보 연계
 - * 필요시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고용센터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애로사항 개선 지속
- **(지자체)** 개별 수급자에 대해 고용센터 의뢰현황, 기존 자활사업 참여 유형, 지자체 재의뢰 현황 등을 별도 관리
 - 지자체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추진실적을 정리하여 보건복지부 보고, 보건복지부는 고용노동부와 추진실적 공유·공동 관리
-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 대한 상담 이력 등 진행 현황을 해당 지자체와 공유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 대한 진행 상황 등 이행 현황에 대하여는 취업지원 전산망을 통하여 자치단체 매월 통지
 - 특히,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불이행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통보하여 생계급여 지급 등에 참고하도록 관리 철저

07

**2026년
「청년 특화
취업지원프로그램」
시행 지침**

I

사업 개요

1

추진 목적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빈일자리 구인난을 지원하기 위하여 II유형 청년 대상 빈일자리 취업지원 프로그램 시행('25.1월~)

2

주요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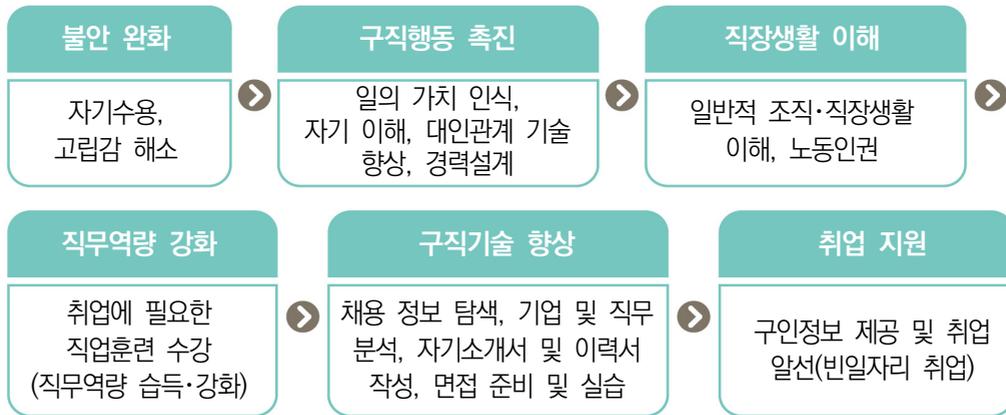
- **(지원대상)** '24. 1. 1. 이후 참여하여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및 빈일자리 업종(기업)*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한 II유형 청년
 - * 제조업, 제조업 외 8개** 업종은 범부처 일자리TF 추천기업 2,737개소
 - **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 **(지원내용)** 훈련참여 지원수당[최대 월 20만원, 6개월(120만원)] 및 취업성공 수당(40만원) 지원

3 프로그램 운영 체계

- 빈일자리 업종(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참여자*의 구직 의지·역량, 상황, 필요성 등에 따라 개인별 지원프로그램 계획(IAP)을 수립하여 운영

* 수급자격 인정 및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의사 확인

Ⅰ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프로세스 Ⅰ



※ 단계별 지원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원하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엔 지원에서 제외

Ⅰ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프로그램 내용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 Ⅰ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내용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
불안 완화	• 자기 수용고립감 해소	마음톡톡심플 심리안정프로그램
구직행동 촉진	• 일의 가치 인식, 자기 이해, 대인관계 기술 향상, 경력 설계	청년총 직업지도 프로그램 (CAP@), 청년취업 GYM
직장 생활 이해	• 일반적 조직·직장생활 이해, 노동인권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청년), 단기 취업특강
직무역량 강화	• 빈일자리 업종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수강 (직무역량 습득 및 강화)	직업훈련
구직기술 향상	• 채용정보 탐색, 기업 및 직무 분석,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및 실습	온택트 취업컨설팅 청년취업 ON
취업 지원	• 빈일자리 취업	구인정보제공, 취업 알선

4 '26년 주요변경 사항

		'25년	'26년
직업 훈련	지원기간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 대상 훈련시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6개월
	수당지급 단위기간 출석률	직업훈련 과정 수료 및 단위 기간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위 기간별 수당 산정은 단위 기간별 출석률에 관계없이 실제 출석 일수로 산정하여 지급

5 행정 사항

- '26년 신청자('25.7.1. 이후 취업자)부터 동 지침을 적용하고, 종전 참여자('24.1.1. 이후 수급 자격 인정, '25.1.1.~6.30. 취업자)는 '25년 지침을 적용

II

세부 지원요건

1 지원요건1(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청년(특정계층 포함)
 - * I 유형 청년층(요건심사형, 선발형 특례)은 신청 단계의 충분한 사전 안내를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노동시장 조기 진입 지원을 위하여 II유형 참여 허용
 - ** 수급자격 인정 단계에서 빈일자리 참여 의사를 확인하여 전산 체크

2 지원요건2(직업훈련)

가 직업훈련의 범위

- 국민내일배움카드(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등 포함), 중앙부처·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계좌적합훈련 과정 이외의 미인정 훈련과정 등
 - 기타 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훈련(자비부담 일반학원 수강 포함)

- 취업활동계획(IAP)에 포함된 1개월 이상 직업훈련 과정
 - * 사업 참여(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 후 1개월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를 했다면 인정(단, IAP 수립일 이후에도 진행 전제)
 - ** 탑재된 동영상을 수강하는 원격 훈련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고용노동부에서 출석 및 수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출석 및 수료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나 수당 지급액 및 지원기간

- **(지급액)**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일 다음 날부터 직업훈련 시작일을 기준으로 1개월 지급단위 기간의 출석 일수 1일당 1만원,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
- **(지원기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최대 6개월(수당지급 단위기간 기준)
 - * 원칙 1년, 연장 시 연장 기간 적용

다 수당 지급 기준(출석률 및 수료 여부)

- 직업훈련 수료 기준에 따라 수료한 경우 지원 대상, 단위 기간별 수당 산정은 출석률에 관계없이 단위기간별 실제 출석 일수로 산정
 - * 수료 기준이 없는 프로그램은 전체 운영 일수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 지원
- 단, 미수료 사유가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지급단위기간 산정 방법 ※ 종전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기준과 동일

- (1월 이상) 1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 기간의 종료일 익일부터 1개월의 수당 지급단위 기간을 연속적으로 산정·판단

※ 국취 참여 전부터 직업훈련에 참여했다면,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상 참여기간이 있어야 하고, 수당 지급 단위기간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일 다음 날부터 시작일을 기준으로 1개월 단위기간별 지급

- (1월 미만) 지급단위 기간의 종료일 기준으로 익일 당시 참여 중인 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익일부터 1개월의 지급단위 기간을 산정하고, 익일 당시 참여 중인 과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후 새로운 훈련과정 참여일부터 1개월의 수당 지급단위 기간 산정

※ 1개월 미만 직업훈련을 다수 참여한 경우에는 수료한 과정을 합산하여 1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인정

 프로그램 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 기간 산정 예시



3

지원요건3(빈일자리 업종 및 기업)

가 빈일자리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 고용보험전산망 확인)

1. 제조업(1개)

-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에 해당되는 모든 기업

2.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8개)

- 범부처 일자리 TF 선정 빈일자리 전 업종 중 관계 부처의 추천을 받은 기업 2,737개소('25년과 동일)

*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나

기업요건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 대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사업장 고용보험 성립 및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2.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준용

※ 본·지사가 있고, 본사와 지사 업종이 다른 경우, 취업사업장의 업종 판단은 참여자가 취업한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이외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 청년이 사업주 협조를 받아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4

지원요건4(취업 및 취업성공수당)

가 취업의 기본 요건

-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자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필수
- **(고용형태)** 시간제 등 모든 고용형태 인정
- **(근로조건)**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 **(근속기간)** 취업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취업시점)** ①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②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이후 + ③ 취업('25.1.1. 이후)*한 경우
 -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연장, 사후관리 포함) 內
- **(취업경로)** 고용센터 등의 알선에 의한 취업 뿐 아니라 참여자 본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한 취업도 인정

나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6개월 근속한 경우 40만원 지원

*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은 1회차 수당 지급 시 4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40만원만 지원

다 기타 세부사항 및 해석 등

-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근로자로 취업한 경우)과 동일하게 적용

5 지원요건5(지급 시기)

- **(지급시기)** 역량강화프로그램 수료 및 취업, 6개월 이상 근속 후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원(사후 지급)
 - 신청가능 시점으로부터 3년간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 소멸
 - * 기산일은 지급 원인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산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



발행일 2026년 1월
발행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발행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고용노동부, 2026